

# 인지세 과세제도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홍병진·홍성희·이형민

2023. 9.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연구진**

**연구책임자**

홍 병 진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홍 성 희 공인회계사

이 형 민 공인회계사

# 목 차

I. 서론 .....	9
II. 인지세의 개요 .....	12
1. 인지세의 역사 및 성격 .....	12
가. 인지세의 역사 .....	12
나. 인지세의 법적 성격 등 .....	14
2. OECD 회원국의 인지세 과세현황 .....	17
III. 우리나라의 인지세 과세제도 .....	22
1. 인지세 개관 .....	22
가. 우리나라 인지세의 개념 및 성격 .....	22
나. 인지세의 도입 및 주요 변천내역 .....	23
다. 인지세 세수 통계 .....	33
2. 현행 인지세 제도의 과세체계 .....	35
가. 납세의무 .....	35
나. 과세문서 및 세액 산정 .....	36
다. 신고 및 납부 .....	41
IV. 주요국의 인지세 과세제도 .....	43
1. 미국 .....	43
가. 개관 및 주요 개정 연혁 .....	43

나. 인지세 과세제도 .....	47
2. 일본 .....	55
가. 개관 및 주요 개정 연혁 .....	55
나. 인지세 과세제도 .....	61
3. 영국 .....	66
가. 개관 및 주요 개정 연혁 .....	66
나. 인지세 과세제도 .....	70
4. 아일랜드 .....	83
가. 개관 및 주요 개정 연혁 .....	83
나. 인지세 과세제도 .....	88
5. 호주 .....	93
가. 개관 및 주요 개정 연혁 .....	93
나. 인지세 과세제도 .....	99
6. 홍콩 .....	107
가. 개요 및 주요 개정 연혁 .....	107
나. 인지세 과세제도 .....	111
7. 대만 .....	117
가. 개관 및 주요 개정 연혁 .....	117
나. 인지세 과세제도 .....	122
V. 국제비교 및 시사점 .....	126
1. 국제비교 .....	126
가. 인지세 개관 .....	126
나. 인지세 과세제도 .....	130
2. 시사점 .....	137
가. 인지세 제도의 존립에 관한 논의 및 장기적 개편 방향 .....	137
나. 단기적 개선방향 .....	141

VI. 결론 ..... 150

참고문헌 ..... 153

## 표 목차

〈표 II-1〉 OECD 회원국의 인지세 과세현황 .....	19
〈표 III-1〉 우리나라 인지세제 주요 개정 연혁 .....	31
〈표 III-2〉 우리나라 2018~2022년 인지세수 및 비중 .....	33
〈표 III-3〉 2018~2022년 과세문서 종류별 인지세 납부현황 .....	34
〈표 III-4〉 인지세 과세문서 세부내용 .....	37
〈표 III-5〉 과세문서별 인지세 세액 산정 .....	39
〈표 IV-1〉 미국 각 주별 인지세 세수 비중(2022년) .....	47
〈표 IV-2〉 미국 뉴욕주의 부동산거래세 세수 비중 .....	51
〈표 IV-3〉 미국 플로리다주의 문서인지세 세수 비중 .....	54
〈표 IV-4〉 일본 2017~2021년 인지세 세수 비중 .....	61
〈표 IV-5〉 일본의 인지세 과세대상 및 세액 .....	63
〈표 IV-6〉 영국의 인지세 명목 조세 징수액(2017/18~2021/22년) .....	70
〈표 IV-7〉 아일랜드 2018~2022년 인지세 세수 비중 .....	87
〈표 IV-8〉 아일랜드 인지세 세수 구성내역 .....	87
〈표 IV-9〉 호주의 주요 항목별 인지세 폐지 연혁 .....	96
〈표 IV-10〉 호주 주정부의 인지세액(2017/18~2021/22년) .....	98
〈표 IV-11〉 홍콩의 인지세 징수액(2018/19~2021/22년) .....	110
〈표 IV-12〉 홍콩 인지세 징수액의 항목별 구분(2018/19~2021/22년) .....	110
〈표 IV-13〉 대만 2018~2022년 인지세 세수 비중 .....	121

〈표 V-1〉 주요국의 인지세 과세제도 개요 비교 .....	129
〈표 V-2〉 주요국의 인지세 과세대상 비교 .....	133
〈표 V-3〉 주요국의 부동산 이전거래에 대한 인지세 과세제도 비교 .....	136



# I. 서론

- 우리나라에서 인지세는 문서를 작성하는 거래에 조세부담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세목으로서, “간접세·유통세·물세·문서세”<sup>1)</sup>라는 특징이 있음
  - 법문상으로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 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의 작성자가 그 과세문서에 인지를 첨부함으로써 납부되는 조세로 정의됨<sup>2)</sup>
  
- 인지세는 근 100년간 유지되어 온 전통적인 세금으로서 세수 측면에서도 비록 그 비중은 크지 않으나, 그렇다고 하여 무시할 수준으로 볼 수 없는 중요도와 위상을 가진 세목이라 할 수 있음
  - 인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은 일제강점기인 1923년 3월부터 최초 시행되었으며 해방 이후 1950년 3월 제헌국회의 국가 제정 법률로 공식 제정된 이래로 여러 제·개정을 거쳐 2023년 현재에 이르고 있음
  - 2018~2022년 기준 인지세 세수 비중은 전체 국세의 약 0.2~0.4% 수준을 나타냄
  
- 그동안 인지세제는 시대상황 변화에 따라 여러 번의 제·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며, 그 과세범위와 비중이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 1950~1960년대까지는 인플레이션 상황과 세수 수요증대 측면하에 과세범위와 세액을 높여가는 추세를 보이다가 1977년 부가가치세제 도입 이후 점차적으로 그 과세 폭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임

1) 현재 2007. 5. 31. 2006헌마1169, 판례집 19-1, 777

2)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 과세대상 종류의 수는 1950년 34종, 1991년 19종, 2001년 14종, 2010년 12종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 그러나 인지세제의 지속적인 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인지세제는 조세부과의 온당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국제적 흐름에도 뒤처지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현행 인지세는 동일한 거래에 대한 다른 간접세·거래세와의 이중과세 문제, 과세근거(담세력)상의 타당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음
  - 실무적으로도 과세관청의 집행 및 사후 관리상의 곤란으로 인지세 일부 과세대상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발생함
  - 또한 상당수의 국가들이 인지세제를 폐지한 상황이며, 우리나라의 과세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고 포괄적이라는 비판이 있음
    - OECD 회원국(38개국) 중 현재 인지세 명목으로 관련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24개국으로 조사되었으며, 과세범위는 국가마다 매우 다양함
    -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세대상을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거래에 한정하며,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추세임<sup>3)</sup>
  
- 따라서 현행 인지세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장기적 및 단기적 관점에서 인지세제의 전반적 개편방향, 개별적 개선·정비방안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음
  - 장기적으로 인지세제의 존치 문제를 포함한 다른 세목과의 통합 및 조화 등에 대한 방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현행 인지세제의 존치를 전제로 하여, 비합리성 제거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별적 법문에 대한 정비 및 보완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이와 같이 현행 인지세 과세제도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해외 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연구 방식으로 문헌조사에 의해 연구를 수행함

---

3) 박명재(2014), p. 28.

- 인지세의 본질적 성격과 역사, OECD 회원국 현황 등에 대해 검토함
- 우리나라의 전반적 인지세 과세제도와 비교대상으로서의 주요국(미국, 일본, 영국 등 7개국)의 실제 운용 중인 인지세 과세제도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연구함
  - 해당 국가에서 인지세가 가지는 성격과 다른 세목과의 관계, 세수 통계
  - 인지세제의 역사 및 최근의 논의 동향
  - 과세대상 및 세액 산정, 납세의무자, 신고 및 납부제도, 가산세 제도 등의 현행 구체적 과세체계
- 본 보고서는 먼저 II장에서 인지세의 개요를 정리하고 III장 및 IV장에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인지세 과세제도에 관해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V장에서 국제비교를 수행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VI장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구성함
  - II장에서는 인지세의 역사와 법적 성격, OECD 회원국들의 운용 현황을 개략적으로 정리함
  - III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인지세 과세제도의 개념 및 성격, 주요 변천내역, 현행 구체적 과세제도 등에 대해 정리함
  - IV장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 아일랜드, 호주, 홍콩, 대만 7개국의 인지세제의 개관, 최근 논의 사항을 포함한 주요 변천내역, 현행 과세체계 등을 중심으로 조사·정리함
  - V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 7개국 간의 인지세 과세제도와 관련된 항목별 국제비교를 수행한 후, 인지세의 조세법적 고찰과 국제비교 등을 근거로 현행 우리나라 인지세 과세제도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함
  - VI장에서는 앞서 기술한 II장부터 V장까지의 내용을 요약·정리함

## II. 인지세의 개요

### 1. 인지세의 역사 및 성격

#### 가. 인지세의 역사

- 인지세는 1624년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세금 중 하나임<sup>4)</sup>
  - 인지세의 기원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나 1624년 네덜란드의 요하네스 반 덴 브룩(Johannes van den Broeck)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 보는 의견이 다수임<sup>5)</sup>
    - 1620년대 초 스페인 전쟁으로 세수부족에 시달린 네덜란드 정부가 비역압적이며 실용적인 새로운 조세를 공모함
    - 이에 조세징수원이었던 브룩이 특정 법률문서에 특별한 도장을 날인하는 형태의 조세를 제안하면서 네덜란드에 인지세가 도입됨
  - 이후 인지세는 주변국인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으로 확산됨
- 전통적인 인지세는 자산의 양도 및 이전을 위한 법률문서(instruments 또는 documents)를 과세대상으로 함<sup>6)</sup>
  - 인지세라는 명칭은 해당 세금의 납부 여부를 나타내기 위해 관련 문서에 실제 인지(stamp)를 구매하여 부착한 것에서 유래되었다는 견해가 있음

---

4) "Letter from the Editor," *Asia-Pacific Tax Bulletin*, September/October 2010, IBFD, 2010, p. 358.

5) Yiu Yu Butt(2016), pp. 15~16.; 木村剛志(1995), p. 2.

6) Stephen Barkoczy(2022), p. 75.

- 이후 인지세는 과세대상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양상을 보임<sup>7)</sup>
  - 예를 들어 영국은 법률문서 이외 복권, 헤어 파우더, 향수 등으로 과세대상을 확대했으나 현대에 들어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음
  - 아일랜드는 도입 당시 47종이었던 과세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1891년 95종에 이르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하여 현재는 크게 6종의 문서에 대해서만 과세함
  - 싱가포르는 1970년대 이후로 과세대상을 지속적으로 축소하여 1998년에는 부동산 및 증권 관련 문서에 대해서만 인지세를 부과하도록 정비함<sup>8)</sup>
  
- 인지세는 전통적으로 인지의 부착 또는 인지세가 납부되었음을 기표하는 물리적 방식에 의해 납부되었으나 최근에는 전자적 날인도 인정되는 양상을 보임<sup>9)10)</sup>
  - 과거에는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정부 공인의 물리적 도장 날인에 의하거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우표와 비슷한 실물 인지를 구입하여 첨부하는 방법에 의해 납부사실을 나타내었음
  - 최근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를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전자수입인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도 있음
    - 홍콩은 전자수입인지서비스를 도입하여 기존 제도와 병행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싱가포르와 아일랜드는 기존 물리적 방법에 의한 제도는 폐지하고 전자수입인지방식만을 운영하고 있음<sup>11)</sup>
  
- 한편, 법률문서 이외 거래(transaction)를 과세대상에 포섭하여 인지세 세목으로 과세하는 경우도 관찰됨

7) Yiu Yu Butt(2016), pp. 16~17.; 국회입법조사처(2015), p. 206.

8) Ban Su-Mei and Harleen Kaur(2010), p. 390.

9) Yiu Yu Butt(2016), pp. 17~18.

10) 윤순상(2023), p. 8.

11) 금융결제원(2011), pp. 181~182.; 이후 개정사항 업데이트함

- 전통적 개념의 인지세는 소인의 대상인 '문서'를 필요로 하였으나 현대의 인지세 제 중에서는 문서의 유무와 무관하게 특정 거래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음
  - 예를 들어 미국의 뉴욕주, 영국의 인지대체세,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주, 호주의 빅토리아주는 문서가 아닌 거래를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함
- 이에 대해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의 세무신고서를 거래에 영향을 끼치는 문서(증서)로 간주하여 인지세로 분류한다는 의견<sup>12)</sup> 및 엄밀한 의미에서의 인지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sup>13)</sup>이 있음
- 문서 기반 제도에서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세제가 개정된 점에 비추어 과세거래 발생 시 제출해야 하는 인지세 신고서를 거래에 영향을 끼치는 문서로 간주하고 인지세로 과세한다는 주장이 있음
  - 호주는 전통적으로 거래가 아닌 문서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였는데 문서화하지 않는 방식의 인지세 회피행위가 발생하였음
  - 이에 대응하기 위해 문서 기반에서 거래 기반으로 관련 세제가 개정됨
- 문서가 수반되지 않는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 날인과정이 불필요하므로 전혀 다른 종류의 세목이라는 주장이 있음
  - 영국의 인지대체세와 인지토지세는 인지세에서 파생되었으나 문서 및 인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지라는 용어의 사용이 부정확한 것으로 보는 의견이 있음

## 나. 인지세의 법적 성격 등

- 인지세의 법적 성격에 대한 국제적으로 공통된 합의는 확인되지 않으나 전통적인 의미의 인지세는 간접세·유통세·물세·행위세(또는 문서세)의 일종임

12) Cannon and Edmundson(2006), "Anti Avoidance Provisions in Stamp Duty Legislation"

13) Thomas(2006), pp. 1~2.; Ken Wright(2020), p. 3.

-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인지세란 문서를 작성하는 거래에 조세부담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간접세·유통세·물세·문서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sup>14)</sup>
    - 일반적으로 문서의 실질적 작성자가 인지세를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것이 예상되므로,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와 경제적 부담자가 일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간접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sup>15)16)</sup>
    - 인지세는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물세에 해당됨
  - 인지세는 유통세의 일종이지만 유통거래 자체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유통거래에 수반되는 문서작성행위를 포착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행위세 또는 문서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의견이 있음<sup>17)</sup>
- 인지세의 과세 근거로는 과세대상이 되는 문서작성행위의 배후에 담세력이 인정되는 경제거래 등이 존재한다는 점이 언급됨
- 앞서 기술된 헌법재판소의 판시는 문서작성거래 배후의 조세부담능력에 주목한 것으로 생각됨
  - 일본에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문서작성행위의 배후에 담세력이 인정되는 경제거래 등이 존재하는 데 인지세의 과세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sup>18)</sup>
    - 가네코 히로시(金子宏) 교수는 인지세의 과세 근거에 대해 이들 문서는 각종 경제거래의 표현이며 따라서 담세력의 간접적 표현이라는 데 있는 것으로 설명함
    - 일본 세제조사회도 계약서나 영수증 등의 문서가 작성될 경우 그 배후에는 거래에 수반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있으며 인지세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문서작성행위의 배후에서 담세력을 찾아 과세하는 세금으로 봄<sup>19)</sup>

14) 헌재 2007. 5. 31. 2006헌마1169, 판례집 19-1, 777

15) 조창호(1984), p. 351.

16) 다만, 세액을 거래상대방에게 100% 완전히 전가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도 어려운 측면도 존재하므로 완전한 간접세로 보기도 어려울 수 있음

17) 木村剛志(1995), p. 1.; 草間久雄(2003), p. 281.

18) 草間久雄(2003), p. 280~281.

19) 일본 세제조사회는 응능과세 측면뿐만 아니라 후술하는 응익과세 측면(즉, 경제거래에 대해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거래당사자 간에 거래사실이 명확해져 법률관계가 안정화된다는 측면)을 포함하여 인지세의 과세 근거를 설명함

- 이에 더하여 문서작성행위에 따른 법률관계의 안정화라는 이익 측면(이익설)에서 과세 근거를 설명한 견해도 있음
  - 일본 총리 및 일본 세제조사회는 인지세란 경제거래를 위해 작성된 문서 뒤에 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가정과 거래사실을 명확히 하고 문서를 작성하여 법적 관계가 안정된다는 사실에 주목한 문서세인 것으로 설명함<sup>20)</sup>
  - 우리나라 금융개혁자문단은 인지세의 실질적 과세대상은 거래를 위한 법률행위이며, 인지세는 법률행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사법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대한 대가로써 응익(應益)과세의 하나로 봄<sup>21)</sup>
  - 인지세를 미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 및 사용되지 못하는 국가가 있으며, 이는 인지세의 보증 성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 영국, 호주, 홍콩 등은 인지세 납부를 통해 특정 문서들이 법원에서 인정되고 집행가능하게 됨
  
- 그 외 과세 근거와는 별개이나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인지세가 전체 조세체계 내에서 기간 세목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sup>22)</sup>
  - 나카자토 미노루(中里実) 교수는 정보통신혁명과 금융혁명의 진행에 의해 소득과세, 소비과세 및 자산과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유통세라는 과세방식에 의해 보충·보완하는 기능을 마련해 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주장함
    -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의 경우 토지는 소비세 비과세이며 정확한 자산평가가 어려워 자산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도 계약 자체에 대한 인지세 과세를 통해 소비과세 및 자산과세가 보완될 수 있음

20) 일본 참의원, “第162回国会(常会) 答弁書 答弁書第九号 内閣参質一六二第九号 平成十七年三月十五日,” <https://www.sangiin.go.jp/japanese/joho1/kousei/syuisyo/162/touh/t162009.htm>, 검색 일자: 2023. 6. 8.; 草間久雄(2003), p. 279.

21) 금융개혁자문단 세제분과(2015), p. 20.

22) 草間久雄(2003), pp. 280~281.

## 2. OECD 회원국의 인지세 과세현황

- 38개 OECD 회원국 중 인지세로 명명된 세제를 운영하는 국가는 24개국임<sup>23)</sup>
  -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24개국은 인지세제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캐나다, 체코, 독일 등은 인지세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 미국과 호주는 연방 단위에서는 인지세제가 없으며 주정부 차원에서 운영함
    - 미국은 50개 주 중 34개에서, 호주는 모든 주정부 등에서 인지세를 운영함
  - 인지세를 최초로 도입한 네덜란드는 현재 인지세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 1972년 거래세(Wet op belastingen van rechtsverkeer, WBR)로 대체됨<sup>24)</sup>
  
- 인지세 운영국가 중 과세를 위해 ‘문서’를 요구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문서작성과는 무관하게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 과세하는 국가도 있음
  -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국가는 문서를 과세대상으로 봄
  - 반면, 호주, 영국, 스웨덴, 그리스, 포르투갈 등은 특정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도 인지세를 부과함
  
- 인지세 과세범위는 국가별로 매우 다양함
  - 예를 들어 벨기에와 프랑스는 매우 제한적이며 예외적인 범위 내에서(예: 공증인 의사록, 여권 등) 인지세를 부과함
  - 반면, 이탈리아, 튀르키예 등은 계약서, 청구서, 급여 등 과세범위가 광범위함
  
- 등기·등록을 요하는 부동산 및 관련 권리의 이전(transfer) 문서는 인지세제 운영국

23) IBFD, Bloomberg Tax 및 PWC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함. 다만, 각 사이트별로 분류기준이 일부 상이한 경우에는(예: 등록세 성격의 세목에 대해 일부는 인지세로 분류하는 반면 일부는 그 외의 세목으로 분류하는 경우) IBFD의 분류를 우선 적용함

24) belastng & douane museum, “Digitale reis door de geschiedenis van belastingen in Nederland,” <https://www.bdmuseum.nl/digitale-reis-door-de-geschiedenis-van-belastingen-in-nederland/>, 검색일자: 2023. 7. 20.

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과세대상임

- 호주,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영국 등 상당수의 국가는 부동산 관련 권리의 이전 시 인지세를 부과함
  - 이들 국가 중 코스타리카, 일본, 우리나라 등은 인지세와는 별도의 등록세 또는 거래세를 부과하나, 호주, 라트비아, 노르웨이 등은 인지세 외에 별도의 등록세 및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음
- 인지세 과세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VAT) 과세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국가도 있음
-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특정 거래 등에 대해 인지세를 과세함
    - 이탈리아는 공급가액이 77.47유로를 초과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또는 비과세되는 송장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함<sup>25)</sup>
    - 그리스는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함<sup>26)</sup>
- 인지세 운영국가 중 일부는 행정 서비스 수수료와 비슷한 개념으로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임
- 헝가리, 라트비아, 폴란드 등은 공공기관 및 법원에서 요구하는 특정 절차(예: 사업 등록부 등기, 법원 재판, 공증서비스 등)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함
  - 참고로, 핀란드는 정부 등이 발행한 다양한 문서, 허가증 및 판결에 부과된 인지

25) E&Y, "Italy introduces new method of payment for stamp duty on electronic invoices," [https://www.ey.com/en\\_gl/tax-alerts/italy-introduces-new-method-of-payment-for-stamp-duty-on-electronic-invoices](https://www.ey.com/en_gl/tax-alerts/italy-introduces-new-method-of-payment-for-stamp-duty-on-electronic-invoices), 검색일자: 2023. 7. 24.; PWC, "Italy - Worldwide Tax Summaries - Corporate - Other taxes," <https://taxsummaries.pwc.com/italy/corporate/other-taxes>, 검색일자: 2023. 7. 24.

26) VAT Law 2000(FPA 2000) s. 63; Deloitte, "Bill regarding stamp duty on loans, other debt instruments to be ratified shortly," <https://www.taxathand.com/article/26880/Greece/2022/Bill-regarding-stamp-duty-on-loans-other-debt-instruments-to-be-ratified-shortly>, 검색일자: 2023. 7. 19.

세는 비용 기반 수수료로 대체하고 부동산 및 주식 등의 양도에 관한 인지세는 거래세로 대체함<sup>27)</sup>

- OECD 회원국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EU 회원국은 ‘자본조달 시 부과되는 간접세에 대한 지침’에 의해 증권 발행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음<sup>28)</sup>
  - EC는 자본조달에 대한 간접세는 이중과세 및 차별을 유발하며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하므로 폐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
  - 다만, 각 회원국의 세수손실을 감안할 때 자본조달과 관련된 자본등록세(Capital Duty)는 제한된 범위에서 부과하되 그 외 자본조달과 관련된 간접세, 특히 인지세의 부과를 금지함
    - 증권 이전(transfer)에 대한 거래세, 토지등록세를 포함한 거래세(transfer duties), 수수료 형태의 세금(duties in the form of fees) 등의 간접세는 자유로이 부과할 수 있음<sup>29)</sup>

〈표 II-1〉 OECD 회원국의 인지세 과세현황

No	구분	과세 여부	주요 과세대상	비고
1	호주	○	부동산 이전, 보험계약 등	주정부별로 상이함
2	오스트리아	○	특정 법적 거래 문서 (임대계약, 모기지, 환어음, 미수금 양도 등)	-
3	벨기에	○	특정 문서(예: 공증인 의사록, 은행거래 문서)	-
4	캐나다	×	-	-
5	칠레	○	금융 및 신용거래와 관련된 특정 문서(예: 환어음, 약속어음 등)	-
6	콜롬비아	○	부동산 이전 관련 문서	2022년 말 세법 개정으로 재도입

27) IBFD, “Finland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4. Miscellaneous Indirect Taxes(Last Reviewed: 1 June 2023),”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cta/html/cta\\_fi\\_s\\_014.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cta/html/cta_fi_s_014.html), 검색일자: 2023. 7. 19.

28) Council Directive 2008/7/EC of 12 February 2008.

29) Council Directive 2008/7/EC of 12 February 2008. Article 6

〈표 II-1〉의 계속

No	구분	과세 여부	주요 과세대상	비고
7	코스타리카	○	등기소 등록대상 특정 문서(예: 동산·부동산, 상표권 등)	-
8	체코	×	-	-
9	덴마크	×	-	2013년 폐지됨
10	에스토니아	×	-	-
11	핀란드	×	-	수수료 및 거래세로 대체됨
12	프랑스	○	특정 문서(운전면허증, 사냥면허증, 여권, 자동차증명서 등)	-
13	독일	×	-	-
14	그리스	○	VAT가 면제되는 특정 거래(대출계약, 이사보수지불액, 보험거래,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의 임대 등)	-
15	헝가리	○	공공기관 및 법원에서 요구하는 특정 절차 (예: 사업등록부 회사등록, 토지등록부 토지소유권 등록 등)	-
16	아이슬란드	○	부동산·선박 이전 증서	-
17	아일랜드	○	부동산, 영업권, 부채 등의 이전과 관련된 문서	-
18	이스라엘	×	-	2006년 폐지됨
19	이탈리아	○	계약서, 등기부 등 특정 문서 (예: 은행수표, 계좌명세서, 회계장부, 서면계약서, 송장 등)	VAT와 대체관계로 보아 일반적으로 VAT가 부과되지 않는 거래 등에 대해 부과함
20	일본	○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의 양도 문서, 도급계약서, 약속어음, 정관 등	-
21	한국	○	부동산·선박 등의 양도문서, 특정 금전소비대차문서, 도급문서, 상표권 등	-
22	라트비아	○	특정 법률 및 기타 서비스(예, 법원재판, 회사설립등록), 부동산 및 차량의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모기지 등기	-

〈표 II-1〉의 계속

No	구분	과세 여부	주요 과세대상	비고
23	리투아니아	×	-	-
24	룩셈부르크	×	-	-
25	멕시코	×	-	-
26	네덜란드	×	-	-
27	뉴질랜드	×	-	-
28	노르웨이	○	부동산 관련 권리의 양도 문서	-
29	폴란드	○	행정서비스 신청서, 공적 행위(예: 등록부 기재), 증명서의 발급, 환어음과 같은 특정문서	-
30	포르투갈	○	특정 행위·문서·서류·장부 등(예: 부동산 취득, 부동산 임대, 대출실행, 모기지 발행, 보험계약, 상금 등)	VAT가 부과되지 않는 행위 등에 부과함
31	슬로바키아	×	-	-
32	슬로베니아	×	-	-
33	스페인	○	공식문서, 법적 또는 경제적 효력이 있는 문서(예: 공증문서, 환어음, 토지 등록 등)와 일부 행정문서	-
34	스웨덴	○	부동산 이전 및 모기지(동산·부동산)	-
35	스위스 <sup>1)</sup>	○	주식 발행	-
36	튀르키예	○	특정 문서(계약서, 청구서, 급여 및 기타 상업거래 관련 문서)에 대해 광범위하게 부과	-
37	영국	○	부동산 및 증권의 이전	-
38	미국	○	부동산 등의 이전, 모기지 증서, 어음 등	주정부별로 상이함

주: 1) 스위스는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주식발행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그 외 지방정부 중에는 특정 문서(예: 법원판결, 신분증, 계약서, 유언장)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음  
 자료: IBFD, “각 국가별 - Country Analyses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4. Miscellaneous Indirect Taxes” 및 “각 국가별 - Country Surveys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9. Miscellaneous Taxes,” 검색일자: 2023. 7. 17.; Bloomberg Tax, “각 국가별 - Country Guides - 9. Other Taxes,” 검색일자: 2023. 7. 18.; PWC, “각 국가별 - Worldwide Tax Summaries - Corporate - Other taxes,” 검색일자: 2023. 7. 18.

### Ⅲ. 우리나라의 인지세 과세제도

#### 1. 인지세 개관

##### 가. 우리나라 인지세의 개념 및 성격

- 우리나라의 인지세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의 작성자가 그 과세문서에 인지를 첨부함으로써 납부되는 조세로서, 국세로 운영되는 문서세임<sup>30), 31)</sup>
  - 거래세(유통세)의 성격을 가지나 일정 거래나 상황 발생 시에 필요한 문서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임
    - ‘과세거래’에 부과되는 여타 거래세<sup>32)</sup>나 취득등록세 등과 구별됨
  - 따라서 만일 어떠한 거래사실의 증명을 위한 구두계약만 있을 뿐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인지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 인지세는 자진납부 방식의 조세임
  - 과세문서에 스스로 수입인지를 첨부·소인하여 납부하는 형식을 띠<sup>33)</sup>
    - 수입인지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30)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31) 정부가 발행한 인지(印紙)를 붙임으로써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인지세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 문서세(文書稅)라고도 함(박명재, 2014, p. 21.)

32) 대표적 거래세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음

33)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전자수입인지를 말함<sup>34)</sup>

-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sup>35)</sup>가 포함되며,<sup>36)</sup> 전자문서의 경우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같음할 수 있음

## 나. 인지세의 도입 및 주요 변천내역<sup>37), 38), 39)</sup>

### 1) 1950~1960년대(초기 도입단계)

- 인지세는 해방 이후 1950년 3월 10일, 제헌국회의 국가 제정 법률로 제정됨<sup>40), 41)</sup>
  - 원래 인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은 일제강점기인 1923년 3월부터 시행됨
  - 1950년 새롭게 마련된 「인지세법」의 제정 이유로 “구법령(조선인지세령)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인지세 제도를 법제화하되, 최근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세대상 등을 조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려는 것”을 들고 있음<sup>42)</sup>
    - 해방 이후 급격히 변화한 금융·경제 실정에 비추어 세율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특히 당시 유통이 급격히 늘고 있었던 약속어음 및 환어음에 대한 계급 정액세를 도입하여 부담의 공평을 기할 필요가 있었음
  -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

34) 수입인지는 인지세 외에도 소송비용, 행정수수료, 과태료 등의 징수를 위하여도 현금 대신 납부하게 하기 위하여 우표형태로 정부가 발행함

35)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은 제외됨

36) 「인지세법」 제3조 제3항

3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참조

38) 본회의 정보 의정활동 통합현황 - 열린국회, [https://open.assembly.go.kr/portal/bpm/prc/prcM\\_stPage.do](https://open.assembly.go.kr/portal/bpm/prc/prcM_stPage.do) 참조

39) 윤순상(2023), pp. 88~114. 참조

40) 박명재(2014), p. 13.

41) 윤순상(2023), p. 88.

42) 제1대 국회, 6회 26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1950. 2. 9.)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자에게 인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인지세의 토대를 만들<sup>43)</sup>

- 1950년 12월 1일 제2대 국회에서는 예상치 못한 경제팽창에 대응하여 인지세 계급 정액세 구간별 세액을 전반적으로 증액함과 동시에 최고 세액부과 구간을 추가·신설함
  -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상거래, 특히 어음에 있어서 큰 규모의 금액이 거래·유통됨에 따라 종래의 세율을 1억원 내외의 거래까지 예상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로 최고세액을 기존 700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함<sup>44)</sup>
- 1952년 12월 15일 제3대 국회에서는 화폐개혁 및 이에 따른 통화팽창으로 인해 인지세 수준의 현실화가 요구되어 일부 항목에 대해 비례세를 도입하고 전반적인 세부담 수준을 인상시킴<sup>45)</sup>
  - 부동산·철도재단 또는 선박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도급에 관한 증서, 운송에 관한 증서, 용선계약서, 약속어음·환어음 등에 대해 비례세를 도입함
  - 항목별 과세최저한 수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함
- 1958~1959년 제4대 국회에서는 인지세 세부담을 인상시키는 한편, 비례세 항목을 다시 정액세로 환원하였으며, 일부 과세대상 항목을 조정함
  - 1958년 7월 24일에는 물가수준에 비해 인지세 수준이 지나치게 낮으므로 비례세율을 0.07%에서 0.4%로 상향함<sup>46)</sup>
  - 1959년 12월 21일에는 비례세 적용 항목을 정액세로 변경시키고, 상호보험회사가 발행하는 기금증권 등은 과세항목에 포함시키는 한편 주식신입증 및 사채신입증은

43) 당시 「인지세법」 제1조

44) 제2대 국회, 8회 55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1950. 11. 22.) 참조

45) 제3대 국회, 22회 117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

46) 제4대 국회, 29회 19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

과세항목에서 제외함<sup>47)</sup>

- 증서·장부의 성질에 따라 적용세율을 정액세제 또는 비례세제로 구분과세하는 것은 세율의 실정성(實定性)<sup>48)</sup> 부족으로 이어져 경제유통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과세 적정성을 위해 모든 과세항목을 정액세제로 개편함이 타당함

## 2) 1970~1990년대(전문개정 후 운용단계)

□ 1971년 12월 28일 정부는 약 20년간 인지세 제도를 운영하며 드러났던 법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과세문서의 대상과 세율을 대폭 조정하는 전면 개정을 실시함

○ 10년 넘게 세부담 수준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현실에 부합되도록 과세문서의 대상 및 세율을 조정하고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sup>49)</sup>

- 거래 단위가 높아진 관계로,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등 정액세의 상위 과세구간 단계를 증설하여 11계급에서 14계급으로 세분화함
- 1960년 이후 물가상승률(238%)을 감안, 운송에 관한 문서 등에 대한 단순정액세의 세율을 200% 인상함

□ 1976년 12월 22일에는 부가가치세제 도입과 맞물려 인지세의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과세물건을 조정하여 유통세로서의 기능을 제고하고, 현행 정액세를 경제 활동에 저해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현실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함<sup>50)</sup>

- 지상권, 지역권 또는 전세권에 관한 증서 및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대해 기존 단순정액세에서 차등정액세로 변경함
- 상품권, 위임장 등 14개의 과세항목에 대한 세액을 현실화 차원에서 인상함
- 상거래와 관련된 약속어음·환어음, 계속적 거래에 관한 증서, 운송에 관한 증서,

47) 제4대 국회, 33회 20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

48) 현실적인 사정이나 정세에 맞는 성질

49) 제8대 78회 국회 2차 재무위원회 회의록 및 제8대 국회 78회 28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

50) 제9대 국회, 96회 13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

### 창고증권·영수증 등을 비과세 문서로 전환함

- 1991년 12월 27일 변경된 경제·사회 여건에 맞추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와 세액을 현실에 맞게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수출 및 유통거래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등의 전문 개정을 실시함<sup>51)</sup>
  - 수표책에 과세되는 인지세 등 경제적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한 과세대상을 정비하여, 과세대상 문서를 19종으로 축소함
  - 거래금액에 따라 최소 10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14단계로 되어 있던 차등정액세의 세액단계를 8단계로 조정함
    - 부동산·금융거래의 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을 반영하여 거래금액 5억원 초과 시의 세액은 상향조정하되, 금액 5백만원 이하의 소규모 거래에 대하여는 비과세 하도록 함
  - 수출산업 진흥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도급에 관한 증서 중 수출입대행계약서와 주택 전세권·임대차에 관한 증서 등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전환함
  - 개별 문서에 인지를 붙이는 대신, 현금납부방식을 확대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함

### 3) 2000년대 이후

- 2001년 12월 29일에는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 거래비용을 덜어주고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그동안의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과세대상 문서 및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함<sup>52)</sup>
  - 부동산·선박 등의 소유권이전계약서, 소비대차문서 등에 대한 세액 차등 체계를 기존 8단계에서 5단계로 단순화함
  - 개인 간의 도급문서와 소비대차문서, 임차에 관한 증서는 검증이 곤란하고 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51) 제13대 국회, 156회 17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

52) 제16대 국회, 226회 1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

- 다만, 법률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개인 간의 도급계약서, 전문직 수임계약서와 같이 검증가능성이 높은 문서는 계속 과세하기로 함
  -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관, 합병계약서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업양도문서는 영업재산을 구성하고 있는 부동산·자동차 등의 양도 계약서에 대한 과세와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상호보험회사 기금증권, 상호신용부금·계금계약 등은 사례가 없거나 실적이 미미하고 연불판매계약은 리스 활성화로 인해 실적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의 소유권 이전 계약서와 상업용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증서를 비과세하고, 금융기관의 소비대차 문서 과세 최저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시킴
  - 소득수준 향상 및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라 신종금융상품인 기업어음을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골프장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과 당시 발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던 상품권 및 신용카드신청서에 대한 세액을 인상함
  -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가산세 제도를 신설함
    - 인지세가 규모가 적고 검증이 어려워 탈세가 용이한 점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미납·부족세액의 3배를 부과하는 가산세 제도를 도입함
- 2004년 12월 31일에는 상품권 권면액별 차등 정액세가 시행됨<sup>53)</sup>
- 부동산·선박·항공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나 금전소비대차 증서와 마찬가지로 상품권에 대해서도 차등 정액세를 도입함
    - 1만~5만원: 200원, 5만원 초과: 400원
  - 당초 1만원 이하의 상품권에 대하여도 100원의 세액을 부과하려 하였으나 1만원 이하 상품권은 주로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 등인 바 이러한 소액 상품권에게까지 과세를 하는 것은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비과세를 유지함

53) 제17대 국회, 251회 2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2004. 12.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 2009년 1월 1일에는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양도 시 문서에 인지를 첨부하는 대신 특허청이 발생하는 수수료 등과 함께 인지세를 통합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대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됨<sup>54)</sup>
  - 양도인의 실무상 불편함을 덜어주고 온라인 무체재산권 양도 신청 시의 인지제 사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임
  
- 2010년 1월 1일에는 전자문서 형태의 문서도 과세대상으로 법정화하고 일부 과세 대상 항목 및 세부담 수준에 대한 조정이 있었는데, 2023년 현재까지 유지되는 인지세 제도의 큰 틀이 이때 정비됨<sup>55)</sup>
  - 부동산 전세권 관련 증서, 지상권·지역권 관련 증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무체재산권 및 골프장회원권 양도증서 등도 재산가액에 따른 차등 정액세를 적용함
  - 금전소비대차계약 문서 과세 최저한도를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시킴
  
- 2012년 12월 18일에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전자수입 인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됨<sup>56)</sup>
  - 「인지세법」 제10조의 단서에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된 인지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신설됨
  
- 2014년 1월 1일에는 전자수입인지 사용의 의무화, 상품권에 대한 세부담 조정 등을 담은 「인지세법」 개정안이 발효됨<sup>57)</sup>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지세 납부 시에 전자수입인지 사용을 의무화함
    - 다만,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

54) 「인지세법」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07. 10.,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55)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재위 제출 보고서(2010. 1.)

56) 2012. 12. 18. 법률 제11551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

57)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재위 제출 보고서(2013. 12.)

을 표시함으로써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음

- 상품권의 발행금액이 다양화됨에 따른 비과세구간 축소와 과세표준구간 세분화가 입법됨
    - 종전 비과세였던 권면 1만원에도 50원을 부과하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최고 800원까지 부과함
  - 부동산 소유권 이전 관련 증서 등 일부 증서의 전자문서에만 과세하고 있었으나 모든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의 범위에 전자문서를 포함함
- 2016년 3월 2일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 관련 문서 과세 최저한도를 상향함(4천만원→5천만원)<sup>58)</sup>
- 당초 개정법률안 원안은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완전히 삭제하여 금융대출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려 하였으나,<sup>59)</sup> 비과세 최저한을 상향시키는 수준에서 입법됨
    - “세수 여건 등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신중론을 반영함
- 2018년 12월 6일에는 종이상품권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권면금액 3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도록 법률 개정함(2020년부터 시행)<sup>60)</sup>
- 기존에는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은 과세문서로서의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었음<sup>61)</sup>
- 2020년 3월 31일에는 직불카드 가입신청서와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가 폐지되고,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과세최저한을 상향함(3만원→5만원)<sup>62)</sup>
- 직불카드는 통상 예금계좌 개설 시 이미 인지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58) 2016. 3. 2. 법률 제14048호, 개정

59)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14. 11., 기획재정위원회)

60) 제20대 국회, 2018. 12. 6. 제364회

61)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1호 신설(2010년)

62) 2020. 3. 31. 법률 제17151호, 개정

이증과세의 소지가 있었음

- 통신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용역이고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상당한 현실이므로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부과되는 인지세를 과세대상 문서에서 삭제하기로 함
- 2020년 12월 22일에는 인지세의 미납세액 조기납부 촉진을 위해 일정 기간 내 납부할 경우 300%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규정을 완화함<sup>63)</sup>
  - 법정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6개월 이내로 구분하여, 가산세를 각각 100%, 200%로 부과하도록 하는 경감규정을 마련함
- 2022년 12월 31일에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증서에 대한 인지세 미납 시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며,<sup>64)</sup> 인지세 납부기일에 대한 규정을 변경함<sup>65)</sup>
  - 부동산 등기 신청 시 인지세 납부 여부 확인절차가 존재하며, 현행 제도는 문서 작성일에 전자수입인지를 붙여야 하지만 법원에서 부동산 소유권등기를 할 때 인지세를 납부하는 관행이 받아들여지고 있어 사문화(死文化)된 조문을 정비함
  - 인지세의 납부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과세문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함
- 인지세 제도와 관련한 이상의 주요 개정 연혁을 정리하면 아래 <표 III-1>와 같음

63)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 개정

64) 2022. 12. 31. 법률 제19189호, 개정

65) 2022. 12. 31. 법률 제19198호, 개정

〈표 Ⅲ-1〉 우리나라 인지세제 주요 개정 연혁

개정일	과세대상		세액 산정구조	특기사항
	종류	추가·제외		
1950. 3. 10. (제정)	34종	(추가) 수표	10~700원 (8단계)	약속어음 및 환어음 계급정액세 도입
1950. 12. 1.	34종	-	10~50,000원 (9단계)	
1952. 12. 15.	35종	(추가) 외국환매입허가서	0.05%, 0.07% 등 일부항목에 대해 비례세 도입	
1958. 7. 24.	34종	(제외) 외국환매입허가서	비례세 항목의 세율인상(0.4%)	
1959. 12. 21.	33종	(추가) 매매계약, 상호보험회사 기금증권, 입금장 (제외) 주식신입증 및 사채 신입증	100~150,000환 (11단계)	
1971. 12. 28. (전문개정)	33종	(추가) 영업양도, 동산·유가 증권 양도, 계속적 거래 (제외) 매매계약	10~150,000원 (14단계)	10년간 유지되어 오던 규정의 대대적 정비
1976. 12. 22.	33종	(추가) 채권, 수금장 (제외) 진성어음, 집인장, 영수증 등	지상권이나 지역권 계약, 유가증권 거래에 대해 차등정액세 적용	
1991. 12. 27. (전문개정)	19종	(추가) 광어업권, 무체재산권, 양도 시설물이용권, RP약정서, 시설대여·연불판매계약서 (제외) 수표책, 수출입대행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10,000~350,000원 (8단계)	현금납부 방식 개선 : 납부사실 표시
2001. 12. 29.	14종	(추가) 기업어음, 선물계좌설정 계약서 (제외) 영업양도, 용선계약서, 기금증권, 임대차, 임치, 정관, 합병계약서, 연불판매계약서 등	20,000~350,000원 (5단계)	후납 제도 신설, 세액환급 신설, 가산세 제도 도입

〈표 Ⅲ-1〉의 계속

개정일	과세대상		세액 산정구조	특기사항
	종류	추가·제외		
2004. 12. 31.	14종	-	상품권 (5만원 이하) 세액 인하: 400원→200원	
2009. 1. 1.	14종	-	-	특허청장 대리납부제도 신설
2010. 1. 1.	12종	(제외) 부동산 전세권에 관한 증서, 지상권·지역권에 관한 증서	무체재산권양도증서, 골프장회원권양도증서 등도 재산가액에 따라 차등과세	전자적 문서도 과세문서로 인정
2012. 12. 18.	12종	-	-	전자수입인지 제도 도입
2014. 1. 1.	12종	-	상품권 권면금액별 과표 구간 세분화 및 세액 조정: (1만원) 50원 (10만원 초과) 800원	전자수입인지 사용 의무화  전자문서에 대한 과세범위 확대
2016. 3. 2.	12종	-	-	금전소비대차계약 과세 최저한 상향 (4천만원→5천만원)
2018. 12. 6.	12종	(추가) 3만원 초과 모바일상품권	-	-
2020. 3. 31.	12종	(제외) 직불카드·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	-	모바일상품권 과세최저한 상향 (3만원→5만원)
2020. 12. 22.	12종	-	-	지연납부가산세 구간별 세분화
2022. 12. 31.	12종	-	-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 관련 가산세 폐지 납부기일을 다음달 10일까지로 함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를 토대로 저자 작성

다. 인지세 세수 통계

-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인지세 세수는 7,988억원이며, 총 내국세 세수 348.7조원 중 약 0.22%의 비중을 차지함
  - 과거 5년간 인지세수 비중은 0.2~0.4% 범위 내에 있으며, 2020년 0.39% 이후 점차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 인지세 납부방식은 수입인지 첩부방식과 현금납부방식으로 구분되며 2019~2022년 기준 현금납부방식에 의한 인지세 세수가 총 인지세수 중 약 35~41%의 비중을 차지함
  - 인지세는 현금납부방식보다는 수입인지 첩부방식에 의하여 더 많이 납부되고 있음<sup>66)</sup>

〈표 Ⅲ-2〉 우리나라 2018~2022년 인지세수 및 비중

(단위: 십억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지세	수입인지	505.5	504.2	564.5	629.1	515.9
	현금	375.7	341.4	400.7	330.7	282.9
	계	881.2	845.6	965.2	959.8	798.8
총 내국세		253,601	253,435	245,830	293,971	348,726
비중		0.35%	0.33%	0.39%	0.32%	0.22%

자료: 국세통계연보,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ep/e/a/UTWEPEAA02.xml&sttPblYr=2023&sttsMtaInfrId=20230103B01202317928>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검색일자: 2023. 6. 20.)

66) 현금납부 방식은 주로 인지세 과세문서를 대량으로 계속 작성하는 금융·보험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량의 문서를 우발적·일시적으로 작성하는 개인 또는 일반사업자는 (전자)수입 인지를 붙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방식이 보다 능률적일 것이라 함(김창우, 2003, p. 104.)

- 2019~2022년 현금납부 방식 기준 인지세 과세문서 종류별 납부 현황은 아래 <표 III-3>과 같으며, 이 중에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인지세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다음으로는 대체적으로 상품권(선불카드 포함), 예금통장(보험통장 포함), 신용카드 등 가입신청서 순서로 세수 비중이 높음
  - 다만, 본 통계자료는 현금납부 방식에 관한 통계로써 전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를 아우르는 통계로 보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함
    - 예를 들어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문서가 현금납부방식 중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나, 이를 통해 인지세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금전소비대차 증서보다 낮은 것으로 결론지을 수 없음

<표 III-3> 2018~2022년 과세문서 종류별 인지세 납부현황

(단위: 백만건,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통수	납부세액	통수	납부세액	통수	납부세액	통수	납부세액	통수	납부세액
총 합계	423	375,714	376	341,418	397	400,703	400	330,692	389	282,911
1.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문서	0.5	1,932	0.0	775	0.0	240	0.0	213	0.0	197
2. 금전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3.0	211,515	5.0	222,998	5.3	321,060	4.2	254,484	3.3	212,065
3. 도급, 위임에 관한 증서	0.5	44,179	0.4	5,227	0.0	1,450	0.0	1,691	0.0	1,843
4.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0.0	3	0.0	3	0.0	2	0.0	1	0.0	2
5.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0.0	404	0.0	391	0.0	375	0.0	398	0.0	325
6.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양도에 관한 증서	0.0	34	0.0	5	0.0	10	0.0	1	0.0	1
7. 신용카드 등 가입 신청서	56.9	50,513	35.2	50,490	39.2	20,060	36.0	10,844	24.2	7,279
8. 상품권, 선불카드	180	35,447	160	34,490	172	33,976	187	40,208	182	36,862
9. 모바일 상품권	0	0	0	0	6.3	2,306	4.4	2,360	6.7	3,440
10.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1.6	639	1.9	760	1.6	647	1.6	654	1.9	759

〈표 Ⅲ-3〉의 계속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통수	납부세액	통수	납부세액	통수	납부세액	통수	납부세액	통수	납부세액
11. 예금통장, 보험통장 등	175	27,770	167	23,009	165	16,543	159	15,986	164	16,488
12. 시설대여 계약서	0.2	1,986	0.2	1,933	0.2	2,518	0.2	2,353	0.2	2,352
13.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5.7	1,290	5.9	1,337	6.0	1,516	5.9	1,499	5.7	1,298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ep/e/a/UTWEPEAA02.xml&sttPblYr=2023&sttsMtaInfrId=20230103K01202317919>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검색일자: 2023. 6. 20.)

## 2. 현행 인지세 제도의 과세체계<sup>67)</sup>

### 가. 납세의무

- 인지세 납세의무자란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문서(“과세문서”)를 작성하는 자임<sup>68)</sup>
  -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자라 함은 문서를 제작한 행위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문서의 작성명의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sup>69)</sup>
    - 다만, 「인지세법」은 ‘문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음<sup>70)</sup>
  - 장소적 범주를 국내로 함으로써 국내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불문하고 납세의무가 발생함

67) 「인지세법」 법률 제19198호(2023. 1. 1.)를 기준으로 작성함

68)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69) 조창호(1984), p. 357.

70) ‘문서’가 되기 위해서는 “① 의사, 사상, 관념 등을 표시한 것이어야 함, ② 그 부호만으로 관념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③ 법률상 중요성을 가진 의식내용의 기재라야 함, ④ 명의인이 있어야 함, ⑤ 유형적 물체(종이, 양피지, 목판, 플라스틱판 등)상에 기재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 계속적일 것이 필요함, ⑥ 의사표시를 수록한 녹음테이프·플로피디스크, 컴퓨터 내에 의사표시를 저장한 것은 문서로 보지 아니함”이라는 요건을 제시한 바 있음(김창우, 2003, p. 11.)

- 만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들은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sup>71)</sup>
  - 공동 작성자 중 어느 1인이 과세문서 납부의무를 전부 이행하면 나머지 작성자의 납세의무도 함께 소멸함<sup>72)</sup>
  
- 비자발적, 불가피적으로 과세문서를 작성하게 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인지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상속인이나 합병 존속·신설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피상속인, 소멸법인 또는 사업양도인이 작성하여 사용하던 문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계속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지 않음<sup>73)</sup>
  -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멸실된 문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지 않음<sup>74)</sup>
  
- 인지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및 확정시기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로 동일함<sup>75)</sup>
  - ‘문서의 작성’이란 과세문서의 조제행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로 될 수 있는 용지에 과세사항을 기록하고 작성자가 서명 날인하여 이를 당해문서의 작성에 따라 사용하기에 이르러야 함<sup>76)</sup>

## 나. 과세문서 및 세액 산정

### 1) 과세대상

- 인지세 과세대상인 ‘과세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에서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71)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72) 「인지세법 기본통칙」 1-1…8

73) 「인지세법 기본통칙」 1-1…5

74) 「인지세법 기본통칙」 1-1…6

75)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6호, 제22조 제4항 제1호

76) 조창호(1984), p. 361.

있으며 크게 12가지로 분류됨

○ 명칭에 불문하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함<sup>77)</sup>

〈표 Ⅲ-4〉 인지세 과세문서 세부내용

각호	과세문서	비고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2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금융·보험기관이라 함은 다음의 것들을 말함 (예시) *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등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림조합 등
3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구체적인 도급·위임 증서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예시)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관련법에 따라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기술사 등이 작성하는 수입계약서
4	소유권 등록을 하여야 하는 동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구체적 동산 양도증서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모터보트와 요트 포함)
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양식업권, 출판권, 저작권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
6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	시설물이용권이란 다음을 말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

77) 「인지세법」 제3조 제4항

〈표 Ⅲ-4〉의 계속

각호	과세문서	비고
		프장이나 종합체육시설 또는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회원권
7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신청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소정하는 다음의 문서도 과세대상에 포함함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의 신용거래 계좌 설정 약정서 * 매매거래 계좌설정 약정서 * 파생상품 계좌설정 약정서
8	상품권 및 선불카드	* 명칭 또는 형태를 불문함 * 선불카드란 일정한 금액 등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한 증표를 말함 *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 불특정 다수를 위한 입장권은 과세 제외함
8의2	모바일상품권	* 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 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환불·폐기되는 것은 제외함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
10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	-
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구체적으로 다음을 과세대상으로 함 *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은행 등의 채무보증증서(신용장은 제외)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보증증서 *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자금의 용자에 대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

자료: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내지 제6조의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 세액의 산정

- 인지세 세액은 ‘정액세’이며, 단순정액세와 차등(계급)정액세로 구분됨
  - 과세문서 작성 통수마다 정액의 세금이 각각 과세됨
    - 과세문서 기재금액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부과하는 단순정액세와 문서 종류별로 기재금액 계급에 따라 과세되는 차등정액세로 분류됨
  - 차등정액세의 경우 과세문서에서 과세사항을 증명할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기재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봄
    -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계산해 낸 금액으로 하되,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는 소정의 최저 기재금액(1천만원)으로 함<sup>78)</sup>
  
- 과세문서별 세액의 산정은 아래 <표 Ⅲ-5>와 같이 요약됨

<표 Ⅲ-5> 과세문서별 인지세 세액 산정

과세문서	세 액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기재금액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기재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기재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기재금액 10억원 초과: 35만원
2.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3,000원
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양식업권, 출판권, 저작권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78) 「인지세법」 제4조 제1항

〈표 Ⅲ-5〉의 계속

과세문서	세액
6.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7.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	300원
8. 소정의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제외) 및 선불카드	권면금액 1만원: 50원
	권면금액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 200원
	권면금액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400원
8의 2. 모바일 상품권	권면금액 10만원 초과: 800원
	권면금액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400원
	권면금액 10만원 초과: 800원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400원
10.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 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00원
11.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	1만원
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등: 1만원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등: 1,000원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등: 200원

자료: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의 내용을 정리함

□ 다음과 같은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비과세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등 「인지세법」에서 규정하는 다음과 같은 문서(예시)<sup>79)</sup>

-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아파트 등

79) 「인지세법」 제6조

-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도 포함<sup>80)</sup>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
-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 조세정책상 농·어민이나 중소기업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인지세 면제를 한시적(2023년 말)으로 정하고 있는 다음의 문서(예시)<sup>81)</sup>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원 등이 개인당 1억원 이하의 용자를 받기 위한 금전소비대차증서
  -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대상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 농어촌정비사업 등 특정 사업과 관련한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 분리·합병 등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 창업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

#### 다. 신고 및 납부

-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sup>82)</sup>
-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납부 방식도 허용됨<sup>83)</sup>
  - 현금납부 방식이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붙이는 절차를 대신하기 위한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세무서장에게 인지세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는 방식을 말함

80) 「인지세법 집행기준」 6-0-9 제5항

81)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82) 「인지세법」 제8조 제3항

83)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 전자문서의 경우, 현금납부 방식을 이용하거나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는 방식에 의함<sup>84)</sup>
  
- 인지세를 미납하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세액(이하 “미납부세액 등”)의 최대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함<sup>85)</sup>
  - 다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에 대해서는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자진납부를 독려하기 위하여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경감함
    -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는 미납부세액 등의 1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미납부세액 등의 2배를 가산세로 함

---

84) 「인지세법」 제8조 제2항

85)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

## IV. 주요국의 인지세 과세제도

### 1. 미국

#### 가. 개관 및 주요 개정 연혁

##### 1) 인지세의 성격<sup>86)87)</sup>

-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일부 주(state)에서만 부과함
  - 연방정부는 1967년에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 section 4301~4384에 있던 인지세 규정(Chapter 34 documentary stamp taxes)을 공식 폐지함<sup>88)</sup>
  - 다만,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종의 거래세로서 총기소지법(National Firearms Act)에 의한 총기류의 이전에 대해서는 인지(stamp)를 첨부하여 일정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함<sup>89), 90)</sup>
    - 특정 무기류에 대해서는 개당 5달러, 그 밖의 것은 개당 200달러를 부과함

---

86) PWC, <https://taxsummaries.pwc.com/united-states/corporate/other-taxes>, 검색일자: 2023. 7. 5.

87) WILL KENTON, <https://www.investopedia.com/terms/s/stampduty.asp>, 검색일자: 2023. 7. 7.

88) Public University of Denton, <https://library.unt.edu/gpo/acir/Reports/information/m-37.pdf>, 검색일자: 2023. 7. 7.

89) IRC section 5811, 5852(e), 5845(h)

90) 일반적인 범주의 인지세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하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인지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하여 논의를 전개함

- 미국의 각 주는 인지세 과세 여부를 독자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2023년 현재 50개 주 중 68%인 34개주에서 인지세제를 실시하고 있음<sup>91), 92)</sup>
  - 문서 및 유가증권거래(documentary and stock transfer)<sup>93)</sup>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주는 34개임
    - 알래스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아이다호, 인디애나, 캔자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몬태나, 뉴멕시코,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텍사스, 유타, 와이오밍 등 16개주에서는 인지세제를 운용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불리어지는 명목적 명칭인 stamp tax, stamp duty 외에도 부동산 거래세(real estate transfer tax(뉴욕주 등)), 문서인지세(documentary stamp tax(플로리다주 등)) 등 다양하게 운영됨
- 각 주마다 과세대상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어 단순 거래세인지 문서세인지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음
  - 과세대상은 공식적 기록을 요하는 부동산이나 부동산지배권(controlling interest of real property)의 이전, 주식이나 채권 등의 발행 및 양도, 모기지(mortgage, 담보대출) 관련 증서뿐만 아니라 담배류에 이를 정도로 매우 다양함
    - 모기지세(mortgage tax)는 부동산 거래비용 중 하나로서 해당 담보대출과 관련된 증서에 부과하는 세금이며, 현재 앨라배마, 플로리다, 캔자스, 미네소타, 뉴욕, 오클라호마, 테네시 등 7개 주 이상에서 운영하고 있음<sup>94)</sup>
    - 주 내의 특정구역에서 담배류에 인지를 부착하여 인지세를 부담지우기도 함
- 다만, 지적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의 양도, 취득, 면허에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음<sup>95)</sup>

91) U.S. Census Bureau, <https://www.census.gov/data/tables/2023/econ/qtax/historical.html>, 검색일자: 2023. 7. 5.

92) U.S. Census Bureau, <https://www.census.gov/data/tables/2023/econ/qtax/historical.html>, 검색일자: 2023. 7. 5.

93) 주별로 개별적 특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인지세의 범주를 포괄하는지는 단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개략적 파악 정도만 가능할 것으로 보임

94) 윤순상(2023), p. 78.

- 주요 인지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거래, 유가증권 거래, 모기지 거래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등록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음
  - 취득세 제도 존재는 확인되지 않음
  - 주류, 유흥, 주식회사, 사냥이나 낚시, 자동차,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는 등록세가 부과되기도 하지만 인지세와 중복되지는 않음<sup>96)</sup>

## 2) 주요 변천내역<sup>97)98)</sup>

- 미국은 영국 식민지 시대인 1765년에 인지세를 도입하였으나, 강력한 조세저항으로 인해 이듬해인 1766년에 폐지함
  - 법적 문서, 잡지, 신문, 선하증권 등 다양한 종류의 미국 인쇄물에 런던에서 생산된 수입인지를 부착하도록 하였음
- 이후 식민지 독립 후 남북전쟁 중이던 1862년에 「세입법(Revenue Act)」를 제정하면서 인지세를 부활시켰으며 1883년까지 동 제도를 유지함<sup>99)</sup>
  - 전쟁 관련 재원 수요 증대와 남부 11개 주로부터의 관세수입 소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인지세를 도입함
  - 인지세 과세대상은 주요 문서뿐만 아니라 의약품, 향수, 화장품, 놀이용 카드 등 다양하였음
  - 인지세는 남북전쟁 종료 후 점차 범위를 줄여 나가다가, 1883년 전면 폐지됨

95)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mip/html/mip\\_p06\\_c66.html%23mip\\_p06\\_c66\\_s\\_66.11](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mip/html/mip_p06_c66.html%23mip_p06_c66_s_66.11), 검색일자: 2023. 7. 5.

96) 장근호(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 미국 2편』, p. 107, 110.

97) investopedia.com, <https://www.investopedia.com/terms/s/stampduty.asp>, 검색일자: 2023. 7. 7.

98) 윤순상(2023), pp. 75~78. 참조

99) Mystic Stamp Company, <https://info.mysticstamp.com/this-day-in-history-july-1-1862/>, 검색일자: 2023. 7. 7.

- 1898년 「전쟁수입법(War Revenue Act)」에 근거하여 인지세가 재도입되었으며, 수차례 과세대상 조정을 거쳐 내국세법(IRC)상의 인지세는 1967년에 폐지됨
  - 재도입 명분은 쿠바문제로 인한 스페인과의 전쟁비용 충당을 위한 것임
  - 재도입 시 인지세 과세는 주류, 담배, 차 및 기타 오락을 포함한 광범위한 상품·서비스 및 주식 증서, 선하증권, 적하목록, 해상보험과 같은 다양한 법적·사업 거래를 대상으로 하였음
  - 1914년부터 내국세법에서 인지세를 규율하고 있다가 1967년에 연방 차원의 인지세는 전격 폐지됨
  
- 1967년 인지세제 폐지 직전 운용되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sup>100)</sup>
  - 과세대상은 법인에 의한 유가증권(지분증권, 채무증권)의 발행 및 해당 유가증권의 이전(Sales or transfers), 부동산양도증서(Conveyance)에 한정함
  - 인지세율은 권면액, 양도가액 등에 비례하는 단일의 정률세임
  - 인지세의 납부는 기본적으로 인지의 첩부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현금 납부 방식도 허용하였음
  
- 1968년 이후 각 주는 개별적으로 인지세를 유지하거나 변형하여 과세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형태는 주별로 상이함

### 3) 주별 통계

- 2022년 기준 각 주정부의 세수 중 인지세 비중은 <표 IV-1>과 같으며, 50개주 평균은 1.4%, 인지세를 운영하는 34개 주의 평균은 3.6% 수준임
  - 인지세 세수 비중은 플로리다주가 10.4%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워싱턴주 6.8%, 뉴햄프셔 6.7%, 뉴욕주 3.1% 순서임

100) United States Code: Documentary Stamp Taxes, 26 U.S.C.(1958), Chapter 34.-DOCUMENTARY STAMP TAXES section 4301 내지 section 4384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

〈표 IV-1〉 미국 각 주별 인지세 세수 비중(2022년)

주	비중(%)	주	비중(%)	주	비중(%)
앨라배마	0.4	루이지애나	-	오하이오	-
알래스카	-	메인	0.9	오클라호마	0.3
애리조나	-	메릴랜드	1.2	오리건	0.0
아칸소	0.6	매사추세츠	1.2	펜실베이니아	1.9
캘리포니아	-	미시간	1.4	로드아일랜드	0.0
콜로라도	-	미네소타	1.1	사우스캐롤라이나	1.5
코네티컷	1.4	미시시피	-	사우스다코타	0.0
델라웨어	0.5	미주리	0.1	테네시	2.3
플로리다	10.4	몬테나	-	텍사스	-
조지아	0.0	네브래스카	0.3	유타	-
하와이	1.8	네바다	1.6	버монт	2.6
아이다호	-	뉴햄프셔	6.7	버지니아	2.3
일리노이	0.1	뉴저지	1.8	워싱턴	6.8
인디애나	-	뉴멕시코	-	웨스트버지니아	0.3
아이오와	0.2	뉴욕	3.1	위스콘신	0.5
캔자스	-	노스캐롤라이나	0.4	와이오밍	-
켄터키	0.0	노스다코타	-	50개주 평균	1.4

자료: United States Census Bureau, <https://www.census.gov/data/tables/2022/econ/stc/2021-annual.html>, 검색일자: 2023. 7. 5.

### 나. 인지세 과세제도

□ 이하에서는 인지세제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인 뉴욕주와 플로리다주에 대해 살펴봄

## 1) 뉴욕주(101, 102, 103, 104)

## 가)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인지세 과세대상은 부동산 거래, 부동산담보대출 거래, 담배류의 거래로 문서가 아닌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함
  - 뉴욕주의 세목 중 인지세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부동산거래세(real estate transfer tax), 모기지등록세(mortgage recording tax) 및 담배인지세임
    - 부동산이란 주거용 부동산 및 상업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경제적 권리(economic interests)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며, 이러한 부동산 이전(양도, 교환 등)에 대해 부동산거래세(real estate transfer tax)가 부과됨
    - 부동산 구입 시 모기지(담보대출)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모기지등록세(mortgage recording tax)를 부담함
    - 뉴욕시에서 판매되는 담배류(Cigarette and Other Tobacco Products)에 대해서는 주 및 시 차원의 별도의 거래세(인지세)가 부과됨
  
- 다만, 다음과 같은 부동산의 거래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세가 면제됨<sup>105)</sup>
  - 채권 확보를 위한 부동산 양도 담보
  - 무상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 실질적 수익자의 변동 없이 명의만 변경되는 부동산 이전
  - 파산법(Federal Bankruptcy Act)에 의한 부동산 양도

101) Smartasset, <https://smartasset.com/mortgage/real-estate-transfer-taxes-in-new-york>, 검색일자: 2023. 7. 5.

102)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https://www.tax.ny.gov/pit/mortgage/mtgidx.htm>, 검색일자: 2023. 7. 7.

103) Mondaq, <https://www.mondaq.com/unitedstates/financial-services/1337400/mortgage-recording-taxes-in-new-york>, 검색일자: 2023. 7. 7.

104) City of New York, <https://www.nyc.gov/site/finance/taxes/business-cigarette-tax.page>, 검색일자: 2023. 7. 5.

105) New York Laws, REAL ESTATE TRANSFER TAX, Article 31 - 1405

- 특정 요건을 갖춘 부동산투자신탁(a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에 의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함<sup>106)</sup>
- 부동산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양도자이며, 모기지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차용자(borrower)임
  - 다만, 후술하는 고가주택 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세의 추가세금(additional tax) 및 보충적 세금(Supplemental Tax)은 원칙적으로 양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 부동산거래세의 경우 양도자의 특별한 사정(파산, 소득수준 등)에 의하여 인지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 마찬가지로 이러한 세금에 대해 양수자가 납부하지 않거나 면제받은 경우에는 양도자가 납세의무가 있음
  - 모기지등록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차용자가 부담하나, 해당 부동산의 용도나 소재지에 따라 대출기관에 특별추가세(special additional tax)가 부과될 수 있음<sup>107), 108)</sup>
- 담배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재판매를 위해 소매업자 등에게 담배류를 공급하는 도매업자(wholesale dealers)임

나) 과세표준 및 세율<sup>109)</sup>

- 부동산거래세는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일반세율은 500달러당 2달러임
  - 다만 인구 1백만 이상의 대도시 내에서 주택을 3백만 달러 이상(상업용 부동산은 2백만 달러 이상)의 양도가액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500달러당 1.25달러의 비율로 부동산거래세가 추가 가중됨
  - 또한 일정 요건의 고가 주택의 양도 시에는 양도가액에 대해 최고 3.9%의 부동산

106) New York Laws, REAL ESTATE TRANSFER TAX, Article 31 - 1402(b)(1)

107) Mondaq, <https://www.mondaq.com/unitedstates/financial-services/1337400/mortgage-recording-taxes-in-new-york>, 검색일자: 2023. 8. 9.

108) 뉴욕주정부, [https://www.tax.ny.gov/pit/credits/spec\\_add\\_mrt.htm](https://www.tax.ny.gov/pit/credits/spec_add_mrt.htm), 검색일자: 2023. 8. 9.

109) New York Laws, REAL ESTATE TRANSFER TAX, Article 31 - 1402, 1402A, 1402B

거래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음

-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가액의 1%에 해당하는 추가세금(mansion tax)이 부과되며, 특정 대도시 내 초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이에 더하여 양도가액의 0.25~2.9%에 해당하는 보충적 세금(Supplemental Tax)이 추가 부과됨

- 모기지등록세는 다음과 같이 주정부 및 카운티, 시 등에서 이중적으로 부과함
  - 주정부에서는 담보대출액의 100달러당 50센트를 기본으로 부과하며, 100달러당 25센트를 특별 추가세금으로 부과함
  - 또한 주정부는 대도시 지역 구분 여부 등에 따라 담보대출액의 100달러당 25~30센트를 추가 부과함
  - 카운티와 시에서는 담보대출액의 100달러당 25센트 내지 50센트를 부과함
  - 해당 부동산이 1~2인용 주택으로 계획된 주택이라면 담보대출액의 처음 1만달러까지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쉐련(Cigarette)에 대한 담배인지세는 10개비(ten cigarettes)당 75센트가 기본이나 경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만일 하나의 패키지에 20개비를 초과하여 담은 경우 20개비를 초과하는 부분부터는 5개비당 38센트로 부과함
  - 참고로 여타 담배류(Other Tobacco Products)에 대해서는 다양한 종량세의 세 부담 체계를 가지고 있음

#### 다) 신고 및 납부

- 부동산거래세는 부동산 양도일로부터 15일 내에 납부되어야 함
  - 인지(stamp)를 첨부하여 납부하는 방식 또는 해당 세액을 별도 납부하는 방식 모두 허용함<sup>110)</sup>

---

110) New York Laws Article 31(Real Estate Transfer Tax), § 1410

- 만일 납부기일 내에 부동산거래세가 납부되지 않으면 본세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와 매월 2%에 상당하는 추가 가산세가 부과됨<sup>111)</sup>
- 모기지등록세는 해당 부동산 소재 카운티 내의 등록소(recording office)에서 관련 담보대출내역 사실을 등록할 때 납부하여야 함
  - 만일 미납세액이 발생하면 월 0.5~1.0% 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됨
- 담배인지세는 도매업자가 인지를 첩부함으로써 납부함
  - 만일 미납되었을 때에는 본세의 7.5%의 가산세(default rate)가 부과되며, “연방 단기채금리 + 7%”에 상당하는 이자가 부과됨

라) 부동산거래세 세수 통계<sup>112)</sup>

- 2019/20년부터 2022/23년 4년 동안의 뉴욕주 총 세수에서 부동산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1.4% 수준임<sup>113)</sup>
- 뉴욕주에서 인지세로 분류되는 항목은 부동산거래세 외에 모기지등록세, 담배인지세 등도 존재하나 이들에 대한 통계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전체 세수에서 인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파악하기 어려움

〈표 IV-2〉 미국 뉴욕주의 부동산거래세 세수 비중

(단위: 천달러, %)

구분	2019/20	2020/21	2021/22	2022/23
부동산거래세	1,123,766	948,856	1,639,467	1,471,999
주 총세수	80,741,182	80,376,699	118,488,829	108,586,319
비중	1.3	1.2	1.4	1.4

자료: 뉴욕 주정부, [https://www.tax.ny.gov/research/collections/monthly\\_tax\\_collections.htm](https://www.tax.ny.gov/research/collections/monthly_tax_collections.htm) (2019~2023), 검색일자: 2023. 7. 10.

111) New York Laws, REAL ESTATE TRANSFER TAX, Article 31 - 1406

112)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https://www.tax.ny.gov/research/collections/monthly\\_tax\\_collections.htm](https://www.tax.ny.gov/research/collections/monthly_tax_collections.htm), 검색일자: 2023. 7. 6.

113) 뉴욕주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임

## 2) 플로리다주<sup>114)</sup>

### 가)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플로리다주의 문서인지세(documentary stamp tax)는 1931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sup>115)</sup> 문서인지세의 과세대상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4가지로 분류됨<sup>116)</sup>

○ ① 부동산 관련 증서(deeds): 부동산의 소유권 증서, 부동산 관련 각종 양수도 등의 계약서를 말하나 문서의 서명날인이나 교부 등과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 등의 거래가 있었다면 문서인지세 과세대상임<sup>117)</sup>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이익권의 양도증서
- 부동산 하자담보증서(Warranty deeds), 부동산 무담보양도증서(Quit claim deeds)
- 부동산과 관련한 목재, 가스, 기름 또는 광물권리권에 대한 계약서
- 증서에 대한 협정서(Contracts or agreements for deed), 증서에 대한 협정서의 양도증서(Assignments of contract or agreement for deed)
- 임차권의 수익에 대한 양도증서(Assignments of leasehold interest), 신탁수익에 대한 양도증서(Assignment of beneficial interest in a trust), 유질처분을 대신할 증서(Deeds in lieu of foreclosure)

○ ② 사채(bonds)

- 플로리다주 내에서의 사채 발행

○ ③ 어음 및 기타채무증권(Notes and other written obligations)

- 일람출급약속어음(Demand notes), 확정일출급약속어음(Term notes), 확정갱

114) 플로리다 주정부, [https://floridarevenue.com/taxes/taxesfees/Pages/doc\\_stamp.aspx](https://floridarevenue.com/taxes/taxesfees/Pages/doc_stamp.aspx), 검색일자: 2023. 7. 8.

115) 플로리다 주정부, "FLORIDA REVENUE ESTIMATING CONFERENCE 2022-FLORIDA TAX HANDBOOK including Fiscal Impact of Potential Changes," 2022, p. 74.

116) Chapter 201, Florida Statutes(F.S.)

117) 플로리다 주정부, [https://floridarevenue.com/taxes/taxesfees/Pages/doc\\_stamp.aspx](https://floridarevenue.com/taxes/taxesfees/Pages/doc_stamp.aspx), 검색일자: 2023. 7. 8.

신어음(Certain renewal notes)

- 소매할부판매계약서(Retail installment sale contracts)
- 차량담보대출(title loan)

- ④ 모기지 등(Mortgages, liens, and other evidences of indebtedness)
  - 모기지론이나 기타 담보채무 설정 증서

□ 부부 간 주택의 무상이전 관련 문서, 부동산기금을 통한 최초 부동산의 이전 관련 문서 등에 대해서 비과세함

□ 문서인지세 납세의무자는 문서작성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임<sup>118)</sup>

- 어느 일방이 납부를 약속하는 것은 과세관청에게 효력이 없음

나) 과세표준 및 세율

□ 문서인지세의 과세표준은 증서상의 대가(considerations)이며 세율은 과세문서 종류별로 0.7%, 0.35%의 2가지 유형이 있음

- 증서: 100달러당 70센트<sup>119)</sup>
- 사채, 어음 및 기타채무증권, 모기지 등: 100달러당 35센트
  - 다만, 어음 및 기타채무증권의 문서인지세는 최대 2,450달러로 제한됨

다) 신고 및 납부

□ 문서인지세의 납부절차는 해당 문서의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짐

- 증서, 모기지 등 해당 문서가 관계기관에 등록될 때는 그 시점에 납부하게 됨

---

118) Section 201.02(1)(a), Florida Statutes

119) 다만, 마이애미의 데이드(Dade) 카운티에서는 0.6%의 세율이 적용되며 추가적인 0.45%의 부가세(surtax)가 부과되는 구조임(다만 단독세대주택(single-family residence)인 경우에는 부가세는 적용하지 않음)

- 등록을 요하는 증서의 경우 부동산 거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등록이 불필요한 과세문서는 해당 문서 작성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0일 내에 플로리다주 세무당국에 직접 납부함
    - 전자신고납부 방식, 서면신고납부 방식 모두 허용됨
  - 한편, 최근 1년간 문서인지세 납부액이 5천달러 이상인 납세자의 경우에는 이듬해부터 전자납부방식만으로도 납부가 요구됨
- 만일 문서인지세의 무신고·미납 및 납부지연이 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달러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월 본세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추가 부과됨
- 다만, 가산세는 본세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라) 문서인지세 세수 통계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플로리다주 총 세수에서 문서인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2년은 10.4%에 달함

〈표 IV-3〉 미국 플로리다주의 문서인지세 세수 비중

(단위: 천달러,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문서인지세	3,034,381	3,317,815	4,846,085	6,166,778
주 총세수	45,017,095	43,314,743	49,305,384	59,236,859
비중	6.7	7.6	9.8	10.4

자료: 미국 인구조사국, “State Government Tax Tables(2019-2022) 참조,” <https://www.census.gov/>, 검색일자: 2023. 7. 5.

## 2. 일본

### 가. 개관 및 주요 개정 연혁

#### 1) 인지세의 성격

- 일본은 경제거래에 따라 작성되는 특정 문서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며, 문서 작성 행위 배후에 있는 납세력을 인지세 부과 근거로 보고 있음<sup>120)</sup>
  - 계약서나 영수증과 같은 문서가 생성되면 거래와 함께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경제거래를 위한 서류 준비는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사실을 명확히 하고 법적관계를 안정화시킴
  
- 일본은 국세의 형식으로 거래가 아닌 ‘과세문서’에 대해 과세함<sup>121), 122)</sup>
  - 인지세는 거래세의 일종이지만 유통거래에 따라 작성되는 특정 문서에 대해 과세하므로 ‘문서세’ 또는 문서작성에 대한 ‘행위세’라고 볼 수 있음
  - 인지세의 납세자 및 과세문서가 많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홍보, 지도 및 조사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안내하여 가능한 한 다수의 납세자와 접촉하고, 과세의 적정화 및 자주납세 의식의 고양에 노력하고 있다고 함
  
- 유통이나 거래 과정에서 인지세 외에 등록면허세(국세)나 부동산 취득세(지방세)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인지세와 중복하여 과세된다는 견해가 있음<sup>123), 124)</sup>

120) 일본 정부 내각부, 「일본 조세제도의 현황과 과제: 21세기를 위한 국민 참여와 선택 보고서(2000. 7.14.)」, <https://www.cao.go.jp/zei-cho/history/1996-2009/etc/2000/zeichof.html>, 검색일자: 2023. 7. 3.

121) 일본 「인지세법」 제2조

122) 국중호(2009), p. 394.

123)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aptb/html/aptb\\_2010\\_05\\_jp\\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aptb/html/aptb_2010_05_jp_1.html), 검색일자: 2023. 6. 30.

- 다음의 자산 등에 대해서 등록·등기를 행할 때 등록면허세가 부과됨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저당권 설정등기)
  -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의 무체재산권
  - 회사 설립, 자본 증가, 합병 등
- 또한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도부현에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2) 주요 변천내역<sup>125)</sup>

- 일본의 인지세제 역사는 크게 다음의 3개의 시대를 거쳐 왔다고 볼 수 있음
  - 1873~1899년: 「수취제증문인지점용심득방규칙(收取諸証文印紙貼用心得方規則)」 및 「증권인세규칙(証券印稅規則)」의 규칙시대
  - 1899~1967년: 구 「인지세법」의 구법시대
  - 1967년~현재: 「인지세법」의 신법시대

가) 1899년 구 「인지세법」 제정 전 인지세제의 태동

- 일본의 인지세는 1873년(메이지 6년) 2월 포고<sup>126)</sup> 제56호로 「수취제증문인지점용심득방규칙」이 발표되면서 시작되었음
  - 인지세 개념<sup>127)</sup>은 ‘경제거래에 따라 작성되는 다양한 서류에 과세하는 제도로 인지를 붙여 소인하는 것으로 납세하는 것’으로 정의됨
    - 인지세 제도는 당시 서구 국가에서 시행하던 형태를 참조함
  - 인지세 납부 대상 서류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분류됨

124) 마쓰도시, [https://www.city.matsudo.chiba.jp/InternationalPortal/en/forforeignresidents/TaxInformation.files/taxationguide\\_kor.pdf](https://www.city.matsudo.chiba.jp/InternationalPortal/en/forforeignresidents/TaxInformation.files/taxationguide_kor.pdf), 검색일자: 2023. 6. 30.

125) 윤순상(2023), pp. 38~46. 참조하여 작성함

126) 명치시대 초기의 행정명령

127)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about/organization/ntc/sozei/network/182.htm>, 검색일자: 2023. 7. 3.

- 분류 1: 금 및 기타 수취서류, 다양한 회사 입금 어음, 수하물 송장 등
- 분류 2: 차용증, 토지저택건물 매도 증거문서, 도급어음, 우표류 등

□ 인지세는 당시 메이지 정부의 새로운 통치체제 일환으로 아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도입되었음

- 막대한 재정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세원을 창출하여 조세수입을 확보함
- 상공업자와 농민 간의 형평성을 확보함
  - 상공업자는 조세부담률이 낮은 토지를 갖고 있었던 반면 빈농이 오히려 조세부담률이 높은 토지를 경작하고 있었으므로 인지세를 새로이 부과함으로써 상공업자에게도 조세부담을 어느 정도 증가시키는 조치를 취함
- 문서의 확실성을 보증하기 위함
  - 각종 경제적 거래를 증빙하는 문서에 수입인지를 붙임으로서 확실성을 담보해 주는 일종의 공증의 역할을 하여<sup>128)</sup> 경제적 거래비용을 낮춤

□ 그 후, 1874년(메이지 7년) 포고 제81호에 의해 「증권인세규칙」이 제정되었고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1884년(메이지 17년) 5월 포고 제11호에 의해 전면 개정되어 1899년(메이지 32년)까지 이어졌음

-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증권인세규칙」이 공포됨<sup>129)</sup>
  - 환어음류의 비과세 최저한도를 낮추고, 기타 과세대상 문서의 기재금액에 따른 세율이 체증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과세를 보다 확대함<sup>130)</sup>
- 1884년에는 수입인지 부착방식의 납세제도 정착, 정액세 부과방식 통일화를 주요

128) 당시 지세 개정 국장이었던 무쓰 무네미스(陸奥 宗光)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생소했을 인지세에 대한 안내 브로셔 제작을 제안하면서, 새로운 세금의 목적이 비단 세금 징수뿐 아니라 문서의 확실성을 보증하기 위한 것 또한 포함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음(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about/organization/ntc/sozei/quiz/2110/answer.htm>, 검색일자: 2023. 7. 3.)

129)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about/organization/ntc/sozei/network/182.htm>, 검색일자: 2023. 7. 3.

130)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about/organization/ntc/sozei/network/140.htm>, 검색일자: 2023. 7. 3.

내용으로 하여 「증권인세규칙」이 전면 재정비됨<sup>131)</sup>

나) 1899년 구 「인지세법」 제정~1967년 「인지세법」 제정 전

□ 1899년 일본은 근대 헌법을 제정하면서 기존 「증권인세규칙」을 폐지하고 「인지세법」을 새로이 창설함

- 현재 일본 인지세제의 근거가 되는 「인지세법」의 틀이 이때 마련됨<sup>132)</sup>
- 과세대상을 보다 명료화하고, 세액을 전반적으로 인상함

다) 1967년 「인지세법」 제정 이후

□ 고도성장 시기였던 1967년에는 과세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고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판정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세제조사회의 권고에 의해 「인지세법」(1967년 법률 제23호)은 전면 개정됨<sup>133)</sup>

- 과세대상을 개념적 포괄주의에서 한정적 열거주의로 변환하는 등 이때 개정된 「인지세법」은 그 형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

□ 1989년 다음의 5가지 문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물품우표
  - 물품우표란 상품권, 여행권, 도서권, 전화카드 등의 선불카드를 말함
- 질권, 저당권 등의 설정 및 양도에 관한 계약서
-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관한 계약서
- 위임장 또는 위임에 관한 계약서

131)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about/organization/ntc/sozei/network/182.htm>, 검색 일자: 2023. 7. 3.

132)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about/organization/ntc/sozei/network/140.htm>, 검색 일자: 2023. 7. 3.

133)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inshi/inshi301.htm>, 검색 일자: 2023. 7. 3.

- 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 이후에도 「인지세법」은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대부분 세액, 면세점 등 부분적인 개정  
에 그치는 수준으로 전체적으로는 제정 당시의 조문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 과세문서의 종류는 계속하여 20종으로 유지됨

### 3) 최근의 주요 논의사항

- 일본에서는 인지세 제도의 실효성 및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함
- 2017년 3월 참의원 사쿠라이는 인지세가 공정성·중립성·단순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으므로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질문주의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sup>134)</sup>
- 과세·비과세의 구분이 어려워 납부과정에서 다양한 불공정이 있다고 주장함
  - 인지세액은 서류의 종류와 계약금액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데, 이해하기 어렵  
고 애초에 왜 그러한 기준이 채택되었는지 알 수 없음
  - 동일한 금액의 서류를 작성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은 방식으로 인지세를  
부담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음
  - 세무사, 변호사, 의사 등의 행위와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에 인지세가 부과되  
지 않으므로 불공평함
  - 동일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종이문서와는 달리 전자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공평성이라는 기본적인 조세부과원칙에 위배됨
  - 석유, 가스, 주류 등 유통단계에서 과세되는 품목에 대한 인지세는 소비세를 고  
려할 때 3중 과세에 해당함

134) 일본 국회, <https://www.sangiin.go.jp/japanese/joho1/kousei/syuisyo/162/syuh/s162009.htm>, 검색일자: 2023. 7. 4.

- 일본에서 최초의 인지세는 상공업의 조세부담을 증가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현재 농업보다 상공업의 세부담이 전반적으로 무거우므로 도입 시 의도된 인지세의 역할이 이미 이행되었으므로 인지세의 폐지 검토가 필요함
- 2020년 11월 여당 공명당의 니시다 사네히토 의원은 인지세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세금이라 비판하며 과감한 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함<sup>135)</sup>
  - 전자계약은 종이문서와는 달리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지세 제도의 근본적 검토가 필요함
  - 건설업계에서는 원청회사와 하청업체가 여러 번 연결되어 하청업체마다 과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지세 부담이 큰 점을 지적함
  - 다만 세수적 중요도와 대체 세원 발굴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즉각적인 폐지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음
    - 1980년대 후반 소비세 본격화 논의 당시 인지세 폐지론이 대장성 내에 존재하기도 했으나 세수 문제 때문에 실현되지 않았던 바 있음<sup>136)</sup>
- 2022년 4월 편의점 대기업 훼미리마트의 대규모 인지세 탈루가 적발되면서, 인지세제가 가지고 있는 조세제도의 왜곡 문제가 재환기되었고 시대에 맞춘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sup>137)</sup>
  - 훼미리마트는 프랜차이즈 가맹점과의 거래 문서 60만통 이상에 인지를 붙이지 않아 1억 3천만엔의 인지세를 누락하였음
  - 인지세는 종이문서에만 부과되고 디지털화 속에서 늘어나는 이메일 등에 의한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비슷한 경제행위에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불공평성 문제가 대두됨
  - 세제는 국가권력의 행사이고 국민이 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는 구조가 전제되어야

135) 産経新聞, <https://www.sankei.com/article/20201105-IP6JNVVXA504ZJSTG3BVOWCAUQ/>, 검색일자: 2023. 7. 4.

136) 윤순상(2023), p. 57.

137) 朝日新聞,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5271371.html>, 검색일자: 2023. 7. 4.

하므로 시대 변화에 따른 인지세의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함

#### 4) 세수 통계

- 2017~2021년 5개년간 총 세수 중 인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세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회계연도의 경우 약 1.34%의 비중을 차지함
- 총 세수(국세와 지방세 합계) 중 인지세의 세수 비중은 2017년에는 1.69%였으나 점진적으로 낮아져 2021년에는 1.34% 수준임
- 2021년 회계연도 기준 인지세 세수는 9,608억엔이며 총 세수에서 약 1.34%를 차지함

〈표 IV-4〉 일본 2017~2021년 인지세 세수 비중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인지세(십억¥)	1,051.5	1,072.9	1,023.2	919.5	960.8
총 세수(조¥)	62.4	64.2	62.2	64.9	71.8
비중(%)	1.69	1.67	1.65	1.42	1.34

자료: 일본 재무성 통계(2019~2021년) 및 국립 국회도서관 통계(2017~2018년) 참조  
 재무성: [https://www.mof.go.jp/tax\\_policy/reference/account/data.htm](https://www.mof.go.jp/tax_policy/reference/account/data.htm)  
 국립 국회도서관: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1445539/www.mof.go.jp/tax\\_policy/reference/account/data.htm](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1445539/www.mof.go.jp/tax_policy/reference/account/data.htm)

### 나. 인지세 과세제도<sup>138)</sup>

#### 1) 납세의무자

-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국내에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자임<sup>139)</sup>, 140)

138) 2023년 기준 운용 중인 법률에 기초하여 작성함(일본 법률정보,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42AC0000000023\\_20230607\\_505AC0000000047&keyword=%E5%8D%B0%E7%B4%99%E7%A8%8E](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42AC0000000023_20230607_505AC0000000047&keyword=%E5%8D%B0%E7%B4%99%E7%A8%8E), 검색일자: 2023. 6. 30.)

139) 일본 「인지세법」 제3조

- 문서에 기재된 작성 명의인(서명날인 필요)이 문서의 작성자임
  - 만일 위임에 의해 대리인이 그 위임사무의 처리에 해당하는 대리인 명의로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문서의 작성자가 됨
- 과세문서의 '작성'이란 단순한 과세문서의 조제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문서가 될 용지 등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해당 문서의 목적에 따라 행사하는 것을 말함<sup>141)</sup>
- 만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2인 이상은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생성된 과세문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sup>142)</sup>

## 2) 과세대상 및 세액

- 인지세의 과세대상은 총 20종의 문서로 「인지세법」 별표1에서 과세대상 및 대상별 세액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음<sup>143)</sup>
  - 부동산 등에 대한 계약서, 소비대차 계약서, 도급 계약서, 주권, 예금통장 외에도 약속어음, 합병계약서, 정관 등 광범위하게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과세대상 여부의 판단은 명칭 등 형식에 의하지 않고 해당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 부호 등의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하여 결정됨
  - 인지세액은 1통(또는 1편)당 매겨지는 단순정액세와 계약금액(또는 기재금액)에 따른 차등정액세로 나누어짐

140)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aptb/html/aptb\\_2010\\_05\\_jp\\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aptb/html/aptb_2010_05_jp_1.html), 검색일자: 2023. 6. 30.

141) 「인지세법」 기본회람 제44조

142) 일본 「인지세법」 제3조 제2항

143) 일본 「인지세법」 제7조

〈표 IV-5〉 일본의 인지세 과세대상 및 세액

종류	과세표준 및 세액
① 1. 부동산, 광업권, 무체재산권, 선박 혹은 항공기 또는 영 업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2. 지상권 또는 토지 임차권의 설정 또는 양도에 관한 계약서 3. 소비 대차에 관한 계약서 4. 운송에 관한 계약서(용선에 관한 계약서 포함)	계약금액에 따른 11단계 차등정액세 (최대 60만엔)
② 도급에 관한 계약서 <sup>1)</sup>	계약금액에 따른 11단계 차등정액세 (최대 60만엔)
③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	기재금액에 따른 14단계 차등정액세 (최대 20만엔)
④ 주권, 출자증권 또는 사채권 또는 투자신탁, 대부신탁, 특 정목적 신탁 또는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	기재금액에 따른 5단계 차등정액세 (최대 2만엔)
⑤ 합병 계약서 또는 흡수 분할 계약서 또는 신설 분할 계약서	1통당 4만엔
⑥ 정관	1통당 4만엔
⑦ 계속적 거래의 기본이 되는 계약서 <sup>2)</sup>	1통당 4,000엔
⑧ 예금증서, 저금증서	1통당 200엔
⑨ 창하증권, 선하증권 또는 복합운송 증권	1통당 200엔
⑩ 보험증권	1통당 200엔
⑪ 신용장	1통당 4만엔
⑫ 신탁행위에 관한 계약서	1통당 4만엔
⑬ 채무의 보증에 관한 계약서(주된 채무의 계약서에 병기 하는 것 제외)	1통당 4,000엔
⑭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기탁에 관한 계약서	1통당 200엔
⑮ 채권 양도 또는 채무 인수에 관한 계약서	1통당 200엔
⑯ 배당금 영수증	1통당 200엔
⑰ 1. 매출 대금에 관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수취서 2.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수취서로 1에 해당하는 수취서 이외의 것	기재금액에 따른 14단계 차등정액세 (최대 20만엔)
⑱ 예금통장, 저금통장, 신탁통장, 부금통장, 보험료 통장	1편(1년당) 200엔

〈표 IV-5〉의 계속

종류	과세표준 및 세액
⑩ 소비대차통장, 도급통장, 유가증권 예치 통장, 금전 수취통장 등(단 ⑮에 열거된 통장은 제외)	1편(1년당) 400엔
⑳ 판취장 <sup>3)</sup>	1편(1년당) 4,000엔

주: 1) 도급계약이란 계약 당사자 중 1인이 과업을 완성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보상을 지불하는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강연·보안·기계유지보수·청소 등과 같은 무형적인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함.<sup>144)</sup> 이 외에 프로 야구선수, 영화배우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의 의무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등도 포함됨

2) 계속적 거래의 기본이 되는 계약서란 특약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은행거래약정서 및 기타 계약서로서 특정 상대방과의 사이에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의 기본이 되는 것을 말하며 계약기간의 기재가 있는 것 중 계약기간이 3개월 이내이며 갱신규정이 없으면 제외됨

3) 판취장이란 부동산거래계약, 소비대차계약, 도급계약 등 문서로 증명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둘 이상의 상대방으로부터 첨부증명을 받을 목적으로 작성하는 장부를 말함

자료: 일본 「인지세법」 별표 1: 과세 대상 재산 목록 참고

- 일본은 내용상 법정 과세문서(20종)에 해당되더라도 전자적 형태의 문서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음<sup>145), 146)</sup>
- 「인지세법」 기본고시, 「인지세 유틸리티 핸드북」 등에서 종이문서만을 과세문서로 보며 전자계약 문서는 인지세 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국세청 및 정부도 전자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힘
    - 일반적으로 전자기록은 위조 및 위조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종이문서보다 쉬운 경우가 많으며, 전자기록이 문서와 같은 정도로 법적 관계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 등 부정적 견해를 표명함<sup>147)</sup>

144)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inshi/tebiki/01.htm>, 검색일자: 2023. 7. 3.

145) LegalForce, [https://legalforce-cloud.com/media/no\\_revenue\\_stamp.html](https://legalforce-cloud.com/media/no_revenue_stamp.html), 검색일자: 2023. 6. 30.

146) Cloudsign, <https://www.cloudsign.jp/media/20170224-basics-of-e-contract-02/>, 검색일자: 2023. 6. 30.

147) 2017년 3월 참의원 의원 사쿠라이 미쓰루 씨가 제출한 인지세에 관한 질문에 대한 회답 진술서(5에서 발췌)

- 「인지세법」과 「조세특별조치법」은 정부가 작성한 문서 등 다음의 내용 등을 포함한 비과세 및 경감규정을 두고 있음<sup>148)</sup>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문서
  - 부동산 등 양도가액, 소비대차계약금액, 도급계약금액 등이 1만엔 미만인 것
  - 약속어음 및 환어음 기재금액이 10만엔 미만인 것, 어음의 복본 또는 등본
  - 신용금고 등 특정의 금융기관이 작성하는 예금통장
  - 자연재해 피해자의 5년 내 부동산 취득, 양도 등의 계약<sup>149)</sup>
  - 그 외 부동산 경기 하락 대응 목적으로 일정 계약금액 이상의 부동산 양도 계약, 건설공사도급 계약에 대한 한시적 경감<sup>150)</sup> 등

### 3) 신고 및 납부

-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과세 서류가 작성될 때까지 과세 서류에 인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함<sup>151)</sup>
  - 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음
- 다만, 과세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는 방식 외에 경우에 따라서 현금납부 방식이나 신고납부 방식도 허용됨<sup>152), 153), 154)</sup>
  - 인지세 해당액을 사전에 정부에 현금납부하고 세무서로부터 과세문서에 인지세 납부에 대한 사실(납부날인)을 표시할 수도 있음

148) 일본 「인지세법」 제5조

149) 「조세특별조치법」 제91조의2

150) 「조세특별조치법」 제91조

151) 일본 「인지세법」 제8조

152) 일본 「인지세법」 제6조, 제8조 내지 제11조

153) 일본 국세청,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1514405/www.nta.go.jp/m/taxanswer/7129.htm>, 검색일자: 2023. 6. 30.

154)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cta/html/cta\\_jp\\_s\\_014.html%23cta\\_jp\\_s\\_14.1.1.1](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cta/html/cta_jp_s_014.html%23cta_jp_s_14.1.1.1), 검색일자: 2023. 6. 30.

- 매월 세무서류를 지속적으로 작성하는 등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납세자 소재 세무서장의 사전 승인을 얻으면 과세문서 작성일의 다음달 말까지 인지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함
-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10% 또는 300%를 가산세로 부과함<sup>155)156)</sup>
  - 과세관청 인지 전 자진 납부하는 경우: 본세의 110%
  -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과세관청으로부터 인지세 미납 사실이 적발된 경우: 본세의 300%

### 3. 영국

#### 가. 개관 및 주요 개정 연혁<sup>157)</sup>

##### 1) 인지세의 성격

- 영국은 1694년에 對프랑스 전쟁에 필요한 자금 충당을 위한 임시조치로 인지세를 도입하였음<sup>158)</sup>
  - 법률 문서(계약서, 고용문서, 대학졸업장, 리스, 여권, 보험계약 등)<sup>159)</sup>에 사용되

155) 일본 「인지세법」 제20조

156) 일본 국세청,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1514405/www.nta.go.jp/m/taxanswer/7131.htm>, 검색일자: 2023. 7. 3.

157) OTS(1997), p. 9.

158) 영국 정부, “End of an era as stamp presses decommissioned by HMRC,” <https://www.gov.uk/government/news/end-of-an-era-as-stamp-presses-decommissioned-by-hmrc>, 검색일자: 2023. 6. 1.

159) Yiu Yu Butt(2016), p. 70.

는 모든 종류의 종이, 양피지, 송아지피지를 과세대상으로 함

- 현재 영국은 증권 및 부동산 양도거래를 대상으로 3개의 세목으로 구분하여 국세 형태로 인지세를 과세하고 있음
  - 인지세(Stamp duty), 인지대체세(Stamp Duty Reserve Tax, SDRT) 및 인지토지세(Stamp Duty Land Tax, SDLT)로 구분하여 운영함
  - 인지세 및 인지대체세는 증권에 대해, 인지토지세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함
- 인지세 이름의 세목 중 ‘문서’를 요하는 것은 ‘인지세(Stamp duty)’뿐임
  - 인지대체세와 인지토지세는 인지세에서 파생되었으나 문서가 아닌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엄밀히 보면 전통적인 인지세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sup>160)</sup>
  - 영국은 이 외 부동산 및 증권거래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음

## 2) 주요 변천내역

- 영국은 1694년 인지세 도입 이후 18·19세기 동안에는 과세대상을 신문, 복권 등으로 확대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축소하고 있음<sup>161), 162)</sup>
  - 영국은 인지세 도입 이후 법률문서 이외 복권, 헤어 파우더, 향수 등으로 과세대상을 확대하였음
  - 그러나 현대 들어 지속적으로 범위를 축소하여 20세기 중반에는 증권, 부동산, 무형자산(예: 지적재산권, 영업권) 거래로 과세대상을 한정함
  - 2000년에는 지적재산권, 2002년에는 영업권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2003년 재정법(Finance Act 2003)을 통해 인지세 과세대상을 증권 및 부동산 양도 관련 문서로 한정함<sup>163), 164)</sup>

160) Ken Wright(2020), p. 3.

161) Yiu Yu Butt(2016), p. 16.

162) Ken Wright(2020), p. 5.

163) Finance Act 2003 s. 125; Finance Act 2000 s. 129; HM Treasury(2002), p. 52.

- 영국 인지세제에서 가장 큰 변화는 1986년 전자방법에 의한 증권거래에 대해 인지 대체세(SDRT)를 도입한 것과 2003년 부동산 거래에 적용되던 인지세를 거래세로 전환한 것임<sup>165), 166), 167)</sup>
- 전자거래 비중의 증대와 인지세 회피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인지대체세를 신설하고 부동산에 대한 인지세를 인지토지세로 신설·전환함
  - 인지세는 특정 문서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인지세를 회피하기 위한 인위적 행위가 증가함
  - 또한,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증권거래가 보편화됨에 따라 증권거래에 대한 인지세 적용사례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부동산 등기등록도 문서가 아닌 전자시스템에 의해 가능하게 되자, 공정성·현대화 및 전자화 촉진을 목표로 인지세 제도를 대폭 수정함

### 3) 최근의 주요 논의사항

- 영국 국세청은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하는 인지세는 현행 경제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인지세와 인지대체세의 통합 및 개정을 검토 중에 있음<sup>168)</sup>
-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하는 인지세가 시대착오적 세목이라는 비판이 있음
- 2017년 조세간소화부서(Office of Tax Simplification) 역시 인지세와 인지대체세의 통합을 권고한 바 있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음
- 영국 국세청은 증권 관련 인지세를 현대화 및 디지털화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시점으로 판단하고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두 세제의 통합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함
  - 인지세와 인지대체세가 상호의존적임에도 불구하고 감면 등 일부 조항에 있어

164) 과세대상은 인지세 명목의 조세를 포괄하여 기술함

165) Inland Revenue(2002), p. 10.

166) HM Treasury(2002), p. 106.

167) Thomas(2006), pp. 1~2.

168) HMRC(2023), pp. 4~7.

불일치하는 면이 있으며 두 세목의 별도 존재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됨

#### 4) 세수 통계

- 최근 5년간 영국 국세청의 징수액<sup>169)</sup> 중 인지세 명목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의 평균은 약 2.5% 수준임
  - 2017/18년 과세연도부터 2021/22년 과세연도의 영국 국세청 징수액 중 인지세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2.1~2.8% 수준이며 평균값은 약 2.5%임<sup>170)</sup>
    - 인지세 등의 비중은 인지세, 인지대체세, 인지토지세 및 법인 소유 연간 부동산세(Annual Tax on Enveloped Dwellings)<sup>171)</sup>을 합산하여 계산됨
- 인지세 명목의 조세 징수액 중에서는 인지토지세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함
  - 2017/18년 과세연도부터 2021/22년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동안 전체 인지세 명목의 조세 중 인지토지세 징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적으로 약 75%임
  - 대상기간 동안 인지대체세가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19%, 인지세는 6% 수준임

169) 영국 국세청의 징수액에는 법인세, 개인소득세, 국민보험료, 자본이득세 등이 있음

170) 영국 정부, “National statistics\_HMRC tax receipts and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for the UK\_HMRC tax receipts and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for the UK: statistics table\_Table 3. Annual Contribution by Tax,”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hmrc-tax-and-nics-receipts-for-the-uk>, 검색일자: 2023. 7. 13.

171) 50만 파운드 이상의 영국 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매년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종의 부동산 보유세임(영국 정부, “Guidance Annual Tax on Enveloped Dwellings,” <https://www.gov.uk/guidance/annual-tax-on-enveloped-dwellings-the-basics>, 검색일자: 2023. 7. 13.)

〈표 IV-6〉 영국의 인지세 명목 조세 징수액(2017/18~2021/22년)

(단위: 백만파운드)

과세연도	인지세	인지대체세	인지토지세	합계
2017/18	710 (4.3%)	2,810 (17.1%)	12,905 (78.6%)	16,425
2018/19	755 (4.9%)	2,865 (18.4%)	11,940 (76.7%)	15,560
2019/20	950 (6.2%)	2,670 (17.5%)	11,600 (76.2%)	15,220
2020/21	625 (5.1%)	3,050 (24.7%)	8,670 (70.2%)	12,345
2021/22	1,455 (7.9%)	2,915 (15.8%)	14,100 (76.4%)	18,465
평균	899 (5.7%)	2,862 (18.7%)	11,843 (75.6%)	-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인지세 명목 조세 중 해당 세목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영국 정부, "Official Statistics\_UK Stamp Tax statistics\_UK Stamp Tax statistics 2021 to 2022- Tables\_Table 1: Classification of net receipts, 2003-04 to 2021-22,"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uk-stamp-tax-statistics>, 검색일자: 2023. 7. 13.

## 나. 인지세 과세제도

### 1) 인지세(Stamp duty)

#### 가)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인지세는 주식, 유가증권 및 특정 파트너십의 지분 양도와 무기명증서의 발행을 나타내는 종이 문서(paper instruments)를 과세대상으로 함<sup>172)</sup>
  - 주식(stock)이란 영국 또는 영국 이외의 법인 등에 의해 발행된 양도 가능한 주식, 펀드 또는 이자부장기부채(funded debt)를 말함
  - 유가증권(Marketable Securities)이란 주식의 형태는 아니나 영국 내의 모든 주식시장에서 판매되고 거래될 수 있는 증권형태의 자산을 말함
    -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부채(debt)는 대부자본(loop capital) 면제규정 등에 의

172) Finance Act 2003 s. 125; Stamp Act 1891 s. 122

해 세법상 자본의 성격을 갖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않음<sup>173)</sup>,<sup>174)</sup>

- 특정 파트너십이란 주식 및 유가증권을 자산으로 하는 파트너십을 말함
- 무기명증서는 발행과 관련된 문서에 대해 인지세가 부과됨<sup>175)</sup>

□ 인지세는 종이문서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바, 전자문서에 의한 주식양도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주식 등은 후술하는 인지대체세의 과세대상임

□ 거래대가가 1,000파운드 이하인 경우, 증여받은 증권, 혼인관계 중 배우자 간의 이전, 특정 비상장주식의 이전, 특정 대부자본(Loan Capital)과 관련된 문서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함<sup>176)</sup>

- 인지세 면제거래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에 문서를 송부할 의무가 없음
  - 다만, 소액거래(1,000파운드 이하)는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그 외, 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그룹 내 주식의 이동, 특정 자선단체로의 이전 등의 경우에는 인지세가 경감됨<sup>177)</sup>

- 인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에게 관련 문서는 송부해야 함

□ 「인지세법」은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하지 않음<sup>178)</sup>

---

173) Ken Wright(2020), p. 380.

174) HMRC(2023), p. 13.

175) HMRC, “STSM011040 - Introduction to Stamp Duty on shares and Stamp Duty Reserve Tax(SDRT): Stamp duty and SDRT basics: documents formerly chargeable,”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stamp-taxes-shares-manual/stsm011040>, 검색일자: 2023. 7. 13.

176) 영국 정부, “Guidance Stamp Duty reliefs and exemptions on share transfers,” <https://www.gov.uk/guidance/stamp-duty-reliefs-and-exemptions-on-paper-shares>, 검색일자: 2023. 7. 7.; Finance Act 1999 Schedule 13.; HMRC(2020), p. 5.

177) 영국 정부, “Guidance Stamp Duty reliefs and exemptions on share transfers,” <https://www.gov.uk/guidance/stamp-duty-reliefs-and-exemptions-on-paper-shares>, 검색일자: 2023. 7. 10.

- 인지세 납세증빙 없이는 증권 소유권 변동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매수인이 인지세를 부담하고 있음

#### 나) 과세표준 및 세율

- 인지세는 증권 등의 매매가격에 대해 0.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됨<sup>179)</sup>
  - 인지세 과세표준은 매매가격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계회사 간의 거래 등에 대해서는 시가가 적용될 수 있음<sup>180)</sup>
  - 청산서비스(clearing service)를 통한 예탁증권 관련 거래에 대해서는 1.5%의 특별세율이 적용되나 실무상 해당 거래는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특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sup>181)</sup>
- 무기명증서 발행은 증서로 양도할 수 있는 주식 시장가치에 대해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더 이상의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음<sup>182)</sup>
  -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06년 회사법(Companies Act 2006)은 무기명주식의 발행을 금지하였고 국세청은 더 이상 무기명증서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

#### 다) 신고 및 납부

- 납세의무자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문서의 서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문서를 국

178) HMRC(2023), p. 10.

179) HMRC, "STSM013010 - Introduction to Stamp Duty on shares and Stamp Duty Reserve Tax (SDRT): Stamp duty rates: Stamp Duty - the standard rate,"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stamp-taxes-shares-manual/stsm013010>, 검색일자: 2023. 7. 13.

180) Ken Wright(2020), p. 392.

181) Finance Act 1986, s. 67-72A; Ken Wright(2020), p. 402.

182) HMRC, "STSM063010 - Bearer instruments: rate and calculation of Stamp Duty on bearer instruments: rate and calculation of Stamp Duty on different types of bearer instrument,"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stamp-taxes-shares-manual/stsm063010>, 검색일자: 2023. 7. 10.; Croner-i(2019), p. 1929.

세청에 송부하고 인지세를 납부해야 함<sup>183)</sup>

- 과거 원본문서와 인지세 상당 금액을 국세청에 보내면 물리적으로 날인 후 회신 하였으나, 2020년 3월부터 인지세를 전자적으로 납부 및 날인번호를 부여받은 후 국세청에 관련 문서 사본과 납부증명을 송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소인서비스가 도입되었으며, 2021년 7월 19일부터는 물리적 소인방식은 폐지되고 전자소인만 유효하게 됨<sup>184), 185)</sup>

□ 관련 문서 및 인지세액을 기한 내에 미납·미송달 시 가산세 및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음<sup>186)</sup>

- 납부기한으로부터 12개월 내에 제출 및 납부한 경우에는 미납세액의 10%(300파운드 한도)를, 12개월부터 24개월 내는 미납세액의 20%,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납세액의 30%를 가산세로 함
  - 납부기한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써 고의성이 있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증가될 수 있음<sup>187)</sup>
- 기한 내 소인받지 않은 경우 이자세(지연이자)가 부과됨
  - 소득세, 자본이득세, 인지대체세, 인지토지세 등과 동일한 이자세율(현재 7.5%)이 적용됨<sup>188)</sup>

183) <https://www.gov.uk/guidance/pay-stamp-duty>, 검색일자: 2023. 6. 7.; <https://www.gov.uk/guidance/stamp-duty-on-shares>, 검색일자: 2023. 6. 7.

184) HMRC, "STSM011015 - Introduction to Stamp Duty on shares and Stamp Duty Reserve Tax (SDRT): Stamp Duty and SDRT basics: Stamp Duty-new method of stamping,"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stamp-taxes-shares-manual/stsm011015>, 검색일자: 2023. 7. 7.

185) HMRC, "STSM011015A - Introduction to Stamp Duty on shares and Stamp Duty Reserve Tax (SDRT): Stamp Duty and SDRT basics: Stamp Duty- withdrawal of physical stamping,"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stamp-taxes-shares-manual/stsm011015a>, 검색일자: 2023. 7. 7.

186) Stamp Act 1891 s. 15A & s. 15B; 영국 정부, <https://www.gov.uk/guidance/stamp-duty-penalties-appeals-and-interest>, 검색일자: 2023.

187) HMRC, "STSM153020 - Compliance: Stamp Duty penalties: mitigation,"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stamp-taxes-shares-manual/stsm153020>, 검색일자: 2023. 7. 21.

- 다만, 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를 강제하는 방식이 아닌 인지세 납부에 따른 날인이 없는 문서는 민사소송에서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관리되어 국세청이 아닌 등록기관이 감독하는 자발적 세금이라는 평가가 있음<sup>189)</sup>
  - 인지세 납부증서 없이는 증권 소유권의 변동등록이 불가하며 대출담보로 사용될 수 없고 각종 법적 의무의 이행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 등록이 불필요한 경우 실제 징수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등록기관은 법적 소유권 이전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인지세는 실질적 소유권(beneficial ownership) 이전에 관심을 둔다는 점에서의 간극이 지적됨<sup>190)</sup>
  - 국세청에게 인지세 준수 집행권한(compliance power)이 없음
  
- 인지세의 가산세 관련 분쟁은 타 세목과 마찬가지로 조세심판원(First-tier-Tribunal)에서 불복을 진행할 수 있으나, 그 외의 문제(예: 과세금액)는 대법원(High Court)에서만 불복이 진행될 수 있음<sup>191), 192)</sup>

188) 영국 정부, "Guidance HMRC interest rates for late and early payments(Updated 30 June 2023),"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ates-and-allowances-hmrc-interest-rates-for-late-and-early-payments/rates-and-allowances-hmrc-interest-rates-for-late-and-early-payments-rates-and-allowances-hmrc-interest-rates#income-tax-national-insurance-contributions-capital-gain-tax-stamp-duty-land-tax-stamp-duty-and-stamp-duty-reserve-tax-from-1-october-1999>, 검색일자: 2023. 7. 10.

189) OTS(2017), p. 10.; HMRC(2023), p. 28.; Croner-i(2019), p. 1930.; Stamp Act 1891 s. 14; HMRC, "STSM151010 - Compliance: introduction - Stamp Duty - Stamp Act 1891 s14(4),"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stamp-taxes-shares-manual/stsm151010>, 검색일자: 2023. 7. 10.; HMRC, "STSM015060 - Introduction to Stamp Duty on shares and Stamp Duty Reserve Tax (SDRT): Stamp duty - payment and penalties: the consequences of not stamping a document," 검색일자: 2023. 7. 10.

190) HMRC(2020), p. 11.

191) HMRC(2020), p. 14.

192) 반면, 후술하는 인지대체세와 인지토지세는 과세금액 및 가산세 등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에서 불복을 진행할 수 있음

## 2) 인지대체세(Stamp Duty Reserve Tax, SDRT)

### 가)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인지대체세는 전자방식에 의한 증권 양도거래의 증가현상을 반영하여 1986년에 신설됨<sup>193)</sup>
  - 인지세는 종이문서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바, 인지세의 과세대상인 증권의 경우에도 서면문서 이외의 방법에 의해 거래되는 경우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따라 1986년에 인지세의 대체보완수단으로 인지대체세를 신설함
- 인지대체세는 문서가 아닌 과세대상증권의 양도 약정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함<sup>194)</sup>
  - 종이문서에 의하지 않은 과세대상증권의 양도거래(예: 전자약정거래, 구두약정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함
    - 현재 대부분의 증권거래는 인지세가 아닌 인지대체세가 적용되고 있음<sup>195)</sup>
- 과세대상증권이란 영국에서 발행된 주식 등 아래의 것을 말함<sup>196)</sup>
  - 영국회사가 발행한 또는 영국에 증권등록부를 보유한 비영국회사에서 발행한 모 든 주식(stock, share), 대부자본(loan capital)
    - 인지세와 마찬가지로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부채(debt)는 대부자본 면제규정 등에 의해 세법상 자본의 성격을 갖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않음<sup>197)</sup>

193) HMRC, "STSM011020 - Introduction to Stamp Duty on shares and Stamp Duty Reserve Tax (SDRT): Stamp duty and SDRT basics: What is Stamp Duty Reserve Tax?,"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stamp-taxes-shares-manual/stsm011020>, 검색일자: 2023. 7. 7.

194) Finance Act 1986 s. 87

195) HMRC(2023), p. 5.

196) Finance Act 1986 s. 99(3); HMRC(2023), pp. 40~41.; HMRC, "STSM031090 - Scope of Stamp Duty Reserve Tax (SDRT): chargeable securities - general,"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stamp-taxes-shares-manual/stsm031090>, 검색일자: 2023. 7. 10.

- 주식 및 대부자본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및 기타권리에 대한 지분
  - 주식 및 대부자본의 할당·청약 또는 취득옵션 권리
  - 단위신탁(unit trust)의 단위, 개방형 투자회사(Open Ended Investment Company)의 주식
  - 영국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유사한 비영국회사가 발행 및 조달한 주식
  - 영국 공개유한책임회사(UK Societas)에서 발행 및 조달한 증권
- 주식의 증여, 특정 비상장주식의 이전, 특정 대부자본의 이전, 자선단체에 대한 이전 등에 대해 비과세 및 감면이 적용될 수 있음<sup>198)</sup>
- 인지대체세는 인지세와는 달리 소액 비과세 규정, 그룹 내 비과세 규정이 없음
    - 국세청은 인지대체세는 전자적으로 처리되므로 최소 기준금액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것으로 설명함<sup>199)</sup>
- 만일, 증권이 인지대체세와 인지세의 동시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기 납부 인지대체세를 환급하거나 미납부된 인지대체세를 취소함<sup>200)</sup>
- 증권의 이전 약정 시점에 인지대체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인지세 과세대상인 이전 문서의 실행으로 약정을 이행하는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함
  -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거래의 경우 인지대체세의 미납상태에서 인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대체세가 취소되며, 인지대체세가 이미 납부된 경우에는 기 납부세액을 환급함

197) Ken Wright(2020), p. 436.

198) 영국 정부, "Guidance Stamp Duty Reserve Tax: reliefs and exemptions," <https://www.gov.uk/guidance/stamp-duty-reserve-tax-reliefs-and-exemptions>, 검색일자: 2023. 7. 10.

199) HMRC(2023), p. 23.

200) Finance Act 1986 s. 92: HMRC, "STSM012010 - Introduction to Stamp Duty on shares and Stamp Duty Reserve Tax(SDRT): more about Stamp Duty and SDRT: interaction between Stamp Duty and Stamp Duty Reserve Tax,"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stamp-taxes-shares-manual/stsm012010>, 검색일자: 2023. 7. 7.

- 인지대체세의 납세의무자는 증권 등의 매수인임<sup>201)</sup>, <sup>202)</sup>
  - 관련 규정은 책임자(accountable person)에게 신고 및 납부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브로커가 수반된 경우에는 브로커가, 그 외는 매수자가 책임자임
  -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전자주식거래시스템(CREST)을 통해 중앙 집중적으로 신고 및 납부되고 있음

나) 과세표준 및 세율

- 인지대체세는 증권 등 매매가격에 0.5%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됨<sup>203)</sup>
  - 인지대체세 과세표준은 매매가격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계회사 간의 거래 등에 대해서는 시가가 적용될 수 있음<sup>204)</sup>
  - 청산서비스(clearing service)를 통한 예탁증권 관련 거래에 대해서는 1.5%의 특별세율이 적용됨<sup>205)</sup>

다) 신고 및 납부

- 인지대체세는 일반적으로 거래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납부되어야 함<sup>206)</sup>, <sup>207)</sup>

---

201) Finance Act 1986 s. 91; Stamp Duty Reserve Tax Regulations 1986(SI 1986/1711) s. 2; HMRC, "STSM142010 - Stamp Duty and Stamp Duty Reserve Tax administration: Stamp Duty Reserve Tax administration: introduction,"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stamp-taxes-shares-manual/stsm142010>, 검색일자: 2023. 7. 10.

202) HMRC(2023), p. 8.; Ken Wright(2020), p. 440.

203) Finance Act 1986 s. 87(6)

204) Ken Wright(2020), p. 435.

205) Finance Act 1986 s. 93 and s. 96; HMRC, "STSM014020 - Introduction to Stamp Duty on shares and Stamp Duty Reserve Tax(SDRT): SDRT rates: Stamp Duty Reserve Tax - higher rate for certain transaction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stamp-taxes-shares-manual/stsm014020>, 검색일자: 2023. 7. 10.

206) Finance Act 1986 s. 87(2) and s. 87(3)

207) HMRC, "STSM142070 - Stamp duty and SDRT Administration: SDRT Administration: notice of charge and accountable date,"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stamp-taxes-shares-manual/stsm142070>, 검색일자: 2023. 7. 10.

- CREST 내의 거래는 거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되어야 함
  - CREST 외부에서 이루어진 거래 중 CREST를 통해 보고될 수 있는 것은 약정 체결일 이후 14일 이내, 그 외는 익월 7일까지 신고 및 납부되어야 함
- 인지대체세의 지연 신고·납부 시에는 국세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산세 및 이자세가 적용됨<sup>208)</sup>
- 국세청은 인지대체세의 지연신고 등에 대해 소득세, 자본이득세 등과 같은 지연신고가산세, 정확성 오류가산세, 지연납부가산세를 부과함<sup>209)</sup>
    - 지연신고의 경우 미신고일에 100파운드, 6개월이 되는 날에 300파운드 또는 미신고세액의 5% 중 큰 금액, 12개월이 되는 날에 300파운드 또는 미신고세액의 5% 중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sup>210)</sup>
    - 과소신고유형(부주의·고의 및 과실 등)에 따라 정확성 오류 가산세를 부과함
    - 지연납부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후 31일이 되는 날에 미납세금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 납부기한으로부터 5개월 31일 후에 추가 5%, 11개월 31일 후에 추가 5%의 지연납부가산세를 부과함
  - 인지대체세를 지연납부하는 경우 이자세(지연이자)가 부과됨<sup>211)</sup>
- 인지세와는 달리 인지대체세의 신고·납부는 의무사항이며 국세청은 관련된 집행권

208) HMRC(2020), p. 15.

209) HMRC, "CH60100 - Penalties for failure to file on time: overview,"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ompliance-handbook/ch60100>, 검색일자: 2023. 7. 10.; HMRC, "CH154520 - Penalties for failure to pay on time: rules for specific taxes: Stamp Duty Reserve Tax (SDRT): failure to pay all or part of amounts due - overview,"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ompliance-handbook/ch154520>, 검색일자: 2023. 7. 10.; 영국 정부, "Guidance Stamp Duty Reserve Tax: penalties and appeals," <https://www.gov.uk/guidance/stamp-duty-reserve-tax-penalties-and-appeals#penalties-for-missing-a-deadline>, 검색일자: 2023. 7. 10.; Finance Act 2009 Schedule 56

210) 이와 별도로 과세관청은 신고기한으로부터 90일 경과 후 추가 가산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211) HMRC, "STSM142110 - Stamp duty and SDRT Administration: SDRT Administration: interest and repayment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stamp-taxes-shares-manual/stsm142110>, 검색일자: 2023. 7. 10.

한을 가지고 있음<sup>212)</sup>

- 국세청에게 정보수집 및 검사권한이 있음<sup>213)</sup>
-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4년 이내에 미납세액 등을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20년까지 연장됨<sup>214)</sup>

### 3) 인지토지세(Stamp Duty Land Tax, SDLT)

#### 가)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영국에서 일정한도액 이상의 부동산 관련 권리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인지토지세(Stamp Duty Land Tax, SDLT)의 납부의무가 있음<sup>215)</sup>
  - 부동산(freehold property), 신규 또는 기존 임차권(Leasehold), 공유지분구조에 따라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을 과세대상으로 함
    - Freehold란 건물과 부속 토지를 모두 소유하는 것이며, Leasehold란 특정 기간 동안(일반적으로 99년 또는 125년) 해당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하는 것을 말함<sup>216)</sup>
  - 스코틀랜드, 웨일즈는 인지토지세 대신 별도의 거래세를 적용함

212) HMRC, “STSM015060 - Introduction to Stamp Duty on shares and Stamp Duty Reserve Tax (SDRT): Stamp duty - payment and penalties: the consequences of not stamping a document,”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stamp-taxes-shares-manual/stsm015060>, 검색일자: 2023. 7. 10.

213) HMRC, “CH20150 - Information & Inspection Powers: Overview: Schedule 36 FA 2008,”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ompliance-handbook/ch20150>, 검색일자: 2023. 7. 10.

214) HMRC(2020), p. 15.

215) 영국 정부, “Stamp Duty Land Tax,” <https://www.gov.uk/stamp-duty-land-tax>, 검색일자: 2023. 7. 11.

216) 런던시, “The Mayor of London’s leasehold guide for Londoners,” <https://www.london.gov.uk/programmes-strategies/housing-and-land/homes-londoners/leasehold-guide?ac-52091=52083>, 검색일자: 2023. 7. 13.

- 인지토지세는 문서가 아닌 부동산 거래(land transaction)를 과세대상으로 함<sup>217)</sup>
  - 인지세는 이전의 효과를 주는 문서에 대한 과세이지만, 인지토지세는 문서의 유무에 무관하게 과세대상물건의 매매거래(transaction)에 과세함
  - 이와 같은 측면에서 2003년 신설 당시 인지토지세는 기존 인지세 규정에 비하여 면세점 상향 조정 이외에 실질적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기존 제도를 현대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sup>218)</sup>

-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인지세 감면, 그룹 내 거래 및 자선단체에 대한 거래 등에 대한 감면규정이 있음<sup>219)</sup>
  - 2017년 11월 22일부터 최초 주택 구매자(First-time Buyer)가 일정 금액 이하(62만 5천파운드)의 주택을 구매한 경우 감면 특례가 적용됨<sup>220)</sup>

- 인지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수자임<sup>221)</sup>
  - 공동매수, 파트너십 또는 신탁이 매수자인 경우 매수자 간에 연대책임이 있음

#### 나) 과세표준 및 세율

- 인지토지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은 부동산의 용도와 거래조건에 따라 상이함
  - 부동산 또는 임차권인지 여부, 임차권의 매매대가 구성요소, 주거용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표준 및 세율이 상이함

217) Finance Act 2003, s. 42

218) Thomas(2006), pp. 1~2.

219) HMRC, "SDLTM00070 - Introduction to Stamp Duty Land Tax (SDLT): Payment of tax - FA03/S86,"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stamp-duty-land-tax-manual/sdltm00070>, 검색일자: 2023. 7. 11.

220) 영국 정부, "Stamp Duty Land Tax," <https://www.gov.uk/stamp-duty-land-tax/residential-property-rates>, 검색일자: 2023. 7. 13.

221) Finance Act 2003, s. 85

- 부동산(freehold) 매수자는 매매가액에 최고 17%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부담함
  - 주거용 부동산은 매매가액 중 25만 파운드 초과분에 대해 5~12%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됨<sup>222)</sup>
    - 다주택자, 외국인은 상기한 일반세율에 2~3%p의 추가세율을 가산하여 세액을 계산해야 할 수 있음<sup>223)</sup>
  - 비주거용 부동산은 매매가액 중 15만 파운드 초과분에 대해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됨
  
- 임차권(leasehold) 매수자는 임차료의 순현재가치와 리스 프리미엄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부담함
  - 신규 임차권을 매수하는 경우 ① 지급한 리스 프리미엄 가액에 부동산(freehold)에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② 리스기간 동안 지급할 임차료의 순현재가치에 대해 1%(비주거용은 최고 2%)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함
  - 기존 임차권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대가에 부동산(freehold)에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세액으로 함

다) 신고 및 납부

- 납세의무자는 거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함<sup>224)</sup>

222) 법인의 경우 50만 파운드 이상 주거용 부동산 구매에 대해서는 별도세율(15%)을 적용함(영국 정부, "Stamp Duty Land Tax: corporate bodies," <https://www.gov.uk/guidance/stamp-duty-land-tax-corporate-bodies>, 검색일자: 2023. 7. 27.)

223) 영국 정부, "Stamp Duty Land Tax," <https://www.gov.uk/stamp-duty-land-tax/residential-property-rates>, 검색일자: 2023. 7. 13.; 영국 정부, "Higher rates of Stamp Duty Land Tax," <https://www.gov.uk/guidance/stamp-duty-land-tax-buying-an-additional-residential-property>, 검색일자: 2023. 7. 27.

224) Finance Act 2019, s. 46; HMRC, "SDLTM00060 - Introduction to Stamp Duty Land Tax (SDLT): Liability to tax - FA03/S85,"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

- 인지세와 달리 인지토지세는 신고납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과세관청에게 관리 감독권한이 있어 징수 행정이 용이한 것으로 봄<sup>225)</sup>
  - 세목에 ‘인지’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만 과세관청에게 문서를 제시하고 소인받을 의무가 없음<sup>226)</sup>
- 과세관청은 인지토지세가 신고·납부되면 확인증(SDLT5)을 발급하며 납세의무자는 이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등록하게 됨<sup>227)</sup>
- 확인증은 온라인상으로 다운로드받거나 서면으로 송부받을 수 있음
  - 확인증이 없는 경우 등기소에 등록할 수 없음<sup>228)</sup>
- 인지토지세 지연 신고 및 납부 시에는 가산세 및 이자세가 적용됨<sup>229)</sup>
- 국세청은 지연신고가산세, 정확성 오류 가산세를 부과함
    - 지연신고의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까지는 100파운드,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파운드를 부과하며 12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납세액 한도 내에서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됨<sup>230)</sup>
    - 부주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과소신고 여부에 따라 정확성 오류 가산세를 부과함
  - 인지토지세를 지연납부하는 경우 이자세(지연이자)가 부과됨

---

stamp-duty-land-tax-manual/sdltm00060, 검색일자: 2023. 7. 11.

225) Finance Act 2003, s. 42(3)

226) Croner-i(2019), p. 1798.

227) Croner-i(2019), p. 1798.; 영국 정부, “Guidance Stamp Duty Land Tax online and paper returns,” <https://www.gov.uk/guidance/stamp-duty-land-tax-online-and-paper-returns>, 검색일자: 2023. 7. 17.

228) Croner-i, “15.5 Registration at the Land Registry and the SDLT5 certificate,” [https://library.croner.co.uk/cch\\_uk/psdlt/15-5](https://library.croner.co.uk/cch_uk/psdlt/15-5), 검색일자: 2023. 7. 28.; Finance Act 2003 s. 79

229) 영국 정부, “Guidance Stamp Duty Land Tax online and paper returns,” <https://www.gov.uk/guidance/stamp-duty-land-tax-online-and-paper-returns>, 검색일자: 2023. 7. 17.; Rossmartin, “SDLT: At a glance, Stamp Duty Land Tax, rates & allowances,” <https://www.rossmartin.co.uk/land-a-property/409-stamp-duty-a-stamp-duty-land-tax#sdl-at-a-glance>, 검색일자: 2023. 7. 17.

230) Finance Act 2003, Schedule 10 part 3 and part 4

## 4. 아일랜드

### 가. 개관 및 주요 개정 연혁

#### 1) 인지세의 성격

- 아일랜드의 인지세(stamp duty)는 기본적으로 문서(document)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나,<sup>231), 232)</sup> 문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 인지세가 부과될 수 있음
  - 부동산, 영업권, 주식 거래 등의 열거된 문서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지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상장주식의 온라인 거래, 신용카드나 보험 등 문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도 인지세가 과세되므로 인지세를 순수한 문서세라 규정하기는 어려움
- 아일랜드에서는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excise duties) 외 별도의 거래세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취·등록세, 유가증권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음
  - 다만, 등록세(거래세)의 일종으로서 회사의 증자에 대한 회사자본등록세(companies capital duty) 세목이 별도로 있으며, 본 세목은 과거 인지세(stamp duty)의 일부였던 적이 있었음
- 아일랜드에서 인지세는 국세로서 운용됨

231) "Ireland Stamp Duty Manual," <https://www.irishstatutebook.ie/eli/1999/act/31/enacted/en/print.html>, 검색일자: 2023. 7. 24.

232)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hold/html/hold\\_ie\\_s\\_003.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hold/html/hold_ie_s_003.html), 검색일자: 2023. 7. 24.

## 2) 주요 변천내역<sup>233)</sup>

- 인지세는 1774년에 최초 시행되었으며, 1891년에 인지세제 관련 근대법인 「Stamp Act, 1891」, 「Stamp Duties Management Act, 1891」가 마련됨
  - 인지세는 1774년에 47종의 문서를 대상으로 임시적 과세를 한 것에서 출발함
    - 영국의 식민지 지배 등 군사적 목적에 의해 인지세가 도입됨<sup>234)</sup>
  - 그러나 이러한 임시 과세규정은 점차 영구·고착화되었으며, 1891년의 과세문서의 종류는 95종에 이르렀음
  
- 1891년부터 수차례의 제·개정이 있었으며 1999년에 통합인지세법인 「Stamp Duty Consolidation Act, 1999」가 새로이 제정·발효됨으로써 동 법으로 현재의 인지세제를 규율<sup>235)</sup>하고 있음
  - 1973년까지는 순수한 문서세로서의 형식을 띠고 있었다가 이후 거래세적인 과세대상도 추가됨
    - 1973년 회사의 주식발행에 대해 인지세가 부과됨(추후 회사자본등록세(companies capital duty)로 분류됨)
    - 1981년 신용카드에 대해 인지세가 과세되기 시작하다가 이후 현금카드, 각종 보험 등 그 과세범위가 넓어짐
    - 1996년 회사법(company law) 개정에 따라 주식 소유권이 문서적 절차 없이 전자적으로도 이전이 가능하게 되었음
  - 1999년 소득세, 법인세, 자본이득세 등에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수반하는 세법 개정이 있었으며, 이와 동시에 인지세제도 과세대상을 15종으로 줄이는 등 단순화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개편함

233) 아일랜드 의회, <https://www.oireachtas.ie/en/debates/debate/dail/1999-11-16/22/>, 검색 일자: 2023. 7. 27.

234) 아일랜드공화국은 1921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함

235) 재정법(Finance Act)도 매년 개정되면서 인지세제의 세부 규정을 규율함

- 1999년 이후 인지세제의 큰 틀은 유지되어 오고 있으며, 일부 과세대상 및 세율 적용 변경 등의 변화가 약간씩 발생하고 있음<sup>236), 237), 238)</sup>
  - 부동산 거래 문서에 대한 인지세율은 경제상황 등에 따라 비주기적으로 변동되어 오고 있음
    -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기존 0%, 7%, 9% 등 3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하다가 2010년에 1% 및 2%의 2단계 누진세율 체계로 변경함
    -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1년에 기존의 1~6%의 누진세 체계를 폐지하고 2%의 단일 비례세율을 도입하였으며, 이후 세율을 2017년에는 6%, 2019년에는 7.5%로 점차적으로 인상함
  - 2014년에는 기업 간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 간의 자산 이전이나 합병에 있어 인지세 면제 적용범위를 확대함
  - 또한 2014년에는 경제회복에 따른 금융권의 기여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 인지세(bank levy)를 도입함
    - 동 제도는 2023년 말에 일몰될 예정임
  - 2017년 6월부터 아일랜드 중소형 성장주식의 공개시장(Enterprise Securities Market of the Irish Stock Exchange)에 상장된 주식 거래는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2021년 5월부터 10채 이상 주택의 1년 내 일괄구입에 대해 10%의 고세율을 적용함

### 3) 최근의 주요 논의사항

- 인지세 제도 자체에 대한 존폐 논의는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236) 아일랜드 국세청, <https://www.revenue.ie/en/tax-professionals/tdm/stamp-duty/stamp-duty-manual/schedules/schedule1-to-SDCA-1999.pdf>, 검색일자: 2023. 7. 25.

237) 아일랜드 재무부, <https://www.gov.ie/en/collection/4f3cf-budget-2024-tax-strategy-group-papers/>, 검색일자: 2023. 7. 24.

238)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ie\\_s\\_14.3.%23cta\\_ie\\_s\\_14.3](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ie_s_14.3.%23cta_ie_s_14.3), 검색일자: 2023. 7. 24.

- 다만, 주식거래의 인지세율(1%)이 과중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sup>239)</sup> 2017년 일부 상장주식을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음
  - 주식거래에 대한 인지세 부과는 주식매입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자본효율을 떨어뜨리고 주식시장에서 유동성 저하와 저평가를 유발시키는 요인이며, 자기자본 조달을 어렵게 하여 부채비율 상승을 유발시키는 악영향을 초래함
    - 과도한 인지세로 인한 주식시장의 유동성 저하와 주식 저평가는 인지세 세수를 오히려 감소시킬 수도 있음
  - 정부는 2017년에 성장성 있는 중소형 주식이 거래되는 공개시장에 상장된 주식 거래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한 바 있으나, 이를 다른 주식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지 않음
  
- 한편 2023년 7월 18일 아일랜드 재무부 산하 세무전략그룹(Tax Strategy Group)은 인지세제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발표했는데,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추구하며 다음과 같은 중점 과제를 제안함<sup>240)</sup>
  - 신규주택의 공급 부양 및 해당 주택의 공평 분배를 위하여 관련 인지세제의 개편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청년층의 농지 구입 등 농업 분야 보호를 위해 관련 인지세 면제 요건을 완화하고 면제기간을 연장·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아일랜드 법인의 북미지역 미국예탁증권(ADR)의 거래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관련 미국예탁증권에 대한 대체결제(book-entry transactions) 방식의 거래에 대해서도 인지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문화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종료 예정인 은행 등에 대해 부과하던 인지세에 대해 은행 등의 자산·부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장 또는 대체제도의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39) Medium, <https://medium.com/@GerardBrady100/stamp-duty-vs-ireland-plc-82fdd91477e1>, 검색일자: 2023. 7. 26.

240) 아일랜드 재무부, <https://www.gov.ie/en/collection/4f3cf-budget-2024-tax-strategy-group-papers/>, 검색일자: 2023. 7. 24.

4) 세수 통계

- 2018~2022년 5개년간의 총 세수(국세 및 지방세 등)에서 인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대 수준으로써 2021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임

〈표 IV-7〉 아일랜드 2018~2022년 인지세 세수 비중

(단위: 1백만€,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인지세 세수	1,463	1,515	2,094	1,495	1,820
총 세수	54,633	58,312	56,685	67,528	82,417
총 세수 대비 비중	2.6	2.5	3.6	2.2	2.2

자료: 아일랜드 국세청 세수통계국, [https://data.gov.ie/dataset/revenue-tax-net-receipts-by-tax-head?package\\_type=dataset](https://data.gov.ie/dataset/revenue-tax-net-receipts-by-tax-head?package_type=dataset), 검색일자: 2023. 7. 26.

- 인지세 세수의 세부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거래, 주식 거래, 주거용 부동산의 거래 등의 순서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상기간 중 2020년을 제외한 기간 동안 부동산 및 주식 등의 거래에서 발생한 인지세가 전체 인지세수의 70~80% 비중을 차지함
    - 2020년에는 보험 분야의 인지세수가 증가하여 부동산 및 주식 등의 비중이 51%임

〈표 IV-8〉 아일랜드 인지세 세수 구성내역

(단위: 백만€)

구분		2019	2020	2021	2022
부동산 등의 자산	주거용	181.56	160.26	216.18	268.55
	비주거용	535.30	405.93	512.17	694.45
	소 합계	716.86	566.19	728.35	963.00
주식 등 지분증권		383.62	506.54	371.35	499.86

〈표 IV-8〉의 계속

구분		2019	2020	2021	2022
수표 및 신용카드 등	수표	15.25	11.91	10.64	8.29
	신용카드	37.21	75.18	47.03	47.16
	직불카드	0.00	0.11	0.15	0.00
	현금인출전용카드	0.46	0.22	0.00	0.15
	복합카드	17.01	18.40	5.16	7.79
보험	보험증서(단일비례세율)	2.04	2.38	2.00	2.60
	비-생명보험	158.21	145.78	146.46	160.59
	일반 권리증	0.22	588.01	-0.92	6.61
	생명보험	27.90	24.93	34.42	37.01
	연금보험	0.03	0.11	0.12	0.01
	가산세	0.03	0.00	0.01	0.02
특정 금융기관		156.31	153.9	150.03	86.70
인지세 합계		1,515.16	2,093.66	1,494.82	1,819.79

자료: 아일랜드 국세청 세수통계국, [https://data.gov.ie/dataset/breakdown-of-stamp-duty-receipts?package\\_type=dataset](https://data.gov.ie/dataset/breakdown-of-stamp-duty-receipts?package_type=dataset), 검색일자: 2023. 7. 26.

## 나. 인지세 과세제도<sup>241), 242), 243), 244)</sup>

### 1)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인지세의 과세대상은 「인지세법」(Stamp Duty Consolidation Act(SDCA), 1999)

241) PWC, <https://taxsummaries.pwc.com/ireland/corporate/other-taxes>, 검색일자: 2023. 7. 25.

242)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hold/html/hold\\_ie\\_s\\_003.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hold/html/hold_ie_s_003.html), 검색일자: 2023. 7. 24.

243)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ie\\_s\\_14.3.%23cta\\_ie\\_s\\_14.3](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ie_s_14.3.%23cta_ie_s_14.3), 검색일자: 2023. 7. 24.

244)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ma\\_ie\\_s\\_4.5.2.1.4.%23ma\\_ie\\_s\\_4.5.2.1.4](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ma_ie_s_4.5.2.1.4.%23ma_ie_s_4.5.2.1.4), 검색일자: 2023. 7. 25.

별표1에 열거되어 있으며 구체적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음

- 부동산의 판매(이전) 및 임대차(lease)
  - 영업권, 거래처 또는 그 채권(debtors or loans), 선납금, 보증금, 계약수익권(benefit of contracts), 임차자산개량권(tenants' fixtures) 등과 관련한 무형자산의 이전 거래
  - 주식 및 유가증권(stocks and marketable securities<sup>245</sup>)의 이전<sup>246</sup>
    - 주식결부 옵션, 주식으로부터의 이익권 이전 계약 등도 포함함
    - 주식 발행 자체는 과세대상 아님
    - 다만, 아일랜드 중소형 성장주식의 공개시장(Enterprise Securities Market of the Irish Stock Exchange)에 상장된 주식은 제외됨
  - 보험계약(policy of insurance)의 이전
  - 각종 신용카드, 수표, 보험 등의 증서(statements) 등
    - 신용카드, 현금카드, 직불카드, 생명보험, 상해보험, 연금보험 등
  - 특정 금융기관 징수(bank levy)
    - 다만 2023년에 관련 규정이 일몰될 예정임
- 전자문서(electronic documents or instruments) 거래에도 인지세가 부과됨<sup>247</sup>
- 전자수입인지 방식의 인지세 납부가 2009년 말부터 의무화됨으로써 종이문서와 전자문서 간의 구별 실익이 없음
- 일반적으로 부동산, 무형자산, 주식 등 자산의 이전 시에 발생하는 인지세는 매수자(양수인)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한 경우 예외가 있음<sup>248</sup>
- 다음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연대하여 부담함

245) 채무증권은 제외함

246) 아일랜드 국세청, <https://www.revenue.ie/en/property/stamp-duty/shares-stocks-marketable-securities/index.aspx>, 검색일자: 2023. 7. 31.

247) 아일랜드 재무부, <https://www.gov.ie/en/collection/4f3cf-budget-2024-tax-strategy-group-papers/>, 검색일자: 2023. 7. 24.

248) SDCA, section 1

- 자산의 생전 증여나 신탁이 발생하는 경우
- 자산의 교환·분할이 일어나는 경우
- 보험이나 신용카드 등

- 특수관계법인 간의 자산이전,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이전 등 다음과 같은 거래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음
  - 특수관계법인 간의 자산이전<sup>249)</sup>
  - 합병으로 인한 각종 자산의 이전, 기업재건을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의 취득 등
  -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의 이전
  - 그 외 기업 청산 시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가액 분배에 따른 자산의 이전, 자선단체의 자산 기부 등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규정이 있음

## 2) 과세표준 및 세액

- 인지세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가액과 시장가격(시가)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함(비례세 적용 거래에 한함)
  - 즉, 저가거래나 무상 증여의 경우 시가로 계산함
  - 부동산 임대(연 임대가 35년을 초과하는 장기임대차계약을 맺고 충분한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연 임대료가 아닌 당해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인지세의 세액 산정 방식은 자산종류에 따라 비례세율 적용, 단순 정액세 적용 등 다양함<sup>250)</sup>
  - 주거용 부동산의 이전 또는 임대(연 임대료 4만유로 초과만 해당): 거래금액에 따

249) SDCA, section 79

250) 아일랜드 국세청, "Stamp Duty Manual," <https://www.revenue.ie/en/tax-professionals/tadm/stamp-duty/stamp-duty-manual/schedules/schedule1-to-SDCA-1999.pdf>, 검색일자: 2023. 7. 25.

라 1~2%의 누진세율 적용

- 1백만유로 이하는 1%, 1백만유로 초과 부분은 2%

- 1년 내 10채 이상의 주거용 주택의 일괄 취득: 10%
  - 다만, 취득 후 2년 내 공익 목적의 특정 주택공급 기관 등에 임대를 놓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환급됨
- 비주거용 자산의 이전 또는 임대: 7.5%
  - 비주거용 자산에는 비주거용 부동산 외에 영업권 등 무형자산도 포함함
- 주식 및 지분증권의 거래(거래금액 1천유로 초과만 해당<sup>251)</sup>): 1%
  - 다만, 해당 주식 가치의 원천이 비주거용 자산으로부터 발생한다면 7.5%, 복합 주택 등으로부터 발생한다면 10%가 적용됨
- 보험계약의 이전: 0.1%
- 기타 그 밖의 증서: 건당 정액세
  - 예를 들어, 신용카드는 30유로, 직불카드는 최대 2.5유로, 수표는 0.5유로 등 다양하며,<sup>252)</sup> 보험증서의 경우 연령이나 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차등 결정됨
-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인지세는 은행에 별도 부과되는 예치이자유지세(Deposit Interest Retention Tax)와 연계하여 해마다 다르게 부과됨

### 3) 신고 및 납부

- 일반적으로 문서 실행일로부터 44거래일<sup>253)</sup> 내에 전자신고 방식으로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함<sup>254)</sup>

251) 아일랜드 국세청, <https://www.revenue.ie/en/property/stamp-duty/shares-stocks-marketable-securities/shares-and-share-options.aspx>, 검색일자: 2023. 8. 7.

252) Citizensinformation, <https://www.citizensinformation.ie/en/money-and-tax/tax/duties-and-vat/stamp-duty-on-financial-cards/>, 검색일자: 2023. 7. 31.

253) 법문상의 신고납부기한은 30거래일 내이나 44거래일까지는 이자 및 부가금 부과가 없으므로 실제적으로 44거래일까지임

254) "Ireland Stamp Duty Manual," <https://www.irishstatutebook.ie/eli/1999/act/31/enacted/en/print.html>, 검색일자: 2023. 7. 24.

- 전자신고제도는 2011년 6월부터 의무화됨
  - 온라인으로 인지세를 납부하여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는 형식의 전자수입인지(e-stamping) 제도는 2009년 말부터 의무화됨
    - 온라인상에서 당해 과세대상 자산의 거래 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는 방식임
    - 2009년 이전에는 인지를 계약서 등에 첨부하는 방식이었음
  - 주식 거래의 경우 다음의 두 가지 방식의 인지세 납부를 모두 인정함<sup>255)</sup>
    - 주식 소유권을 확인해 주는 주식증명서(share certificate)에 의해 거래하는 경우 전자수입인지 방식으로 납부함
    - CREST라는 공인된 전자시스템하에 거래할 경우 자동적으로 납부됨
  - 다만, 카드·보험·수표 관련 인지세는 해당 금융기관(은행, 보험회사 등)에서 일괄하여 납부함
- 인지세액을 기한 내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이전 자산의 과소평가 오류 포함)한 경우에는 이자 및 부가금(surcharge)을 부담함
- 이자는 매일 0.0274%(2023년 기준)의 이자율로 계산됨
  - 만일 문서상의 실행일로부터 62일이 지나도록 미납세액이 발생하게 되면 이자 외에 부가금이 추가 부과됨
    - 62~91일: 미납세액의 5%(최대 12,695유로를 한도로 함)
    - 92일 경과: 미납세액의 10%(최대 63,485유로를 한도로 함)

255) 아일랜드 국세청, <https://www.revenue.ie/en/property/stamp-duty/other-stamp-duty/crest/index.aspx>, 검색일자: 2023. 7. 31.

## 5. 호주

### 가. 개관 및 주요 개정 연혁

#### 1) 인지세의 성격

- 호주는 1865년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인지세를 도입 후 현재도 지방정부에서 과세하는 지방세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sup>256), 257)</sup>
  - 인지세 도입에 따라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서(예: 재산의 이전)의 작성을 위해 공식적 날인이 요구되었으며, 이를 통해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고 탈세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됨<sup>258)</sup>
  
- 문서에 과세하는 전통적 인지세와 달리 현행 호주의 인지세는 주로 거래(transaction)를 과세대상으로 함
  - 1995년 인지세 다시쓰기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의 문서 기반에서 거래 기반으로의 변화가 가속되었다는 평가가 있음<sup>259)</sup>
    - 해당 프로젝트는 종이문서 없는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문서 기반 인지세의 문제를 지적하고 모든 지방정부에 적용되는 통일된 인지세가 필요함을 강조함
    - 뉴사우스웨일스주, 호주 수도 특별구, 빅토리아주, 태즈메이니아주, 퀸즐랜드주, 서호주주는 해당 프로젝트 결과를 인지세제에 도입한 반면, 남호주주와 노던 테리토리는 기존 문서 기반의 전통적 과세체계를 원칙으로 함<sup>260)</sup>

256) <https://www.propertycouncil.com.au/opinion-pieces/stamp-duty-anniversary>, 검색일자: 2023. 6. 8.

257) Cannon(1996), p. 2.

258) <https://www.abc.net.au/news/2013-02-01/janda-stamping-out-inefficient-duties/4496356>, 검색일자: 2023. 6. 8.

259) Cannon and Edmundson(2006), *Introduction*

- 현재 호주 지방정부 상당수가 거래문서가 없는 경우에도 과세하고 있어 거래세 개념이 강한 것으로 평가됨<sup>261), 262), 263)</sup>
  - 일부 지방정부(예: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설명자료에서 인지세(stamp duty)라는 법률용어가 아닌 거래세(transfer tax)로 해당 세목을 지칭하기도 함<sup>264)</sup>
  - 조사대상인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남호주주의 경우 부동산 및 증권 등에 대해 인지세 이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음

## 2) 주요 변천내역

- 기존 인지세제에 대해 과세대상 및 세율이 지방정부마다 상이하고 조세중립적이지 않으며 국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는 비판적 견해가 존재했음<sup>265), 266)</sup>
- 모든 차입이 아닌 특정 차입에 대해서만, 다른 지불수단과는 달리 수표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등 조세중립적이지 않음
- 금융거래에 대한 인지세는 역진적이며 때로는 신용도가 낮은 계층 및 저소득층에게 더 가혹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음
- 납세자가 각기 다른 지방정부의 인지세제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심각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며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가 야기되는 부작용이 있음
- 유가증권에 대한 인지세는 유사제도가 없는 타 국가에 비해 호주의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측면이 있음

260) Wolters Kluwer(2023), p. 1764.

261) Amrit MacIntyre(2010), pp. 358~360.

262) "Letter from the Editor," *Asia-Pacific Tax Bulletin*, September/October 2010, IBFD, 2010, p. 358.

263) Amrit MacIntyre(2010), p. 360.

264) <https://www.revenue.nsw.gov.au/taxes-duties-levies-royalties/transfer-duty>, 검색일자: 2023. 6. 14.

265) Treasurer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1998), pp. 74~75.

266) DJ Collins(1996), p. 26.

- 이를 반영하여 호주 연방정부는 1999년 4월 부가가치세(Good and Services Tax, GST) 도입에 앞서 지방정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인지세 과세대상 중 다수를 폐지하기로 합의함<sup>267)</sup>
  - 호주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는 GST 도입에 따른 세수를 주정부에 배분하되, 비효율적이고 성장을 감소시키는 일부 세금을 폐지하기로 합의함
  - 이의 일환으로 2001년 7월부터 상장 유가증권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고 그 외 아래 항목에 대한 인지세는 2005년까지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함
    - 유가증권(marketable securities)
    - 주거용 부동산 이외 자산의 양도(non-residential conveyances)<sup>268)</sup>
    - 리스(leases)
    - 모기지, 사채(bonds), 채권(debentures) 및 기타 차용증권(loop securities)
    - 신용거래계약(credit arrangements), 할부구매계약(instalment purchase arrangements), 렌탈 계약(rental arrangements)<sup>269)</sup>
    - 수표, 환어음(bills of exchange), 약속어음(promissory notes)
  
- 주요 항목의 인지세 폐지 연혁은 아래 표와 같음
  - 2023년 현재 호주 모든 지방정부에서 모기지, 리스, 물품대여 및 비상장주식에 대한 인지세가 폐지되었으나 사업용 자산에 대한 인지세는 일부 지방정부에서 과세함

267) 호주 국회(Parliament of Australia), <https://parlinfo.aph.gov.au/parlInfo/search/display/display.w3p;query=Id%3A%22media%2Fpressrel%2F0T606%22>, 검색일자: 2023. 6. 8.

268) 주거용 부동산 이외의 자산(property)의 양도로 비주거용부동산, 부동산 이외 사업용 자산(예: 지적 재산, 영업권, 법정 라이선스) 등의 양도에 대한 인지세를 말함

269) 신용계약에 의한 대출, 대출·할인거래 및 신용계약과 관련된 신용사업거래, 할부구매약정에 따라 구매할 상품가격, 상품 대여료(rent paid in respect of the hire of goods) 등에 대한 인지세를 말함

〈표 IV-9〉 호주의 주요 항목별 인지세 폐지 연혁

구분	모기지	리스 <sup>1)</sup>	물품대여 <sup>2)</sup>	비상장주식	사업용 자산
NSW	2016. 7.	2008. 1.	2007. 1.	2016. 7.	2016. 7.
VIC	2004. 7.	2001. 4.	2007. 1.	2002. 7.	n/a
QLD	2008. 7.	2006. 1.	2007. 1.	2007. 1.	무기한 연기 <sup>3)</sup>
WA	2008. 7.	2004. 1.	2007. 1.	2004. 1.	무기한 연기 <sup>3)</sup>
SA	2009. 7.	2004. 7.	2009. 7.	2015. 6.	2015. 6.
TAS	2007. 7.	n/a	2002. 7.	2002. 7.	2008. 7.
ACT	n/a	2009. 7.	2007. 7.	2010. 7.	2006. 7.
NT	n/a	2006. 7.	2007. 7.	2006. 7.	무기한 연기 <sup>3)</sup>

주: 1. 지방정부는 약어로 표기함(NSW 뉴사우스웨일스주, VIC 빅토리아주, QLD 퀸즈랜드주, WA 서호주주, SA 남호주주, TAS 테즈메이니아주, ACT 호주 수도 특별구, NT 노던 테리토리)

1) 리스는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한 리스를 말함

2) 물품대여(hire of goods)는 물품대여자가 아닌 자가 언제든지 해당 물품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약정을 말하는 것으로 할부구매계약이 포함됨

3) 퀸즈랜드, 서호주, 노던 테리토리는 당초 사업용 자산의 폐지일정을 발표하였으나 현재로서는 무기한 연기된 상태임

자료: Cannon and Edmundson(2006), *The rewrite and subsequent changes to the tax base*를 바탕으로 하되, 최신 내용은 Wolters Kluwer(2020), pp. 1844~1845 참조

- 상기 주요 항목 외에도 호주의 인지세 과세대상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남호주주와 서호주주는 1998년, 2004년에 수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함<sup>270)</sup>, <sup>271)</sup>
  - 남호주주는 2018년부터 비주거용 및 비주요 생산용 부동산의 양도와 단위신탁의 이전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함<sup>272)</sup>
  - 호주 수도 특별구는 2016년 7월부터 보험계약의 인지세를 폐지하였으며, 2022년 7월부터 170만호주달러 이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함<sup>273)</sup>, <sup>274)</sup>

270) 남호주 세입청, "StampDuties Circular No. 162," [https://www.revenuesa.sa.gov.au/\\_\\_data/assets/pdf\\_file/0003/204186/HISTORIC\\_C162.pdf](https://www.revenuesa.sa.gov.au/__data/assets/pdf_file/0003/204186/HISTORIC_C162.pdf), 검색일자: 2023. 6. 14.

271) Department of Treasury and Finance Government of Western Australia(2003), p. 15.

272) 남호주 세입청, "Information Circular 75," [https://www.revenuesa.sa.gov.au/forms-and-publications/information-circulars-and-revenue-rulings/information-circulars/ic\\_075](https://www.revenuesa.sa.gov.au/forms-and-publications/information-circulars-and-revenue-rulings/information-circulars/ic_075), 검색일자: 2023. 6. 14.

## 3) 최근의 주요 논의사항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주는 지속적으로 인지세 과세범위를 축소하고 있으며, 2023/24년 예산에서도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빅토리아주는 상업용 및 산업용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인지세와 사업체의 보험계약에 대한 인지세의 폐지를 발표함<sup>275)</sup>
    - 2024년 7월부터 상업용 및 산업용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고 이를 연간 재산세로 전환할 예정임
    - 사업체의 보험계약에 대한 인지세를 2024년부터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임
  - 노던 테리토리는 2023년 5월 9일부터 사업용 자산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함<sup>276)</sup>
    - 사업용 자산이란 토지 이외의 영업권, 지적재산권, 법정 라이선스 등을 말함
- 호주 인지세 세수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이전에 대해서도 인지세를 폐지하고 보다 세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이 담보되는 세금으로 대체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Deloitte(2015)는 토지 이전에 대한 인지세는 납세자의 행동을 왜곡하고 주정부의 예산책정에 있어 불확실성을 야기하며 형평성 관점에서 문제가 있어 토지 이전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함<sup>277)</sup>
    - 반드시 부가가치세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며 대체가능한 옵션 중 하

273) 호주 수도 특별구 세입청, "Tax reform," <https://www.revenue.act.gov.au/tax-reform#:~:text=Insurance%20duty%20was%20abolished%20in,ACT%20Government's%20tax%20reform%20agenda>, 검색일자: 2023. 6. 15.

274) 호주 수도 특별구 세입청, "Conveyance duty," <https://www.revenue.act.gov.au/duties/conveyance-duty>, 검색일자: 2023. 6. 15.

275) 호주 빅토리아 세입청, "State Budget 2023-24 announcement," <https://www.sro.vic.gov.au/state-budget-2023-24-announcement>, 검색일자: 2023. 6. 15.

276) 노던 테리토리 재무부, "Stamp Duty," <https://treasury.nt.gov.au/dtf/territory-revenue-office/stamp-duty>, 검색일자: 2023. 6. 15.

277) Deloitte(2015), i - ii

나로 부가가치세를 선택하여 경제성 분석을 진행함<sup>278)</sup>

- 뉴사우스웨일스주 재무부(2020)는 인지세의 변동성과 비효율성에 주목하며 재산세(land tax)와 같은 폭 넓은 과세 기반을 가진 안정적 세원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sup>279)</sup>

#### 4) 세수 통계

- 인지세는 전통적으로 호주 주정부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임<sup>280)</sup>
  - 2017/18년 과세연도부터 2021/22년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인지세는 호주 주정부의 세수 중 평균적으로 21%의 비중을 차지함
- 주정부의 세수 중 인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호주 전국적으로 균일하지 않으며 연도별로도 변동성을 보임
  - 2021/22년 과세연도의 경우 뉴사우스웨일스주, 빅토리아주 및 노던 테리토리는 인지세가 32%의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남호주주는 21%의 비중을 차지함
  - 2017/18년 과세연도부터 2021/22년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인지세 비중은 20% 초반에서 30% 초반에 걸쳐 차지함

〈표 IV-10〉 호주 주정부의 인지세액(2017/18~2021/22년)

(단위: 백만호주달러)

구분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NSW	9,498 (27%)	7,667 (21%)	7,723 (22%)	10,577 (27%)	14,473 (32%)
VIC	8,144 (29%)	7,229 (25%)	7,310 (25%)	7,580 (26%)	11,844 (32%)

278) Deloitte(2015), p. 1.

279) NSW Treasury(2020), pp. 256~265.

280) Deloitte(2015), p. 4.

〈표 IV-10〉의 계속

구분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QLD	3,566 (21%)	3,750 (20%)	3,574 (19%)	4,616 (23%)	7,039 (29%)
WA	1,803 (17%)	1,460 (13%)	1,675 (15%)	2,604 (21%)	3,200 (23%)
SA	1,002 (16%)	934 (15%)	991 (16%)	1,238 (19%)	1,593 (21%)
TAS	302 (20%)	298 (19%)	364 (22%)	396 (22%)	461 (23%)
ACT	256 (15%)	278 (14%)	233 (12%)	285 (14%)	482 (20%)
NT	97 (13%)	101 (13%)	89 (14%)	117 (17%)	281 (32%)
합계	24,667 (24%)	21,716 (21%)	21,961 (21%)	27,411 (24%)	39,372 (30%)

주: 1.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세수액(주정부 및 산하 지방정부) 중 인지세가 차지하는 비중임  
 2. 통계상 세목분류 중 인지세로 기재된 항목(Stamp duties on conveyances, Stamp duty on vehicle registration)을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55060DO001\_202122 Taxation Revenue, Australia, 2021-22," <https://www.abs.gov.au/statistics/economy/government/taxation-revenue-australia/latest-release#data-downloads>, 검색일자: 2023. 7. 6.

### 나. 인지세 과세제도

- 호주는 주정부별로 과세대상이 상이하나 주된 과세대상은 부동산 이전거래임
  - 2001년 이후 다수의 인지세 항목이 폐지되었으나 부동산 이전거래는 폐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는 부동산 관련 인지세가 주정부 예산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이하에서는 호주의 대표적 지방정부인 뉴사우스웨일스주와 전통적인 인지세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남호주주의 인지세제에 대해 살펴봄

## 1)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인지세 과세제도

### 가)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인지세의 주요 과세대상은 부동산 이전 등의 거래(transaction)로써 과세를 위해 문서를 요하지 않음<sup>281)</sup>
  - 과세대상거래에는 이전(양도, 교환 및 환매 등) 및 과세대상자산의 판매 또는 이전에 대한 약정(agreement), 과세대상자산의 신탁 선언, 과세대상자산의 저당권에 대한 압류, 과세대상자산의 수익적 소유권의 변경 등이 해당됨<sup>282)</sup>
  - 부동산이란 토지, 이전 가능한 바닥 공간(transferable floor space), 토지사용권, 토지 등을 보유한 파트너십의 지분 등을 말함
  
- 그 외 차량의 등록과 보험계약도 인지세 과세대상임
  - 차량은 신규 자동차의 등록, 중고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과세대상으로 함<sup>283)</sup>
  - 보험계약은 일반보험, 생명보험을 과세대상으로 함<sup>284)</sup>
    - 일반보험이란 자산 및 정상적 과정에서 작위·부작위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보험으로 자동차보험, 항공보험, 산재보험, 농작물보험 등이 해당함<sup>285)</sup>
  
- 생애 첫 구매 주택, 가족 간 자산 이전 등에 대해서 인지세가 면제될 수 있음
  - 생애 첫 구매 주택자로 주택가치가 80만호주달러(택지는 45만호주달러) 이하인

281) Duties Act 1997 s. 8, s. 10

282) Duties Act 1997 s. 8(3)

283) Duties Act 1997 s. 261

284) Duties Act 1997 Chapter 8

285) 뉴사우스웨일스 세입청, "Types of insurance," <https://www.revenue.nsw.gov.au/taxes-duties-levies-royalties/insurance-duty/types-of-insurance>, 검색일자: 2023. 6. 15.

경우 인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sup>286)</sup>

- 부부간 공동명의를 위한 주거용 재산의 지분 이전, 이혼 후 재산분할 목적의 자산 양도 및 차량이전 등에 대해서 인지세가 면제될 수 있음<sup>287)</sup>
  - 소기업의 영업용 자동차 보험, 영업용 항공 보험 등에 대해서 2018년부터 인지세가 면제됨<sup>288)</sup>
- 과세대상자산의 이전과 관련된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매수인이며, 차량 및 보험계약은 각각 등기신청서 제출인과 보험회사(insurer)임<sup>289)</sup>

나) 과세표준 및 세율

- 인지세 과세표준은 자산의 매매가액과 시장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함<sup>290)</sup>
- 보험계약의 경우는 보험료를 과세표준으로 함<sup>291)</sup>
    - 다만, 생명보험 중 일부항목은 보험금을 과세표준으로 함
- 인지세율은 누진세율 또는 단일의 정률세율에 의함<sup>292)</sup>
- 부동산의 이전 및 차량등록에 대해서 각각 6단계, 2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됨
    - 부동산 이전에 대해서는 자산의 매매가액에 비례하여 6단계 누진세율(최고 100 호주달러당 5.5호주달러)이 적용됨<sup>293)</sup>
    - 차량등록의 경우 매매가액 44,999호주달러를 기준으로 2단계 누진세율(최고

286) Duties Act 1997 s. 69, s 74

287) Duties Act 1997 s. 104B, s. 68, s. 267

288) Duties Act 1997 s. 259B

289) Duties Act 1997 s. 16, s. 263, s. 235

290) Duties Act 1997 s. 21

291) Duties Act 1997 s. 229(2)

292) Duties Act 1997 s. 32, s. 234, s. 243, s. 265

293) 뉴사우스웨일스주 세입청, "Transfer Duty," <https://www.revenue.nsw.gov.au/taxes-duties-leivies-royalties/transfer-duty>, 검색일자: 2023. 6. 12.

100호주달러당 5.5호주달러)가 적용됨

- 보험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유형에 따라 보험료의 2.5%, 5%, 9%에 상당하는 정률세율이 적용됨
  - 다만, 생명보험 중 일부항목은 보험금을 기준으로 2단계 누진과세함
- 고가 주거용 부동산의 이전 및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매수에 대해서는 추가세액이 부과됨
  - 고가 주거용 부동산<sup>294)</sup>에 대해서 표준세율에 의한 세액뿐만 아니라 기준금액 초과분에 할증세율(premium duty rate)을 적용한 추가세액이 부과됨<sup>295)</sup>
  - 2016년 6월 21일부터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매수에 대해서 추가세액이 부과됨

#### 다) 신고 및 납부

- 부동산 이전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자산의 이전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의 제출 및 납부의무가 있음<sup>296)</sup>
  -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와 관련된 증서, 증서가 없는 거래의 경우 별도의 서면양식을 주 세입청장(Chief Commissioner)에게 제출해야 함
  - 주 세입청장은 신고서 평가 후 세액을 확정된 후 고지서(a notice of assessment)를 발행하며 납세자가 관련 세액을 납부 시 문서에 소인함<sup>297), 298)</sup>
    - 소인은 물리적 방식 또는 고유거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에 의함

294) 고가 주거용 부동산 여부는 300만달러의 기준금액에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고시된 가액에 의하여 판단하며 2022년 7월 1일 이후의 판단 금액은 3,268,000달러임.

295) Duties Act 1997 s. 32A; 뉴사우스웨일스 세입청, "Transfer duty," <https://www.revenue.nsw.gov.au/taxes-duties-levies-royalties/transfer-duty>, 검색일자: 2023. 6. 12.

296) Duties Act 1997 s. 12, s. 13, s. 16, s. 17, s. 295

297) <https://www.revenue.nsw.gov.au/electronic-duties-for-professionals/electronic-duties-return/lodge-your-return>, 검색일자: 2023. 6. 13.

298) Duties Act 1997 s. 285, s. 287, s. 290, s. 297

- 차량 및 보험계약은 각각 자동차 등록일 및 매월 21일까지 납부해야 함<sup>299), 300)</sup>
  
-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및 거래에 대해 기한 내에 날인받지 않은 경우 최대 100 가산세 단위(즉, 11,000호주달러)<sup>301)</sup>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sup>302)</sup>
  - 미날인 상태에서는 부동산의 법적 또는 수익적 지분을 등록해서는 안 되며 민사 법원 등에 있어 증거로 제시될 수 없음<sup>303)</sup>
  - 또한, 과세관청은 인지세가 납부되지 않은 문서에 대한 압수권한이 있음<sup>304)</sup>
  
- 인지세 납부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가산세 및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음<sup>305)</sup>
  -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의 징세와 관련된 일반 법률인 뉴사우스웨일스 조세행정법 (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96)에 의하여 가산세 및 이자세가 부과됨
  - 가산세율은 납세자의 과실유형에 따라 미납세액의 25%, 50% 또는 75%임
    - 25%(상당한 규모의 다국적기업은 50%)의 가산세율을 원칙으로 하되, 고의적인 해태인 경우 75%의 가산세율을 적용함
    - 세무조사 전 또는 진행 중에 자진공개 시에는 가산세율을 감액조정하나 은폐 등의 경우에는 증과하여 부과할 수 있음
  - 지연이자는 미납세액에 시장이자율에 8%의 프리미엄을 가산한 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미납기간을 곱하여 계산됨<sup>306)</sup>

299) Duties Act 1997 s. 263, s. 264

300) Duties Act 1997 s. 235, s. 244, s. 253

301) <https://www.revenue.nsw.gov.au/help-centre/resources-library/rulings/general/taa001>, 검색일자: 2023. 6. 15.

302) Duties Act 1997 s. 296

303) Duties Act 1997 s. 301, s. 304

304) Duties Act 1997 s. 307

305) <https://www.revenue.nsw.gov.au/help-centre/resources-library/cpn/cpn-024-interest-and-penalty-tax-guidelines>, 검색일자: 2023. 6. 13.; <https://www.revenue.nsw.gov.au/about/terms-and-conditions/interest-and-penalty-tax>, 검색일자: 2023. 6. 13.

306) 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96 s. 22

## 2) 남호주의 인지세 과세제도

### 가)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인지세는 과세대상 문서(instruments)에 대해 부과됨<sup>307)</sup>
  - 문서란 서면으로 작성된 모든 종류의 문서(written document)를 말함<sup>308)</sup>
  - 다만, 일부 거래의 경우 문서가 없음에도 인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음
    - 예를 들어 토지 또는 파트너십의 지분 양도의 경우에는 문서에 의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거래가 문서에 의하였다면 인지세 과세대상인 경우 관련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인지세가 부과됨<sup>309)</sup>
  
- 인지세 과세대상은 부동산의 이전, 자동차 및 보험계약과 관련된 문서임<sup>310)</sup>
  - 부동산 및 이에 대한 지분의 이전은 과세대상임
    - 비주거용 및 비주요 생산용 부동산(예: 상업용, 산업용, 공공시설, 호텔 등)은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소된 세율을 적용하고 2018년 7월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음<sup>311)</sup>
  - 자동차의 등록 또는 등록 이전, 보험계약도 인지세 과세대상임
  
- 배우자 간 이전 등에 대해서 인지세의 면제가 적용됨
  - 예를 들어 배우자 간 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따른 공동거주지의 지분 이전 및 자동차의 이전<sup>312)</sup> 등은 인지세가 면제됨

307) Stamp Duties Act 1923 s. 4(1)

308) Stamp Duties Act 1923 s. 2(1)

309) Stamp Duties Act 1923 s. 71E

310) Stamp Duties Act 1923 s. 2(1), Schedule 2

311) [https://www.revenuesa.sa.gov.au/forms-and-publications/information-circulars-and-revenue-rulings/information-circulars/ic\\_103](https://www.revenuesa.sa.gov.au/forms-and-publications/information-circulars-and-revenue-rulings/information-circulars/ic_103), 검색일자: 2023. 6. 14.; <https://www.revenuesa.sa.gov.au/stamp-duty-land/real-property-land>, 검색일자: 2023. 6. 14.

312) Stamp Duties Act 1923 s. 71CB

- 보험계약의 경우 재보험, 상업용 선박·화물보험 등은 인지세가 면제됨<sup>313)</sup>
- 부동산 이전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는 문서를 실행한 당사자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가짐<sup>314)</sup>
  - 계약의 양 당사자 중 납세의무자를 특정하고 있지 않음
- 보험계약의 경우는 보험회사(insurer),<sup>315)</sup> 차량등록의 경우는 등록 또는 이전을 신  
청하는 자<sup>316)</sup>를 납세의무자로 함

나) 과세표준 및 세율

- 인지세 과세표준은 자산의 매매가액 또는 시장가치임<sup>317)</sup>
  - 과세관청이 매매가액이 시장가치보다 낮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매매가  
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음
  - 다만, 보험계약은 보험료를 과세표준으로 함<sup>318)</sup>
- 인지세 세율은 단일의 정률 또는 누진세율에 의함
  - 부동산의 이전 및 차량등록은 자산 가치에 비례한 누진세율에 의함<sup>319)</sup>
    - 부동산 이전의 경우 9단계 누진세율(최고 100호주달러당 5.5달러)이 적용됨
    - 차량등록은 상업용과 비상업용을 구분하여 각각 3단계(최고 100호주달러당 3호  
주달러), 4단계(최고 100호주달러당 4호주달러)의 누진세율이 적용됨
  - 보험계약은 정률세율(일반보험 11%, 생명보험 1.5%)에 의함<sup>320)</sup>

313) Stamp Duties Act 1923 s. 36

314) Stamp Duties Act 1923 s. 4(2)

315) Stamp Duties Act 1923 s. 34(1), 35(1)

316) Stamp Duties Act 1923 s. 42B(2)

317) Stamp Duties Act 1923 s. 60A(1), (2)

318) Stamp Duties Act 1923 s. 34(1), 35(1)

319) Stamp Duties Act 1923 Schedule 2

- 2018년부터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추가세액이 부과됨<sup>321)</sup>

#### 다) 신고 및 납부

-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문서 종류별로 규정된 납부기한 내에 인지세를 납부하고 관련 문서에 날인받아야 함<sup>322)</sup>
  - 부동산의 이전은 문서 서명일로부터 2개월 이내,<sup>323)</sup> 차량은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sup>324)</sup> 보험계약은 매월 15일(생명보험은 매년 1월 31일)<sup>325)</sup>까지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음
  - 날인된 인지가 인지세 납부 증서임<sup>326)</sup>
    - 인지란 금형 등에 의해 날인된 인지, 어떠한 기계나 수단에 의하여 각인된 기록<sup>327)</sup>을 말함<sup>328)</sup>
  - 과세관청은 제출된 문서를 확인하고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적절히 납부된 경우 및 추가납부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여 날인함<sup>329)</sup>
-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를 기한 내에 과세관청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0 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sup>330)</sup>
  - 또한 날인되지 않은 문서는 형사소송 이외에는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며,<sup>331)</sup>

320) Stamp Duties Act 1923 s. 34(1), 35(1)

321) Stamp Duties Act 1923 s. 72

322) Stamp Duties Act 1923 s. 20

323) 문서가 남호주 이외 지역에서 실행된 경우에는 남호주에서 해당 문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2개월, 문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중 빠른 날까지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함

324) <https://www.revenuesa.sa.gov.au/stamp-duty-vehicles>, 검색일자: 2023. 6. 14.

325) Stamp Duties Act 1923 s. 34, s. 35

326) Stamp Duties Act 1923 s. 6

327) 문서 및 그 외의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함

328) Stamp Duties Act 1923 s. 2(1)

329) Stamp Duties Act 1923 s. 23

330) Stamp Duties Act 1923 s. 20(4)

331) Stamp Duties Act 1923 s. 22

관련 기관에 등기·기록될 수 없음<sup>332)</sup>

- 인지세 납부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가산세 및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음
  - 남호주 정부의 징세와 관련된 일반 법률인 조세행정법(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96)에 의해 가산세 및 이자세가 부과됨
  - 가산세율은 납세자의 과실유형에 따라 세액의 25% 또는 75%임<sup>333)</sup>
    - 25%의 가산세율을 원칙으로 하되, 고의적인 경우 75%의 가산세율을 적용함
    - 세무조사 전 또는 진행 중에 자진공개 시에는 가산세율을 감액조정하나 은폐 등의 경우에는 증과하여 부과할 수 있음
  - 지연이자는 미납세액에 시장이자율에 8%의 프리미엄을 가산한 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미납기간을 곱하여 계산됨<sup>334)</sup>

## 6. 홍콩

### 가. 개요 및 주요 개정 연혁

#### 1) 인지세의 성격

- 홍콩은 1866년 영국 식민통치시기에 인지세를 도입하였으며 1981년 인지세 조례를 제정하고 국세의 형식으로 인지세를 운영하고 있음<sup>335)</sup>
  - 식민통치시절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유지를 위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영국 및 영국의 다른 식민지였던 싱가포르의 제도를 참고하여 도입됨
  - 홍콩은 지방세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332) Stamp Duties Act 1923 s. 27

333) 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96 s. 31

334) 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96 s. 26

335) Yiu Yu Butt(2016), pp. 38~44.

- 홍콩의 인지세는 ‘문서’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음
  - 과세대상은 거래가 아닌 거래를 입증하는 문서임
  - 인지세 이외 부동산 및 증권의 이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없음

## 2) 주요 변천내역

- 홍콩은 인지세 도입 이후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1977년, 1978년 2년간의 개정을 통해 크게 부동산의 양도 및 임대와 증권 매매계약 및 이전으로 과세대상을 대폭 축소하였으며 이와 같은 기초가 현재도 유지되고 있음<sup>336)</sup>
  - 1970년대 홍콩경제가 경공업에서 금융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신규 유형의 문서가 등장하고 기존 과세문서 중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실무상 부담 및 애로 사항이 제기됨
  - 홍콩은 1977년, 1978년 중 5차례 인지세 조례를 개정하여 27개의 과세대상 항목을 폐지하고 부동산 양도 및 임대, 증권의 매매계약·이전으로 과세대상을 간소화함 - 기존에는 수표, 모기지, 유가증권의 발행, 외화환전과 관련된 문서 등에 대해서도 인지세를 부과함
  - 이에 대해 인지세 도입시점부터 1960년대까지는 세수증대를 목표로 인지세가 개정되었으나 1970년대 이후 사회적 필요 및 경제변화를 고려하여 인지세가 개정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음
- 문서가 수반되지 않는 증권거래의 증가에 대응하여 1998년부터 특정 전자거래 등을 인지세 과세대상에 포섭하도록 「인지세법」을 개정함<sup>337)</sup>
  - 1992년 중앙거래결제시스템(Central CCASS)의 도입에 따른 과세공백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8년 인지세 조례 제19(1E)조항을 신설하여 전자적 수단, 장부기장 시스템 등에 의하여 공인거래소(recognised clearing house) 등을 통해 이루어

336) *ibid.*, p. 153, pp. 209~212, pp. 219~223.

337) Andrew Halkyard(1998), p. 16.; IRD(2000), p. 1.

지는 증권거래를 인지세 과세대상에 포함

-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에게 과세대상문서를 우편 또는 대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2004년 8월부터 전자인지서비스 방식이 가능하게 됨<sup>338)</sup>
  - 대면방식의 복잡하고 불편한 점을 완화하여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4년 8월부터 전자인지서비스 방식을 추가함
- 코로나19 이후 재정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8월 2001년 증권 관련 인지세율을 인하(0.1125%→0.1%)한 이후 20년만에 상향조정함(0.1%→0.13%)<sup>339), 340)</sup>
  - 주식 거래의 활성화 및 시장발전을 위해 인지세율 인하 및 폐지요구가 있으나 세수확보 차원에서 상향조정됨<sup>341)</sup>

### 3) 최근의 주요 논의사항

- 인지세의 개정 및 폐지 등과 관련된 최근의 논의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 4) 세수 통계

- 2018/19년 이후 4개년 동안 국세 징수액 중 인지세는 법인소득세인 이윤세에 이어 두 번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338) Lau and Pearce(2014), p. 894.; IRD, [https://www.ird.gov.hk/eng/pdf/e\\_stamping\\_cir\\_04.pdf](https://www.ird.gov.hk/eng/pdf/e_stamping_cir_04.pdf), 검색일자: 2023. 7. 5.; IRD, "e-Stamping of Document," [https://www.ird.gov.hk/eng/tax/e\\_stamp.htm](https://www.ird.gov.hk/eng/tax/e_stamp.htm), 검색일자: 2023. 7. 5.

339) Frotune, "HKEX shares plunge as Hong Kong increases stamp duty on stock trades for first time since 1993," <https://fortune.com/2021/02/24/hkex-shares-stock-hong-kong-stamp-duty/>, 검색일자: 2023. 7. 3.

340) 홍콩정부, "Revenue (Stamp Duty) Bill 2021 gazetted," <https://www.info.gov.hk/gia/general/202103/05/P2021030500246.htm>, 검색일자: 2023. 7. 3.

341) 홍콩정부, "LCQ10: Stamp duty on stock transactions," <https://www.info.gov.hk/gia/general/202102/03/P2021020300213.htm>, 검색일자: 2023. 7. 3.

- 대상기간 동안 이윤세는 40.97~51.36%의 비중을 차지함
  - 대상기간 중 인지세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18/19년 이후 4개년의 인지세 징수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증권의 비중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대상기간 동안 인지세 징수액 중 부동산 비중은 약 58%에서 33%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증권의 비중은 약 41%에서 66%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해당 기간 동안 부동산 및 증권 시장 현황에 따라 세수 비중이 변경됨

〈표 IV-11〉 홍콩의 인지세 징수액(2018/19~2021/22년)

(단위: 백만홍콩달러)

구분	2018/19	2019/20	2020/21	2021/22
인지세수	79,978.7 (23.42%)	67,198.0 (22.14%)	89,044.6 (26.92%)	99,677.3 (26.33%)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연도 국세 징수액 중 해당 세목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IRD, *Annual Report 2021-22*, 2022.

〈표 IV-12〉 홍콩 인지세 징수액의 항목별 구분(2018/19~2021/22년)

(단위: 백만홍콩달러)

구분	2018/19	2019/20	2020/21	2021/22
부동산 매매	45,899 (58%)	33,071 (49%)	29,470 (33.1%)	32,843 (33%)
증권 매매	33,102 (41%)	33,231 (50%)	58,645 (65.9%)	65,921 (66%)
임대차 등	978 (1%)	896 (1%)	930 (1%)	913 (1%)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IRD, *Annual Report 2021-22*, p. 15.; IRD, *Annual Report 2020-21*, p. 18.; IRD, *Annual Report 2019-20*, p. 18.; IRD, *Annual Report 2019-20*, p. 16.

## 나. 인지세 과세제도

### 1)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인지세는 과세대상 문서에 대해 부과됨<sup>342)</sup>
  - 홍콩은 거래 자체가 아닌 거래를 증명하는 문서에 대해 인지세를 과세함<sup>343)</sup>
    - 부동산 양도의 경우 동일 당사자 간에 동일 조건으로 여러 개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문서 각각이 인지세 과세대상임<sup>344)</sup>
  - 문서란 서면으로 작성된 모든 종류의 문서를 말함<sup>345)</sup>
  - 일부 거래의 경우 구두계약에 대해 문서의 작성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인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음
    - 예를 들어 주거용 부동산의 판매에 대한 특정 비서면 계약(unwritten agreements)의 경우 비서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계약 체결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지세를 부과함<sup>346)</sup>
  
- 인지세 과세대상은 크게 부동산 양도·임대차 문서, 증권 이전문서로 분류됨<sup>347)</sup>
  - 홍콩에 소재한 부동산의 양도 증서
    - 양도란 매매 또는 법원 등에 의해 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이전 및 법적 권리가 부여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압류, 신탁선언, 살아있는 자 간의 자발적 증여 등이 포함됨<sup>348)</sup>
  - 부동산 임대차계약증서(lease of immovable property)

342) Cap. 117 Stamp Duty Ordinance s. 4(1)

343) Lau and Pearce(2014), p. 849.; Wolters Kluwer(2019), p. 1034.

344) Cap. 117 Stamp Duty Ordinance s. 29C(4)

345) Cap. 117 Stamp Duty Ordinance s. 2(1)

346) Cap. 117 Stamp Duty Ordinance s. 29B; Lau and Pearce(2014), p. 849.

347) Cap. 117 Stamp Duty Ordinance s. 4(1) and First Schedule

348) Cap. 117 Stamp Duty Ordinance s. 2(1); Lau and Pearce(2014), p. 852.

- 홍콩 증권(stock)<sup>349)</sup>의 이전(transfer) 약정서(contract note)
  - 증권이란 양도거래가 홍콩 내에 등록대상인 지분 및 채무증권을 말함<sup>350)</sup>
  - 법인 및 비법인, 정부나 지방정부 등 모든 주체가 발행한 주식(stock), 지분(share), 채무증서(debentures), 전환사채(loop stock), 채권(bonds), 단위신탁의 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권에 대한 권리, 옵션, 지분 등이 포함됨
  - 다만, 대부자본(loop capital),<sup>351)</sup> 환어음, 약속어음, 홍콩달러 이외로 표시된 채무증서·전환사채·채권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증권과 관련된 무기명 증서(bearer instruments)의 발행<sup>352)</sup>
-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의 사본 및 부분

□ 정부, 그룹 내의 부동산 및 주식 양도, 주식 대차거래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가 면제됨

349) Cap. 117 Stamp Duty Ordinance s. 2(1)

350)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부채의 양도는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인지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있음(Thomson Reuters, "Tax on Corporate Lending and Bond Issues in Hong Kong: Overview," 2021. 11.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7-505-7790?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firstPage=true#co\\_anchor\\_a485238](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7-505-7790?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firstPage=true#co_anchor_a485238), 검색일자: 2023. 6. 28.)

351) 대부자본이란 법인 및 비법인, 정부나 지방정부 등 모든 주체가 발행한 자금 차입성격의 채무증권, 무상환사채(debenture stock), 공채(Corporation stock), 이자부장기부채(funded debt)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의 취득 또는 주식으로의 전환권을 가지고 있거나 합리적 수준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사업의 결과 또는 사업의 일부 및 재산 가치를 준용하여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및 유사 상장 대부자본의 상환금액과 비교하여 불합리적인 명목금액을 초과하는 상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외됨(Cap. 117 Stamp Duty Ordinance s. 2(1))

352) 다만, 면제의 범위가 넓어서 실제로 과세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의견이 있음("Portfolio 7152-1st: Business Operations in Hong Kong,"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XPV1JP18?criteria\\_id=8f0b25d9fdf690adb661e2788aadf9b0&navCriteriaId=012959760a97a0042e038a675d190b2b&searchGuid=85c01e8e-bcb3-4c7e-ab2c-c757384490ee&search32=fYQ6N-axAUowgTmbbHH2gA%3D%3DppP-DKM\\_LWR2q2S6A7CQUzK6y7R5sU18gloVY0eRRqztP6Pe8RLT06Du54PYVuByKSC6xkTrwxdDiXJRnz9ucUqMRRs8YZxuhsp3Byxgq60XIrZmOXkq2a0pOl\\_phDGYHjx6TubCknLc4UykdhRlrtB4lAbV4\\_QggsUyU9h79HddeGczprQ6tYGrmLIMFspvzNMgfcBxN9lrvEvxiBnRymmSjcJj97WpkOdUaiBL-LjiSJL7umYaMYy4uNfUQXxzloWcQLXZYBAKwEav1lgsSjEBp9M9tRwgOPjw6aBH-ri6GZ19veiZ-aCb\\_SLXceei\\_3r8XoB2DNcLjH2YNPJAblCE7T8-F858uHdtgiSBajqpDBixExy\\_ReqMY0nciBfg90Er5s00Q5yA\\_deoTYhjXHYK7keFizrnzbzKs2ik5vsziGk3gppvwVYUIAExX3LbHuhhGOz0U3QJ90Cj\\_dNGCvKaWYrpjOZmLdjflvMRxzCk7QOdqzKSpD5eXCAPLPP3](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XPV1JP18?criteria_id=8f0b25d9fdf690adb661e2788aadf9b0&navCriteriaId=012959760a97a0042e038a675d190b2b&searchGuid=85c01e8e-bcb3-4c7e-ab2c-c757384490ee&search32=fYQ6N-axAUowgTmbbHH2gA%3D%3DppP-DKM_LWR2q2S6A7CQUzK6y7R5sU18gloVY0eRRqztP6Pe8RLT06Du54PYVuByKSC6xkTrwxdDiXJRnz9ucUqMRRs8YZxuhsp3Byxgq60XIrZmOXkq2a0pOl_phDGYHjx6TubCknLc4UykdhRlrtB4lAbV4_QggsUyU9h79HddeGczprQ6tYGrmLIMFspvzNMgfcBxN9lrvEvxiBnRymmSjcJj97WpkOdUaiBL-LjiSJL7umYaMYy4uNfUQXxzloWcQLXZYBAKwEav1lgsSjEBp9M9tRwgOPjw6aBH-ri6GZ19veiZ-aCb_SLXceei_3r8XoB2DNcLjH2YNPJAblCE7T8-F858uHdtgiSBajqpDBixExy_ReqMY0nciBfg90Er5s00Q5yA_deoTYhjXHYK7keFizrnzbzKs2ik5vsziGk3gppvwVYUIAExX3LbHuhhGOz0U3QJ90Cj_dNGCvKaWYrpjOZmLdjflvMRxzCk7QOdqzKSpD5eXCAPLPP3), 검색일자: 2023. 6. 26.)

- 정부의 모든 문서에 대해서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음<sup>353)</sup>
  - 법정 요건을 충족한 그룹 내에서의 부동산 및 주식 양도는 인지세가 면제됨<sup>354)</sup>
  - 주식의 대차거래,<sup>355)</sup> 이슬람채권<sup>356)</sup> 등에 대해 인지세가 면제됨
-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문서의 모든 당사자 및 기타 실행하는 모든 사람임
- 「인지세법」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를 특정하지 않고 연대납부의무를 지움<sup>357)</sup>
    - 거래당사자 및 계약의 실행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 실무적으로는 부동산 양도의 경우에는 매수자가, 그 외의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균등 부담하는 것으로 보임<sup>358), 359)</sup>
- 다만, 주식의 경우 중개업자(agent)가 있는 경우에는 중개업자, 그 외는 거래당사자가 납세의무자이며 후술하는 매수자 인지세는 매수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 2) 과세표준 및 세율

- 인지세 과세표준은 양도의 경우에는 자산의 매매가액 또는 시장가치이며,<sup>360)</sup> 임대 의 경우에는 임대료임
- 일반적으로 자산의 매매가액과 시장가치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353) Cap. 117 Stamp Duty Ordinance s. 41(1)

354) Cap. 117 Stamp Duty Ordinance s. 45

355) Cap. 117 Stamp Duty Ordinance s. 19(11)

356) IRD, "Tax Information- Others -Stamp Duty - Stamp Duty Relief," <https://www.ird.gov.hk/eng/tax/sdu.htm#a12>, 검색일자: 2023. 7. 5.

357) Cap. 117 Stamp Duty Ordinance First Schedule

358) CLIC, "Things that you need to know before signing a tenancy agreement or lease," [https://clic.org.hk/en/topics/landlord\\_tenant/all](https://clic.org.hk/en/topics/landlord_tenant/all), 검색일자: 2023. 6. 28.

359) Thomson Reuters, "Tax on Corporate Transactions in Hong Kong: Overview Stamp Duty,"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w-034-4459?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firstPage=true#co\\_anchor\\_a915150](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w-034-4459?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firstPage=true#co_anchor_a915150), 검색일자: 2023. 6. 28.

360) Stamp Duties Act 1923 s. 60A(1), (2)

- 증여와 같이 살아있는 자 간의 자발적 이전계약의 경우에는 시장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함<sup>361)</sup>
- 인지세율은 단일 비례세율, 차등 비례세율 및 정액에 의함
  - 부동산 양도의 경우 부동산 용도(주거용, 비주거용), 영주권자 여부에 따라 구분된 인지세율에 의함<sup>362)</sup>
    - 주거용 부동산은 15%의 단일세율을 원칙으로 하되 홍콩 영주권자로서 다른 주거용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인지세율을 적용함
    - 비주거용 부동산은 최고 4.25%의 구간별 차등 비례세율에 의함
    -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인지세 납부 후 동일 물건에 대해 동일 조건으로 후속계약(즉, 소유권이전서 등)이 체결되는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해서는 100홍콩달러의 정액의 인지세가 부과됨<sup>363), 364)</sup>
  - 부동산 임대계약은 임대기간 및 성격에 따라 차등된 비례세율이 적용됨<sup>365)</sup>
    - 임대기간에 따라 임대료<sup>366)</sup>에 대하여 0.25~1%의 세율을 적용함
    - 임대계약에 명시된 Key money 또는 공사비는 리스계약하에 지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4.25%, 그 외는 부동산 양도계약에 적용되는 인지세율을 적용함
  - 증권 등의 이전계약은 매매 및 자발적 처분(예: 증여)의 경우에는 단일 비례세율이 적용되며 그 외의 경우는 정액의 인지세가 부과됨<sup>367)</sup>

361) Stamp Duties Act 1923 s. 27(4)

362) Stamp Duties Act 1923 s. 29AI; 홍콩정부, "Stamp Duty Rates Table," [https://www.gov.hk/en/residents/taxes/docs/IRSD123\(E\).pdf](https://www.gov.hk/en/residents/taxes/docs/IRSD123(E).pdf), 검색일자: 2023. 6. 28.

363) Cap. 117 Stamp Duty Ordinance s. 29D

364) 참고로 홍콩의 부동산 매매절차는 1) 부동산 사무소 등에서 임시 매매계약서(provisional agreements for sale and purchase)를 작성하고 보증금 예치, 2) 변호사 검토하에 공식 매매계약서(formal agreement) 작성, 3) 매매대금 납부 및 소유권이전서(assignment)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CLIC, "II. The estate agents' services(with an overview of the sale and purchase procedures)," [https://clic.org.hk/en/topics/saleAndPurchaseOfProperty/the\\_estate\\_agents\\_services](https://clic.org.hk/en/topics/saleAndPurchaseOfProperty/the_estate_agents_services), 검색일자: 2023. 6. 28.)

365) 홍콩정부, "Stamp Duty Rates Table," [https://www.gov.hk/en/residents/taxes/docs/IRSD123\(E\).pdf](https://www.gov.hk/en/residents/taxes/docs/IRSD123(E).pdf), 검색일자: 2023. 6. 28.

366) 연 임대료 또는 연평균 임대료에 의함

- 약정서에 의한 양도: 대가 또는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의 0.13%<sup>368)</sup>
- 살아있는 자 간의 자발적 이전: 5홍콩달러에 추가하여 이전되는 증권 공정가치의 0.26%
- 사본 및 부분: 5홍콩달러

- 홍콩은 주거용 부동산 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용 부동산 양도의 경우 상기한 일반 인지세 이외에 매수자 인지세(Buyer's Stamp Duty)와 특별인지세(Special Stamp Duty)를 추가로 부과함<sup>369)</sup>
  - (매수자 인지세) 2012년 10월 27일 이후 주거용 부동산 매수자에게 대가 또는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의 15% 상당액의 매수자 인지세가 부과됨<sup>370)</sup>
  - (특별인지세) 2010년 11월 20일 이후 주거용 부동산 구매 후 36개월 이내에 동일 자산을 매도하는 경우 대가 또는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20%의 세율을 적용한 특별인지세가 부과됨<sup>371)</sup>

### 3) 신고 및 납부

- 납세의무자는 일반적으로 계약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 인지세를 납부하고 관련 문서에 날인받아야 함<sup>372)</sup>
  - 다만, 주식의 경우 계약실행일로부터 2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증여 등의 거래는 7일 이내, 홍콩 외의 지역에서의 거래는 30일 이내로 함

367) 홍콩정부, "Stamp Duty Rates Table," [https://www.gov.hk/en/residents/taxes/docs/IRSD123\(E\).pdf](https://www.gov.hk/en/residents/taxes/docs/IRSD123(E).pdf), 검색일자: 2023. 6. 28.

368) 매도약정과 매수약정 각각에 대해 적용함(IBFD - Hong Kong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4. Miscellaneous Indirect Taxes 14.3. Stamp duty - 14.3.3. Transfer of Hong Kong stock(Last Reviewed: 4 May 2023))

369) 홍콩 입법회, "LEGISLATIVE COUNCIL BRIEF\_Stamp Duty(amendment) BILL 2012," [https://www.legco.gov.hk/yr12-13/english/bills/brief/b01\\_brif.pdf](https://www.legco.gov.hk/yr12-13/english/bills/brief/b01_brif.pdf), 검색일자: 2023. 6. 28.

370) Cap. 117 Stamp Duty Ordinance First Schedule(1AAB)

371) Cap. 117 Stamp Duty Ordinance First Schedule(1AA)

372) Cap. 117 Stamp Duty Ordinance First Schedule

-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에게 과세대상문서를 우편 또는 대면 제출하여 날인받거나 전자시스템을 통해 날인받을 수 있으며, 주식거래의 경우 증권거래소를 통해 소인받을 수도 있음<sup>373)</sup>
  - 물리적 제출방식의 경우 소인기(frinking machine) 또는 과세문서에 직접 인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날인이 이루어짐<sup>374)</sup>
  - 전자인지방식에 의한 경우 웹사이트에 계약서를 업로드하면 과세관청이 검토 후 종이형식 또는 전자기록 형식의 인지 증명서(stamp certificate)를 발행함<sup>375)</sup>
  - 또한, 주식거래의 경우 과세관청과 증권거래소 간의 협약에 의하여 증권거래소로부터 소인을 날인받고 인지세를 납부할 수 있음<sup>376)</sup>
    - 납세의무자가 증권거래소에 제출·납부하면 증권거래소가 이를 일괄하여 과세관청에게 전달함
  
-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를 기한 내에 과세관청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세액의 최고 10배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sup>377)</sup>
  - 「인지세법」은 관련 가산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세무조례(Inland Revenue Ordinance)가 적용되는 이윤세·급여소득세, 재산세 등의 경우 미신고는 범죄로 분류하여 납부세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3단계 수준에 해당하는(10,000홍콩달러)의 벌금<sup>378)</sup>을 부과하며, 지연납부 시에는 최대 10%의 가산세를 부과함<sup>379)</sup>,<sup>380)</sup>

373) 홍콩정부, “Methods of Stamping,” [https://www.gov.hk/en/residents/taxes/stamp/methods\\_of\\_stamping.htm](https://www.gov.hk/en/residents/taxes/stamp/methods_of_stamping.htm), 검색일자: 2023. 6. 28.

374) Cap. 117 Stamp Duty Ordinance s. 5

375) 전자인지방식의 도입으로 인해 과세관청은 15년간의 인지증명서 발급기록을 보관하게 됨에 따라 위조 인지증명서의 적발이 용이해져 인지증명서의 위조관련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Wolters Kluwer, 2019, p. 1090.)

376) Cap. 117 Stamp Duty Ordinance s. 5, 5A

377) 홍콩정부, “Late Stamping and Omission to Stamp Document,” [https://www.gov.hk/en/residents/taxes/stamp/late\\_stamping.htm](https://www.gov.hk/en/residents/taxes/stamp/late_stamping.htm), 검색일자: 2023. 6. 28.

378) Cap. 112 Inland Revenue Ordinance s. 80(2)

379) Cap. 112 Inland Revenue Ordinance s. 71

380) IRD, “Penalty Policy,” <https://www.ird.gov.hk/eng/pol/ppo.htm#:~:text=chargeability%>

- 지연납인 및 납부 가산세는 지연기간에 따라 상이하하며, 고의적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미이행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경감 가능함<sup>381)</sup>
  - 1개월 이내: 인지세액의 2배
  -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인지세액의 4배
  - 2개월 초과: 인지세액의 10배
  
- 또한, 날인되지 않은 문서는 형사소송과 인지세 징수를 위한 민사소송 이외에는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sup>382)</sup>

## 7. 대만

### 가. 개관 및 주요 개정 연혁

#### 1) 인지세의 성격

- 대만의 인지세<sup>383)</sup>는 일종의 증비세(憑證稅)로서 관련 법에서 열거한 문서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문서세라 할 수 있음<sup>384), 385)</sup>
- 문서의 유형은 협정서, 영수증, 계약서, 증서 등 다양함

---

20to%20tax.-,The%20offence%20is%20subject%20to%20a%20fine%20of%20%2410%2C000%20and,return%20within%20a%20specified%20time, 검색일자: 2023. 7. 4.

381) Cap. 117 Stamp Duty Ordinance s. 9

382) Cap. 117 Stamp Duty Ordinance s. 15; 홍콩정부, "Validity of Unstamped Documents & Inadequate Consideration," [https://www.gov.hk/en/residents/taxes/stamp/validity\\_of\\_unstamped\\_documents.htm](https://www.gov.hk/en/residents/taxes/stamp/validity_of_unstamped_documents.htm), 검색일자: 2023. 6. 28.

383) 정확한 용어는 인화세(印花稅)이나, 본 보고서의 용어 통일을 위해 이하에서 '인지세'라 통칭함)

384) 한상국(2011), p. 378.

385)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cta/html/cta\\_tw\\_s\\_014.html%23cta\\_tw\\_s\\_14.3](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cta/html/cta_tw_s_014.html%23cta_tw_s_14.3), 검색일자: 2023. 7. 12.

- 인지세는 지방세<sup>386)</sup>에 속하며, 간접세에 해당함
  - 기존에 국세로 운용되다가 2009년 7월부터 지방세로 개편됨<sup>387)</sup>
  - 대만의 국세와 지방세는 법정 세목에 따른 구분일 뿐이며, 세수가 바로 중앙 또는 지방에 귀속되는 지 여부에 따른 구분이 아님<sup>388)</sup>
  
- 대만에서의 유통세 내지 거래세로서 분류될 수 있는 세목으로는 소비세, 계세(契稅), 증권교역세 등이 있음
  - 소비세에는 부가가치세, 화물세,<sup>389)</sup> 담배주류세 등이 있음
  - 계세는 부동산의 매매, 저당, 교환, 증여, 분할 또는 점유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납부하게 되며,<sup>390)</sup> 계약서상의 금액을 근거로 함<sup>391)</sup>
    - 현행 인지세와 그 과세대상이 겹칠 수 있음
  - 일정한 유가증권의 매매에는 증권교역세가 부과됨

## 2) 주요 변천내역<sup>392)</sup>

- 대만<sup>393)</sup>의 인지세는 1934년(중화민국 23년) 12월 국민당 정부에서 「인화세법」을 공식적으로 제정함으로써 시행되었음
  - 총 29종의 수입인지를 발행함<sup>394)</sup>
  - 인지세는 당시 서구의 세제를 모방한 것으로서, 징수상의 이점이 있고 건별로는

386) 지방세라함은 '직할시 및 현(縣) 세(稅)'를 말함

387) 한상국(2011), p. 23.

388) 한상국(2011), p. 24.

389) 시멘트, 석유류, 사치품 등 특정 물품의 공장 출고 또는 수입 시에 과세하는 세목임(특종 개별소비세 성격)

390) 계세조례(契稅條例) § 2

391) 계세조례(契稅條例) § 13

392) 대만법률정보, [https://law.dot.gov.tw/law-ch/home.jsp?id=12&parentpath=0%2C2&mcustomize=law\\_list.jsp&lawname=201803090355&istype=L](https://law.dot.gov.tw/law-ch/home.jsp?id=12&parentpath=0%2C2&mcustomize=law_list.jsp&lawname=201803090355&istype=L), 검색일자: 2023. 7. 12.

393) 여기서의 '대만'은 '중화민국(1912년 건국)'으로서, 1949년 중국 본토에서 국민당·공산당 간의 내전에서 패한 국민당 정부가 타이베이(臺北)로 중화민국 정부를 이전하기 전의 시대도 포함함

394) Golden Education, <https://m.gaodun.com/caiwu/908245.html>, 검색일자: 2023. 7. 17.

소액이지만 상대적으로 거액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며, 상업 경제의 발전에 따라 보장되는 세원이라는 점에서 도입됨<sup>395)</sup>

- 이후 수차례의 제·개정을 거치다가 1986년 부가가치세 도입과 함께 인지세 과세대상 및 세율이 개정<sup>396)</sup>되면서 현재의 기본적 틀을 마련하였으며,<sup>397)</sup> 2002년에 마지막으로 수정된 법<sup>398)</sup>이 2023년 현재 적용되고 있음
  - 부가가치세 안착을 위해 인지세를 폐지하지 않는 대신 인지세 과세대상을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하여 간접세 시스템하에서 인지세의 중요도를 떨어뜨림
  - 부가가치세제 도입 이후 세수 측면에서 인지세 세수 비중은 확연히 축소되었음
    - 1986년: 구 영업세<sup>399)</sup>는 총 세수 중 11.4%, 인지세는 3.8%의 비중을 차지함
    - 1987년: 영업세는 13.5%, 인지세는 0.6%의 비중을 차지함

### 3) 최근의 주요 논의사항

- 인지세제와 관련하여 최초의 개편논의가 있었던 시점은 1969년으로서, 부가가치세제 도입 등 세제개혁의 일환이었음<sup>400)</sup>

395) cglhub.com, <https://cglhub.com/auto/db/detail.aspx?db=950008&rid=1339166&agfi=0&cls=0&uni=True&cid=0&showgp=True&prec=False&md=93&pd=6&msd=93&psd=6&add=93&pdd=6&count=10&reds=%E7%A8%8E%E6%94%B6%E5%8D%9A%E5%BC%88>, 검색일자: 2023. 7. 18.

396) 중화민국 75년 1월 17일 총통(75) 화총(1) 의자 제0292호령 수정 공포

397) "An appraisal of business tax reform in taiwan: the case of value-added taxation. / chuanlin/1992," <https://www.nber.org/system/files/chapters/c8516/c8516.pdf>, 검색일자: 2023. 7. 14.

398) 중화민국 91년 5월 15일 총통(91) 화총일의자 제09100095560호령 수정 공포

399) 1986년 부가가치세제 도입 이전에도 영업세가 있었는데, 해당 영업세는 총액형 판매세 성격을 띠는 조세였으며, 이를 '구 영업세'라 지칭함(한상국, 2011, p. 217). 1986년 이후의 영업세가 현행 다단계 거래세 성격으로서의 부가가치세임

400) "introduction to taiwan's taxation system: major problems and reform / by ting-an chen president chunghua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2008. 1. 19.," <https://www.ipp.hit-u.ac.jp/EastAsianTaxForum/PDF/chen-Introduction%20to%20Taiwan's%20Taxation%20System.pdf>, 검색일자: 2023. 7. 14.

- 당시 영업세, 화물세, 인지세 등의 다양한 간접세를 새로운 부가가치세제의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이 강구됨
    - 동일한 거래에 대해 여러 간접세가 부과되고, 간접세에 또 다른 간접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 그러나 이러한 거대한 범위의 세제개혁 논의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로 중단됨
- 1986년에는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하면서 인지세 및 화물세 등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제로의 통합을 시도하였으나, 조세 수입의 불균형 및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실시하지는 못함<sup>401)</sup>
- 가장 최근인 2019년 9월 12일 의회 행정원 세제개혁위원회에서는 ‘녹색세제 연구 (Green Taxation System research)’라는 명목하에 2020년부터 인지세 폐지를 제안하였으나, 세수 문제 등의 이유로 최종적으로 통과하지 못하였음<sup>402), 403), 404)</sup>
- 녹색세제<sup>405)</sup>는 구시대적 세목의 철폐와 세제 간소화, 이중과세 방지 측면에서 인지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401) “An appraisal of business tax reform in taiwan: the case of value-added taxation./chuan lin/1992,” <https://www.nber.org/system/files/chapters/c8516/c8516.pdf>, 검색일자: 2023. 7. 14.

402)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cta/html/cta\\_tw\\_s\\_014.html%23cta\\_tw\\_s\\_14.3](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cta/html/cta_tw_s_014.html%23cta_tw_s_14.3), 검색일자: 2023. 7. 12.

403) EY, <https://globaltaxnews.ey.com/Login/ViewNewsAttachment.aspx?AlertID=86257&AttachmentName=8r7YM%2BcXuEJ1KHtv0cKrB3dl0tcwM%2BgeYyQ8FZ3f6v%2BkDIi%2BC4ZpaBjZjOr4bKNqvT9r0CsFfjC%2F4srTsDSKdPOGEEsAkRteWURaqBJXalI%3D&ualertID=null>, 검색일자: 2023. 7. 13.

404) Taipei Times, <https://www.taipeitimes.com/News/biz/archives/2019/08/30/2003721357>, 검색일자: 2023. 7. 13.

405) 환경자원을 낭비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생산자의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에너지세를 도입하여 에너지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함. 즉, 녹색세제 도입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대중의 오염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 그 조세수입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조세구조를 개선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의 영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여기서 조세구조의 개선책으로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하, 일부 화물세 및 인지세의 폐지 등이 있을 수 있음.(한상국, 2011, p. 55, 58.)

- 녹색세제와 관련하여 2008년 6월 30일부터 이미 연구가 시작된 바 있으나, 당 시에도 인지세 폐지는 성사되지 못하였음<sup>406)</sup>
- 현행 인지세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이 지적됨
  - 경제거래단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법을 실제 적용함에 있어 해당 거래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마찰이 잦음
  - 인지세의 번거로운 납부절차 및 과세관청의 효율적이지 못한 감독행위는 납세 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을 높임
  - 부가가치세, 계세 등 다른 거래세나 간접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있음
- 그러나 지방세 세수 손실 발생에 대한 우려로 해당 법안은 최종 통과되지 못하였으며 추후 계속적 연구를 진행하기로 함

#### 4) 세수 통계

- 2018~2022년의 지방세 세수 중 인지세 비중은 약 3~4%로서 약간의 증가 추세에 있고 총 세수(국세 및 지방세) 기준으로 0.5~0.6% 수준임
- 인지세 세수액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2년 기준 157.2억신대만달러 (TWD)에 이룸

〈표 IV-13〉 대만 2018~2022년 인지세 세수 비중

(단위: 1백만TWD,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인지세 세수(A)	12,147	12,857	13,725	14,427	15,722
지방세 세수(B)	342,444	369,112	381,897	383,912	373,634
지방세 대비 비중(A/B)	3.5	3.4	3.5	3.7	4.2
총 세수(C)	2,386,945	2,470,519	2,398,667	2,874,213	3,247,877
총세수 대비 비중(A/C)	0.5	0.5	0.6	0.5	0.5

자료: 대만 재무부, 「111年財政統計年報」, <https://www.mof.gov.tw/singlehtml/285?cntId=70963>

406) 한상국(2011), p. 53, 58.

## 나. 인지세 과세제도

### 1)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인지세 과세대상은 현금 영수증 등 아래의 4가지로 분류될 수 있음<sup>407), 408)</sup>
  - ① 현금 영수증
    - 주로 금융업종(은행, 보험, 신탁)에서 발행하는 영수증, 증표, 인출장부, 인출통장, 수취서류, 지불장부 등을 수령하는 것을 말함
    - 다만, 상업용 또는 영업용 영수증 성격을 갖는 것, 소기업 사업자가 발행하는 것, 발행인 및 발행번호 등이 적힌 수표 등은 과세범위에서 제외됨
  - ② 동산 매매계약
    - 정부기관에 등록대상(예: 자동차)인 동산에 한함<sup>409)</sup>
  - ③ 도급계약
    - 일방이 타방을 위해 일정한 작업을 완성하기로 한 계약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공사도급계약, 인쇄물 인쇄도급계약 및 대리가공(OEM)계약 등이 있음
  - ④ 부동산의 전매, 양수(讓受) 및 분할계약
    -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매매, 교환, 증여, 분할 시의 계약을 말함
    - 이러한 계약들은 주관 기관에의 등록(물권등기)을 요함
-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증빙 등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규정이 있음<sup>410)</sup>
  - 정부기관 및 향(진, 시, 구)에서 사용하는 증빙
  - 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공무를 처리하면서 발급하는 증빙

407) 「인화세법」 제1조, 제5조

408) 타이페이지 정부, <https://www.tax.ntpc.gov.tw/cp-131-3183-0e3c9-2.html>, 검색일자: 2023. 7. 12.

409) 17win.com, <https://zcool.17win.com/knowledge/37f6fac7b5604be6a485db94342ccd36>, 검색일자: 2023. 8. 16.

410) 「인화세법」 제6조

- 사업자의 내부조직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대외 권리의무관계를 발생시키지 않는 문서
  - 각종 증빙(인지세 기 납부)의 부분 또는 사본
  - 여객 및 화물 등의 버스표, 기차표, 선박표, 항공기표 등
  - 급여 영수증, 재난구조금 수령 영수증 등
-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규정됨<sup>411)</sup>
- 현금 영수증: 현금수취인
  - 동산 매매계약: 계약자(서류발행자) 또는 작성자(서명날인자)
  - 도급계약: 계약자 또는 작성자
  - 부동산의 전매, 양수, 분할계약: 계약자 또는 작성자
- 한편, 현재 「인지세법」상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행정규칙으로 ‘전자증빙서류’에 의한 온라인 인지세 신고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전자문서 형태의 과세대상에 대해서도 특별한 예외 없이 법 적용을 하는 것으로 판단됨<sup>412)</sup>
- 인지세는 증빙세이며, 증빙이 있는 한 전자수단으로 서명하는 전자계약에도 인지 세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sup>413)</sup>

## 2) 과세표준 및 세율

- 인지세액은 문서의 종류별로 단일비례세 또는 단순정액세 구조로 결정됨<sup>414)</sup>
- 현금 영수증: 금액의 0.4%
    - 단, 입찰자의 기탁 보증금 관련 영수증은 0.1%를 적용함

411) 「인화세법」 제7조

412) 인지세 통합납부 및 납부서 작성 전자신고 작업요점(「대재세자 11104662320호령, 대만법률정보」, [https://law.dot.gov.tw/law-ch/home.jsp?id=13&parentpath=0%2C3&mcustomize=rule\\_view.jsp&lawname=201803090358&istype=R](https://law.dot.gov.tw/law-ch/home.jsp?id=13&parentpath=0%2C3&mcustomize=rule_view.jsp&lawname=201803090358&istype=R), 검색일자: 2023. 7. 12.)

413) 타이중시 정부 지방세청, <https://www.lawtw.com/archives/436116>, 검색일자: 2023. 7. 18.

414) 「인화세법」 제7조

- 동산 매매계약: 계약 건당 12신대만달러(TWD)
  - 도급계약: 금액의 0.1%
  - 부동산의 전매, 양수, 분할계약: 금액의 0.1%
- 만일 상기 문서에서 금액을 명확히 기입하지 않았을 경우, 증빙에 기입한 품명 및 수량 등에 근거하여 시가에 따라 계산함<sup>415)</sup>

### 3) 신고 및 납부

- 인지세의 납부는 계약 체결된 과세문서의 교부 또는 사용, 등록 시에 인지(인화세 표)의 첨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세금납부서 발행 방식, 총괄 납부 방식에 의할 수도 있음<sup>416)</sup>
- 인지는 우체국, 협동조합, 특정 은행 등에서 구입 가능함
  - 만일 세액이 상당하여 인지를 붙이기에 불편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세금납부서를 발급받아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음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문서에 관한 인지세액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후 총괄납부 방식으로 납부할 수도 있음
    - 매 2개월마다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하는 인지세는 2개월이 경과한 달로부터 15일 내에 납부할 수 있음
- 인지세는 조사 및 징수가 어렵고 세액이 적기 때문에 미납 시 다음과 같은 중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세탈루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sup>417), 418)</sup>
- 인지세에 대한 검사는 세무조사 및 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 관할 인지세 기관에서 시행하며, 검사 규칙은 재정부가 정함<sup>419)</sup>

415) 「인화세법」 제18조

416) 「인화세법」 제8조

417) 한상국(2011), p. 383.

418) 「인화세법」 제23조, 제24조

-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시에는 본세 외에 미납세액의 규모에 따라 미납세액의 5~15배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인지 재사용의 경우에는 20~30배의 이르는 가산세가 부과됨
- 총괄납부 방식의 경우 법정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한다면 매 초과 2일마다 1%를 가산세로서 추가 징수함

## V. 국제비교 및 시사점

### 1. 국제비교

#### 가. 인지세 개관

- 조사대상국 중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단일세목으로 인지세를 과세함
  - 우리나라, 미국의 플로리다주, 일본, 아일랜드, 호주, 홍콩, 대만은 단일세목으로 인지세를 과세하고 있음
  - 반면, 미국의 뉴욕주와 영국은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3가지 세목의 인지세제를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영국, 아일랜드, 홍콩은 인지세를 국세로 분류하나 미국, 호주, 대만은 지방세로 분류함
  - 이 중 홍콩은 지방세제 없이 국세만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 미국의 플로리다주, 일본, 영국(인지세), 호주의 남호주주, 홍콩, 대만은 전통적 개념의 인지세에 부합하는 '문서'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인지세제를 운영하고 있음
  - 과세를 위해서는 문서가 필요하므로 거래내용이 과세대상문서의 내용과 같더라도 구두계약 등 문서가 없는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
  - 국가별로 전자문서의 인정 여부는 상이함

- 예를 들어 우리나라, 아일랜드는 서면문서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도 과세대상으로 인정하나, 영국, 일본은 서면문서만을 과세대상으로 봄

- 반면, 미국의 뉴욕주, 영국(인지대체세, 인지토지세),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주는 문서가 아닌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음
  -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문서의 유무에 무관하게 인지세가 부과됨
  -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인지세’라는 명목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인지세가 아닌 별도의 세목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아일랜드는 원칙적으로 문서를 과세대상으로 하나 상장주식 온라인 거래, 신용카드 등 문서를 불필요하는 거래에 대해서도 인지세를 과세하는 복합적 성격을 보임
  
- 조사대상국 중 우리나라, 일본, 대만은 주된 인지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이전거래에 대해 인지세 이외의 거래세 또는 등록세를 추가로 과세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이전거래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함
  - 일본은 부동산 등의 이전거래 시 등록면허세 및 부동산취득세를 부과함
  - 대만은 부동산의 이전거래 시 계세(契稅)를 부과함
  - 반면, 미국, 영국, 아일랜드, 호주, 홍콩은 인지세 이외 추가적인 거래세 또는 등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조사대상국 중 홍콩은 인지세가 전체 세수 중 큰 비중(22~26%)을 차지하지만 그 외의 국가들은 비중이 낮은 편임
  - 홍콩은 2018/19~2021/22년 과세연도의 경우 인지세가 전체 세수 중 22~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세목 중 2번째임
  - 연방제 국가인 미국과 호주는 주정부별로 세수 비중이 상이함
    - 호주와 미국 플로리다주는 인지세가 주정부 세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미국 뉴욕주는 상대적으로 낮음

- 반면, 우리나라, 일본, 영국, 아일랜드, 대만은 인지세가 국세 또는 총 세수(국세와 지방세의 합계) 중 4%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조사대상국 중 인지세의 세수 비중이 가장 낮음(2018~2022년 기준 국세의 0.2~0.4%)
  
- 인지세 세수 비중의 차이를 결정짓는 중요 요소는 인지세가 사실상 등록세 또는 거래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 여부로 생각됨
  - 홍콩은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며 주요 과세대상인 부동산 및 증권의 이전 시에 인지세만을 부과함
  - 반면, 부동산 이전거래에 대해 인지세 외에 별도의 거래세·등록세를 부과하는 우리나라, 일본, 대만의 경우 국세(대만은 총 세수) 중 인지세의 비중이 낮음

〈표 V-1〉 주요국의 인지세 과세제도 개요 비교

구분	한국	미국 <sup>1)</sup>	일본	영국	아일랜드	호주 <sup>4)</sup>	홍콩	대만
세목	인지세	NY: 부동산거래세, 모기지등록세, 담배인지세 FL: 문서인지세	인지세	인지세 인지대체세 인지토지세	인지세	인지세	인지세	인화세
국세 or 지방세	국세	지방세	국세	국세	국세	지방세	국세	지방세
문서 or 거래	문서	NY: 거래 FL: 문서	문서	인지세: 문서 그 외: 거래	문서 <sup>3)</sup>	NSW: 거래 SW: 문서	문서	문서
기타 거래세· 등록세 유무	○	x	○	x	x	x	x	○
세수 비중	국세 중 0.2~0.4%	주정부별 편차가 매우 큼 <sup>2)</sup>	국세 중 1.34~1.69%	국세청 징수액 중 2.1~2.8%	총 세수 중 2.2~3.6%	지방세 중 20~ 30% 수준 <sup>5)</sup>	국세 중 22~ 26% 수준 <sup>6)</sup>	지방세 중 3~4% (총 세수 중 0.5~0.6%)

주: 1. 세수 비중은 한국, 아일랜드, 대만은 2018~2022년, 일본은 2017~2021년, 미국은 2019~2022년, 영국, 호주는 2017/18~2021/22년, 홍콩은 2018/19~2021/22년을 기준으로 작성됨

2. 기타 거래세·등록세는 부동산 및 증권의 이전거래를 중심으로 작성함. 다만, 미국은 증권의 이전거래가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 미국의 세수 비중을 제외한 비교표는 뉴욕주(NY)와 플로리다주(FL)의 내용을 작성함

2) 미국은 50개 주정부 중 34개의 주정부가 인지세일 것으로 추정되는 documentary and stock transfer 명목의 세제를 운영하고 있음. 관련 세제 운영 주정부 내에서도 세수는 큰 차이를 보여 2022년 기준 주정부 세수 중 0.1%에 미달하는 주정부(일리노이주, 캔터키주, 미주리주, 오리건주, 사우스다코타주)가 있는 반면, 10%를 초과하는 주정부(플로리다주 10.4%)도 있음. 미국 주정부 중 조사대상인 NY의 경우 2022년 기준 주 세수 중 documentary and stock transfer의 비중은 3.4%이며 이 중 부동산거래세는 2019/20~2022/23년 중 전체 주 세수 중 1.2~1.4%의 비중을 차지함. FL는 2019~2022년 중 6.7~10.4%의 비중을 차지함

3) 아일랜드는 문서 기반을 원칙으로 하되 신용카드, 상장주식 온라인 거래 등 문서를 불필요하는 거래에 대해서도 인지세를 과세하는 복합적 성격을 보임

4) 호주의 세수 비중을 제외한 비교표는 뉴사우스웨일스주(NSW)와 남호주주(SW)의 내용을 작성함

5) 호주의 인지세 세수 비중은 주정부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큰 변동성을 보임

6) 홍콩의 인지세 세수 비중은 해당기간 동안 국세 중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함(기업이윤세 다음)

자료: 본문을 요약하여 저자 작성

## 나. 인지세 과세제도

### 1) 과세대상의 전반적 범주

-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조사대상국은 인지세 과세대상에 대한 별도의 포괄적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우리나라는 「인지세법」에서 과세대상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구체적인 과세대상을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반면, 미국, 일본 등 모든 조사대상국은 별도의 정의규정 없이 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일본은 기존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개념적 포괄주의 방식에 의하여 과세대상을 규정하였으나 1967년 세법 개정을 통해 한정적 열거주의로 변환함
  
- 조사대상국 모두 인지세 과세범위를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국가별 인지세 과세 범위는 편차가 매우 큼
  - 우리나라를 비롯한 조사대상국은 전반적으로 인지세 과세범위를 축소하는 모습을 보임
    - 우리나라는 1950년 제정 당시 34종에 달하던 인지세 과세대상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현재 12종류의 문서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함
    - 미국은 1967년 연방 인지세를 폐지함
    - 일본은 1989년에 물품우표, 임대차계약서 등 5종의 과세문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영국은 20세기 중반 들어 증권, 부동산, 무형자산 거래로 과세대상을 한정하였으며 2002년에 무형자산도 제외함
    - 아일랜드는 한때 95종에 달했던 인지세 과세대상을 1999년에 15종으로 줄였으며 현재는 크게 6종류에 대해 과세함
    - 호주는 1999년 GST 도입 시에 인지세 과세대상 중 다수를 폐지하였으며 현재

도 과세범위의 축소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 홍콩은 1977~78년 중 총 27개의 과세대상 항목을 축소하여 현재는 크게 4종류의 과세대상 문서에 대해 과세함<sup>420)</sup>
- 대만은 부가가치세와 인지세의 통합논의가 있었으며 인지세 폐지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 우리나라와 일본은 과세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반면, 미국, 영국 등 그 외의 국가는 한정적임
  - 미국, 영국, 호주, 홍콩, 대만은 과세대상이 크게 2~4종류로 분류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크게 12종류, 일본은 20종류에 달함
- 조사대상국 모두 부동산 이전거래에 대해서 인지세를 과세하며, 증권 이전거래에 대해서는 영국, 아일랜드, 홍콩만이 과세함
  - 영국, 아일랜드, 홍콩에서는 증권에 대한 인지세가 사실상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임
    - 증권에 대한 인지세 이외 별도의 거래세가 없으며 세율이 증권거래가액에 비례하여 결정됨
  - 우리나라와 일본은 증권의 이전이 아닌 증권의 발행에 대해 인지세를 과세함
    - 참고로 EU 회원국은 지침에 의하여 증권 발행 시 자본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인지세는 부과할 수 없음
  - 미국, 호주, 대만은 증권의 이전·발행거래 시에는 인지세를 과세하지 않음
    - 호주는 과거 증권 이전 시 인지세를 과세했으나 현재는 과세하지 않음
- 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일본, 대만이 과세함
  - 우리나라는 과세대상인 도급계약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현재 총 18건의 문건이 이에 해당됨
  - 일본과 대만은 도급계약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두고 과세대상을 예시하는 포괄적

420) 그 외 과세대상문서의 사본 및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함

방법에 의해 과세함

- 무체재산의 이전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일본, 아일랜드가 과세함
  - 우리나라는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양식업권, 출판권, 저작권인접권 또는 상호권 양도에 대해 과세함
  - 일본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회로배치사용권, 육종가의 권리, 상호, 저작권의 양도에 대해 과세함
  - 아일랜드는 영업권, 계약수익권, 임차자산개량권 등 사업용 자산 성격의 무형자산의 이전에 대해 과세함
    -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
  
- 금전소비대차 및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일본이 과세하며, 보험증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일본, 아일랜드, 호주가 과세함
  - 우리나라는 금융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대해 과세하며, 일본은 모든 금전소비대차에 대해 과세함
  - 호주와 아일랜드는 보험증권 발행이 아닌 보험계약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함
  
- 한편, 상품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만이 과세함
  - 우리나라는 1950년 인지세 제정 시점부터 상품권에 대해 과세하였음
  - 일본은 과거 상품권에 대해서 과세하였으나 1989년에 폐지함

〈표 V-2〉 주요국의 인지세 과세대상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아일랜드	호주	홍콩	대만
과세대상 포괄 정의규정	○	×	×	×	×	×	×	×
과세대상 대분류	12종류	NY: 3종류 FL: 4종류	20종류	2종류	6종류	NSW & SW: 3종류	4종류	4종류
과세대상	부동산등의 이전, 금전소비대차, 도급계약, 자동차 등 양도, 광업권 등 양도, 시설물이용권 입회 또는 양도, 신용카드가입신 청서 등, 상품권, 모바일상품권, 증권 발행, 예·적금증서 및 보험증권 등, 시설대여계약, 채무보증서	부동산 이전, 모기지 증서, 담배(NY), 사채발행(FL) 어음 등(FL)	부동산 등의 양도, 특허권 등 양도, 소비대차계약, 영업의 양도, 지상권 등의 설정 및 양도, 도급계약, 약속어음 등, 증권 발행, 합병계약서 등, 정관, 계속적거래계약 <sup>1)</sup> , 예금증서 등, 선취증권 등, 보험증권, 신용장, 신탁계약, 채무보증계약, 통장, 판취장 등	부동산 이전 증권 이전	부동산 이전·임대차, 영업권·채권·임 차자산개량권 등 시업용 자산 성격의 무형 자산의 이전, 증권 이전, 보험계약 이전, 신용카드·수표· 보험증서, 특정 금융기관 징수	부동산 이전, 부동산 임대차, 차량 등록, 보험계약	부동산 이전, 부동산 임대차, 증권 이전, 무기명증서 발행	현금영수증, 등록대상인 동산매매계약, 도급계약, 부동산 이전

주: 1) 계속적거래계약에는 특약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은행거래계약서 등이 해당됨

자료: 본문을 요약하여 저자 작성

## 2) 부동산 이전거래에 대한 인지세 과세제도

- 이하에서는 모든 조사대상국에서 공통적으로 과세하는 부동산 이전거래를 중심으로 인지세 과세제도를 세부 비교함
- 전통적 개념의 인지세제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문서작성자를 인지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는 경향을 보임
  - 우리나라, 미국(플로리다주), 일본, 호주(남호주주), 홍콩, 대만은 문서작성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아일랜드는 전통적 개념의 문서 기반 인지세제를 운영하지만 납세의무자를 매수자로 특정함
- 조사대상국 모두 부동산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세율 구조에서는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않음
  - 우리나라, 일본은 차등정액세 방식에 의하는 반면 그 외의 조사대상국은 단일비례세율 또는 누진세율에 의함
    - 우리나라, 일본은 부동산 이전거래에 대해 인지세 이외 기타 거래세·등록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점이 세율체계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됨
    - 다만, 대만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이전거래에 대해 그 외의 거래세가 부과되더라도 불구하고 인지세가 단일비례세율(0.1%) 구조인 차이를 보임
- 조사대상국 중 일본, 대만을 제외한 국가들은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문서(또는 거래)작성일로부터 일정기한이 경과한 시점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납부기한은 문서작성일로부터 14일 내지 3개월 후까지로 범위가 다양함
  - 일본과 대만은 원칙적으로 문서실행일을 인지세 납부기한으로 함
    - 다만 사선승인하의 총괄납부방식인 경우 월합 또는 매 2개월 단위로 납부가능함
  - 우리나라는 과거 문서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2023년부터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납부하도록 개정됨

- 미국 플로리다주는 해당 문서의 등기 필요 여부에 따라 신고·납부기한을 달리 적용하는 특징이 있음
  - 등기를 요하는 자산은 등기시점에, 그 외의 자산은 문서작성일의 익월 20일 이 내까지 신고·납부하도록 납부기한을 이원화하여 운영함
  
- 일반적으로 인지세의 신고·납부의무 해태 시에는 他 세목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산세와는 별도의 고율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향이 확인됨
  -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조사대상국들은 일반적인 세목의 신고·납부의무 불이행 시에 적용되는 가산세와는 별도로 인지세만을 위한 가산세제도를 구비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일본은 미납세액의 최고 3배에 상응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며 홍콩, 대만은 각각 최고 10배, 15배에 상응하는 고율의 가산세를 부과함
  
- 우리나라를 포함한 조사대상국 모두 부동산 이전에 대한 인지세 미납부 시에는 관련 등기소에 등기를 할 수 없음
  - 인지세 미납부 시 소유권이전 등기를 금하는 방식으로 인지세 관련 조세행정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임
  - 이에 더하여, 영국, 호주, 홍콩은 인지세를 미납부한 문서에 대해서는 법정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제재를 가함
  
- 우리나라, 일본, 대만은 부동산 이전거래에 대해 인지세와는 별도의 거래세 또는 등록세를 추가로 과세하지만 미국, 영국, 아일랜드, 호주, 홍콩은 인지세 외 별도의 거래세 등을 과세하지 않음

〈표 V-3〉 주요국의 부동산 이전거래에 대한 인지세 과세제도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아일랜드	호주	홍콩	대만
납세의무자	문서작성자	NY: 매도자 FL: 문서작성자	문서작성자	매수자	매수자	NSW: 매수자 SW: 문서작성자	문서작성자	문서작성자 등
과세표준	매매가액	매매가액	매매가액	매매가액	매매가액	매매가액	매매가액	매매가액
세율	차등징액세	단일비례세율	차등징액세	누진세율 (주택 4단계, 그 외 3단계)	주택: 2단계 누진세율 그 외: 단일 비례세율	누진세율 (NSW 6단계, SW 9단계)	주택: 단일비례세율 그 외: 11단계 누진세율	단일비례세율
신고·납부기한	작성일 익월 10일 이내	NY: 양도일 부터 15일 이내 FL: 등기일 - 등기 시 그 외 - 작성일 익월 20일 이내	문서작성일 (단, 사전승인 시 매월단위로 익월 말까지)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	실행일로부터 44일 이내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SW는 2개월)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	문서작성일 (단, 총괄납부 방식의 경우 매 2개월 15일까지)
납인방법	전자납인	전자 또는 물리적 납인	물리적 납인	불필요	전자납인	NSW: 불필요 SW: 납인	전자 또는 물리적 납인	전자 또는 물리적 납인
가산세	미납세액의 1~3배 (기간에 따라 3단계 구분)	NY: 본 세의 10%+매월 2% 추가 FL: 10달러 + 최고 본세의 50%	미납세액의 3배 (자진납부 시 1.1배)	他 국세에 적용되는 가산세 적용 <sup>1)</sup>	이자세 + 최고 미납세액의 10% (63,495유로 한도)	미납인 11,000 호주달러, 그 외 他 세목에 부과되는 가산세 적용 <sup>2)</sup>	미납세액의 5~15배 (미납세액 규모에 따라 구분) <sup>3)</sup>	미납세액의 5~15배 (미납세액 규모에 따라 구분) <sup>3)</sup>
미납인 시 기타 제재	등기 불가	등기 불가	등기 불가	등기 불가. 법정 증거로 불인정	등기 불가	등기 불가. 법정 증거로 불인정	등기 불가. 법정 증거로 불인정	등기 불가
거래세·등록세	○	×	○	×	×	×	×	○

주: 1) 영국은 지연신고가산세, 정확성오류가산세 및 이자세(지연이자)를 부과함  
 2) 호주는 정확성오류가산세, 이자세(지연이자)를 부과함  
 3) 대만의 경우 총괄납부 시에는 상기한 가산세 외에 지연납부 매 2일마다 1%의 가산세를 추가 징수함  
 자료: 본문을 요약하여 저자 작성

## 2. 시사점

### 가. 인지세 제도의 존립에 관한 논의 및 장기적 개편 방향

- 우리나라의 인지세제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소득세제 정비, 부가가치세제의 도입 이래로 전반적 과세범위 및 세액의 축소가 진행되는 상황이며, 동시에 그 존립 근거와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 과세대상은 1950년 34종에서 2023년 12종으로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띠
  - 인지세제의 개정은 합리적 조세법적 논리에 상응하여 이루어져왔다기보다는 시대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적 대응과 세수 등의 요인을 고려한 측면이 큼
  
- 이러한 인지세의 제·개정 과정상의 인지세 자체에 대한 비판은 특정 과세문서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 인지세제의 근본적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에서 인지세는 문서를 작성하는 거래에 조세부담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간접세·유통세·물세·문서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먼저 인지세는 동일한 과세대상 사실(거래, 행위 등)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세하는 문제, 즉 다른 간접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인지세는 기본적으로 계약의 성립 및 거래행위 등 사실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성립행위 등에 동반되어 작성된 그 사실증명의 ‘문서’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인지세는 문서작성과는 별도로 계약과 함께 동반되는 재산의 취득 또는 재화·용역 거래 자체에 부과되는 다른 조세와의 중복 부담 문제가 발생함
    - 부동산,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광업권 등의 각종 권리와 회원권 등의 취득거래는 취득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함

- 사업자의 상업용 건물, 차량, 기계장비, 광업권, 무체재산권, 각종 회원권의 양도, 각종 도급용역에 대하여는 다단계거래세로서의 부가가치세가 부과 됨<sup>421)</sup>
  - 이중과세문제는 일본 및 대만에서도 인지세제의 축소 내지 폐지 논의상의 주요한 논점으로 제시됨
  - 이러한 인지세의 유통·간접세 성격으로서의 이중부과는 세 부담 및 납세협력비용 증가로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조세간소화(단순화)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음
- 또한 최초 제정 당시와는 달리 현재에는 점차적으로 인지세 과세 근거의 타당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및 해외 여러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최초 인지세를 도입할 당시의 목적은 전쟁자금 수요 등의 세수 조달 측면에서 그 필요성과 이점이 있었고 기간과세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역할이 있었기 때문임
    - 인지세는 과세대상이 물리적 형태를 띠므로 세원 파악이 쉽고 납세의무자가 자진납부하는 방식이어서 세무행정절차가 거의 생략되기 때문에 낮은 징세비용으로도 고정적으로 소액·다수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소득과세나 소비과세 등의 기간과세제도가 완비되지 않았던 시대에, 인지세라는 세원 발굴을 통하여 기간과세 세목을 보충·보완하는 역할을 기대하였음
  - 그러나 기본적으로 조세부과의 핵심은 응능과세의 원칙, 즉 담세력에 근거하여야 하나 인지세가 이에 기초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sup>422), 423), 424)</sup>
    - 담세력은 크게 소득, 소비 그리고 재산으로 구성되며, 소비와 재산은 소득이 변형된 양태이기 때문에 담세력 중 가장 중요한 원천은 소득이라고 할 수 있음<sup>425)</sup>

421) 과거 부가가치세와의 이중과세를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실시에 따른 세법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1976년 12월 22일 실시되면서, 이의 후속조치로 같은 거래세이자 간접세인 인지세 부담 적정을 도모하고자 과세범위 등을 조정하는 세법 개정을 한 바 있었음

422) 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8헌마55판결

423) 박명재(2014), p. 25.

424) 조세금융신문, <https://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57514>, 검색일자: 2023. 6. 17.

425) 백제흠, 「[세무이야기] 죄악세에 대한 단상」,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

- 본래 인지세는 법인세, 소득세 등 현대국가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득과세 체계가 완비되기 이전에 국가의 세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각종 문서 등에 세금을 부과했던 측면이 큼
- 인지세의 과세 근거로 과세대상이 되는 문서작성행위의 배후에 담세력이 인정되는 경제거래 등이 존재한다는 점으로서도 설명되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담세력을 찾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설득력이 약함
- 인지세 납부 징표인 수입인지 자체가 국가의 공증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어서 경제적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인지세제의 뚜렷한 존재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한편으로 국제적인 추세 및 조사대상 국가들의 최근의 논의 동향 등을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인지세제의 폐지 내지 축소 경향이 관찰됨
  - 상당수의 국가가 인지세를 사실상 폐지하였으며, 존치 국가들 중에서도 최근 영국,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가 법 개정을 통해 인지세제를 축소 운용하는 사례가 발견됨<sup>426)</sup>
    - 인지세를 최초로 도입한 네덜란드는 인지세제를 거래세로 대체하였음
  - 조사대상국 중에서도 일본, 영국, 호주, 대만 등에서는 전반적으로 인지세제의 폐지 내지 축소, 정비 논의가 계속하여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
    - 일본은 전자문서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공정성, 중립성, 단순성 측면에서 인지세제의 불합리한 점이 의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증으로 인지세제의 개정 내지 폐지 논의가 일어나고 있음
    - 영국은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하는 현행 인지세는 경제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인지세와 인지대체세의 통합 및 개정을 검토 중에 있음
    - 호주는 지속적으로 인지세 과세범위를 축소하고 있으며, 2023/24년 예산안에서도 일정 부동산 거래 및 보험계약 등에서 인지세를 과세 제외하자는 주장이 제안됨

2018062107004764749, 검색일자: 2023. 8. 21.

426) Yiu Yu Butt(2016), pp. 16~17.; 국회입법조사처(2015), p. 206.

- 다만은 구시대적 세목의 철폐와 세제 간소화, 이중과세 방지 측면에서 인지세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인지세제의 고유 한계와 국제적 흐름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인지세제의 존립 자체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인지세제의 폐지 내지 인지세 과세범위의 축소, 다른 거래세와의 통합 등의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지세는 세수 목적상의 필요 외에 이중과세 문제와 과세 근거 미흡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현행 인지세제의 존치 여부를 장기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인지세제의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서’가 아닌 ‘거래’ 기반의 거래세로서의 개편 내지는 기존 거래세(취득세, 부가가치세 등)와의 통합 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음

- 현행 과세대상은 ‘거래’가 아닌 ‘문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일부 거래에 있어 구두계약, 전자문서의 범위에 미포섭되는 신종 전자적 정보 교환방식 등을 통해 문서적 계약 형태의 거래를 고의적으로 회피할 수 있음
- 영국의 경우, ‘문서’를 요하는 것은 ‘인지세(Stamp duty)’로 축소되었으며, 인지대체세와 인지토지세는 인지세에서 파생되었으나 문서가 아닌 거래를 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개편함
- 호주의 경우 전통적으로 거래가 아닌 문서에 대해 과세하였는데, 문서화하지 않는 방식의 인지세 회피행위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분의 주에서는 문서 기반에서 거래 기반으로 관련 세제가 개정된 바 있음

□ 다만, 인지세는 상당기간 고착화되어 왔던 세제로서 폐지 시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상의 문제에 봉착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재정 여건 및 세수 중요도를 같이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인지세가 우리나라 총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으나 인지세 폐지 시 이에 따른 대체 세원으로서의 신규 세목 발굴이 요청될 수도 있으며, 대체 세목 신설로 인한 세수영향을 포함한 종합적인 실익 비교분석이 필요함

- 박명재 의원(2014) 및 국회 입법조사처(2015)는 인지세의 폐지보다는 정비를 제안하였으며 이는 세수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sup>427)</sup>
  - 다른 정책적 목적상의 신규 세목(예: 환경세, 에너지기업에 대한 횡재세, 설탕세, 은행세 등) 창설의 명분과 실익이 인지세 폐지로 인한 세수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비교분석이 필요함
  - 대만은 중앙정부에서 인지세의 폐지를 제안하였으나 지방정부의 세수상 애로로 인하여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였으며 검토를 계속하기로 함
  - 호주의 경우에도 지방정부의 세수 손실을 고려하여 GST의 도입에 따른 연방정부 세수의 배분과 인지세의 폐지를 연계하여 논의함
- 아울러 이러한 인지세제의 폐지 내지 개편 방안은 세수 측면 외에 다음과 같은 요인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폭과 시기 등을 점진적으로 조절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인지 첩부 문서의 공증 효과를 법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법률행위의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는지 여부
  - 소득과세, 소비과세 및 자산과세의 보충적 세목으로서 유통세라는 과세방식에 의해 보충·보완하는 인지세의 역할
  - OECD 회원국가들의 인지세 과세범위 축소 내지 폐지 경향

## 나. 단기적 개선방향

- 이하에서는 주요국의 인지세 과세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가 인지세 과세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개선방향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점을 제시함

### 1) 포괄적 정의규정의 삭제

- 우리나라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대한 포괄적 정의규정을 두고 이와 별도로 과세문서를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427) 박명재(2014), p. 33.; 국회입법조사처(2015), p. 206.

- 「인지세법」 제1조는 납세의무자란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 「인지세법」 제3조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 그러나 「인지세법」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이라는 불확정개념을 사용함에 따라 과세대상 문서 해당 여부에 대해 혼선이 야기되고 과세문서로 열거된 항목 중 일부는 포괄적 정의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예를 들어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2020년 3월 31일 폐지된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의 경우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었음<sup>428)</sup>
- 과세대상을 열거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를 고려하고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인지세 과세대상에 대한 포괄적 정의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인지세법」 제3조는 예시규정이 아닌 열거규정으로써 과세대상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포괄규정을 둘 필요성을 찾기 어려움
  -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항목과 포괄 정의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게 됨
  - 조사대상국 중 과세대상에 대한 포괄적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는 없으며 이는 상기와 같은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생각됨
    - 일본은 개념적 포괄주의에 입각하여 과세대상을 정의하고 있었으나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1967년에 한정적 열거주의로 변환하여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음<sup>429)</sup>

428) 윤순상(2023), pp. 111~114.

429) 현재 일본의 「인지세법」은 과세대상에 대한 별도의 포괄적 정의 규정 없이 일본 「인지세법」 제2조를 통해 [별표 제1. 과세물건]에 열거된 문서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본 「인지세법」 제3조에서는 과세문서의 작성자에게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2) 과세대상 범위의 조정

- 우리나라는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 납세자 경제활동 지원, 조세간소화 등을 고려하여 인지세 과세문서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조정하여 왔음
  - 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일부 항목(승마장·체육시설 회원권 등)은 과세대상에 추가하였음
  - 동시에 약속어음·환어음, 영수증, 수표책, 개인 간의 도급문서 및 소비대차문서, 합병계약서 등 기존 인지세 과세대상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함
  - 1950년 제정 당시 34종이었던 인지세 과세대상은 현재 12종임
  
- 그러나 인지세 과세 근거의 미흡함, 세무행정의 낮은 실효성, 조세형평성 침해가능성 및 국제적 인지세 위상의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행 과세대상문서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인지세 과세 근거 및 과세대상문서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인지세 축소경향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세대상문서에 대한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조사대상국 중 일본만이 우리나라보다 과세범위가 넓으며 우리나라는 주요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과세범위가 넓은 편임
  
- 구체적으로 인지세의 폐지 논란이 지속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상품권 및 지적재산권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음
  - 우리나라는 금융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해 인지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조세중립성 관점에서 폐지 또는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가계 금융대출이 증가하여 서민의 대출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인지세 폐지 등은 세부담 역진성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과세실효성을 고려하여 인지세가 폐지된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금융기

관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간에 조세중립성 문제가 있음

- 호주에서도 금융거래에 대한 인지세는 역진적이며 신용도가 낮거나 저소득층에게 더 가혹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조사대상국 중 금전소비대차에 대해 과세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이외 일본이 유일함

○ 상품권의 경우에도 과세 근거에 대한 논란, 조세중립성 및 과세실효성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함

- 상품권은 결제수단의 성격을 갖는 무기명 유가증권으로써, 다양한 결제수단 중 상품권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점에서 조세중립성 문제가 있음
- 지류 상품권의 경우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하여 법률관계의 안정화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응익(應益)과세를 과세 근거로 상정할 수 있으나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과세 근거가 미흡함<sup>430)</sup>
- 다양한 사업자 및 유형의 상품권 발행이 가능해졌으나 이들에 대한 세원관리가 용이하지 않음
- 주요국의 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조사대상국 중 상품권에 대해 인지세를 과세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함

○ 지적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등의 무체재산권)은 고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므로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인지세의 면제를 검토해 볼 수 있음

- 조사대상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만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인지세를 부과함

### 3) 납세의무자의 연대납부의무 유지

□ 우리나라 「인지세법」은 문서작성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대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430) 추경호 의원 등이 제20대 국회 364회(2018. 9. 21.)에서 권면금액 5만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인지세 납부를 제외하도록 발의한 법안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검토 단계에서도 이와 같은 의견이 제기됨(윤순상, 2023, pp. 179~180.)

- 일반적으로 문서는 쌍방 간에 작성하게 되며 「인지세법」은 계약당사자 모두가 인지의 납부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함
- 최근 납세의무자 간 인지의 불공정 전가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었으며,<sup>431)</sup> 이에 따라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계약당사자 중 일방으로 특정하거나 계약당사자 간 분담비율을 법률로 정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고 있음
- 하도급거래, 도급계약, 부동산 분양계약 등에 있어 인지세를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전담하는 일부 관행에 대한 불공정 문제가 제기됨
- 인지의 연대납부의무를 폐지하고 납세의무자를 특정하거나 분담비율을 법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문서작성자 중 상대적 약자에게 전가하는 불공정행위의 발생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을 것임
- 그러나 소액·다수의 거래가 불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인지의 특성을 고려하면 납세협력비용 및 징수비용 등을 감안할 때 지금과 같이 연대납부의무를 규정하는 방식이 좀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인지의 과세대상인 문서작성은 쌍방 간에 이루어지는 바, 일방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는 데 있어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움
- 만일, 납세의무자를 특정하거나 법정 분담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사무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 및 영세사업자에게 인지세 납부 관련 납세협력비용이 추가되며 이들의 의도치 않은 납부의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짐
- 인지세 연대납부의무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관리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가 2배로 증가하게 되며 소액·다량의 불연속성을 보이는 인지의 특성을 고려

431) 국민권익위원회, 「“아파트 분양계약시 인지는 당사자가 연대해 납부해야”-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규정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보도자료, 2023. 3. 27.; 『세정일보』, 「‘갑질’…공공기관, 97%는 인지세 상대방에게 떠넘겼다」, 2020.10. 7.,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72>, 검색일자: 2023. 8. 23.; 『조세일보』, 「건설업계 현실 반영 못하는 ‘인지세 연대책임’ 규정」, 2011. 6. 2.,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1/06/20110602117236.html>, 검색일자: 2023. 8. 23.

할 때 조세징수에 큰 어려움을 야기할 것임

- 문서세 방식을 채택한 주요국 중 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 문서작성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와 같은 취지에 의한 것으로 이해됨
  - 미국 플로리다주, 일본, 영국,<sup>432)</sup> 호주 남호주주, 홍콩, 대만은 문서작성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음

#### 4) 납부기한의 이원화

- 정부는 2021년 7월에 인지세 납부기한을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기존에는 문서작성일에 인지세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로써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었음
  - 2021년 세법 개정을 통해 문서작성일로부터 일정 기한 내에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납부기한이 합리화되었음
    - 다른 세목에 비해 납부기한이 지나치게 짧으며 수입인지 구매시간의 제한으로 문서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음<sup>433)</sup>
- 다만,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의 경우에는 법률상 납부기한은 다른 과세문서와 같은 문서작성일의 익월 10일까지이지만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을 제외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사실상 등기시점이 납부기한임
  - 정부는 2021년 인지세 납부기한에 대한 세법 개정 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에 대한 등기실무 및 인지세 납부 관행을 고려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발표함

432) 서면문서에 의한 증권 이전거래에 대한 인지세(Stamp Duty)의 경우를 말함

433)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2022), p. 3.

- 부동산 매매·분양 등의 경우 계약시점과 등기시점에 상당한 시간 차이가 발생하며 관례적으로 등기시점에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함

□ 이에 대해 사문화(死文化)된 제도가 정비되고 납세자 편의가 고려되었다는 점에서의 찬성의견이 있으나, 동시에 법률상 적용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했음<sup>434)</sup>

-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의 경우 관련 등기소에서 인지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며 가산세 부과가 전무한 현실을 감안하면 사문화된 제도를 정비한다는 장점이 있음
- 반면, 추후 세무조사 과정 등을 통해 인지세 납부 여부 확인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도 있으며 미등기 이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가산세 적용의 배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존재함

□ 따라서 등기·등록을 필요로 하는 자산과 그 외 자산의 인지세 납부기한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에 대한 가산세 배제 취지를 달성하면서 법적 공백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등기·등록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납부기한과 그 외 자산의 납부기한을 구분하여 명문화하면 인지세 납부기한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 기한 내 미등기·미등록 이전 자산에 대한 과세공백 방지에 유익할 것으로 생각됨
  - 등기·등록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납부기한은 ‘관련 등기소·등록소에 등기·등록 기한 내<sup>435)</sup>’로 규정하고, 그 외의 자산은 지금과 같이 문서작성일의 익월 10일 이내로 이원화하여 명시함
- 주요국의 경우에서도 과세대상문서의 성격에 따라 인지세 납부기한을 구분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됨

434) 『세정일보』, 「「22년 조세소위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 가산세 적용 제외 ‘재논의’」, 2022. 11. 21.,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11>, 검색일자: 2023. 8. 21.

435) 별도로 등기기한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소 접수일

- 미국 플로리다주는 관계기관에 등록을 필요로 하는 문서와 그 외의 문서의 납부기한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및 남호주주의 경우 부동산 이전, 차량이전 및 보험계약의 납부기한을 모두 달리 규정하고 있음

### 5) 자발적 납부 증진 및 납세협력비용 경감

- 인지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세금 중 하나이지만 인지세에 대한 국민의 인식수준과 이해도는 낮은 편인 것으로 보임
  - 수입증지와 수입인지의 구분, 인지세 납부증서인 수입인지와 재판수수료 성격의 인지에 대한 개념적 혼동이 있는 경우가 있음
  - 인지세 납부의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금융기관 등 대규모사업자를 제외한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 분양권 전매, 자체 상품권 발행 등에 대해 인지세 과세대상거래임을 알지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그간 과세관청은 관련 협회에 대한 안내, 홍보자료의 발간 등을 통해 납세자 교육 및 홍보를 계속하여 왔으나, 상대적으로 납세가 미흡한 영역을 선별하여 보다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세무조사 시 계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과세관청은 건설 관련 협회를 통한 인지세 납부 안내, 분양권전매 및 수분양자에 대한 인지세 홍보 등을 지속하여 왔으나 다른 세목에 비하여 납세자의 이해도 및 관심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와 같이 인지세 과세범위가 넓은 일본의 경우에도 인지세는 납세자 및 과세문서가 많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홍보·지도 및 조사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안내하여 가능한 한 다수의 납세자와 접촉하고, 과세의 적정화 및 자주납세 의식의 고양에 노력하고 있다고 함<sup>436)</sup>

436) 국중호(2009), p. 394.

- 한편, 일각에서 인지세 가산세 규정이 다른 세목에 비해 과하다는 지적을 제기하나 세원포착이 어려우며 소액인 인지세의 특성을 감안하면 현행 다른 세목에 비하여 고율의 가산세제도 유지에 불가피한 면이 있음
- 주요국의 경우에도 문서 기반 인지세제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대체로 인지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지세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가산세 규정을 두고 있음
  - 영국은 문서 기반 세제인 인지세는 일반 세목과 구분되는 별도의 가산세제를 적용하는 반면, 거래 기반 세제인 인지대체세 및 인지토지세에 대해서는 일반 세목에 적용되는 가산세 규정을 적용함
  - 문서 기반 인지세제를 운영하는 조사대상국 중 아일랜드를 제외한 국가들은 인지세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가산세 규정을 두고 있음
- 또한, 주요국들은 일반적으로 인지세에 대해 타 세목에 비하여 중한 가산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가산세가 이에 비하여 지나치다고 볼 수는 없음
  - 우리나라와 일본은 과세범위가 넓으며 차등징액세 방식에 의하는 반면, 그 외의 조사대상국은 제한된 과세범위 내에서 문서에 기재된 금액에 비례하는 세율구조에 의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및 일본의 개별 건당 인지세액이 작고 과세건수가 많을 것으로 추정됨
  - 우리나라와 일본은 인지세 미납부에 대해 최고 3배의 가산세를 부과하며, 홍콩은 최고 10배, 대만은 최고 15배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 VI. 결론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인지세제의 현행 제도 및 개정 연혁에 대한 검토 후 장·단기적으로 개선할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해 해외사례에 대한 비교·분석방식으로 수행되었음
  
- 전통적으로 인지세란 문서를 작성하는 거래에 조세부담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간접세·유통세·물세·문서세로서 1624년 네덜란드에서 도입된 이후 다수의 국가에서 도입·운영되어 왔음
  - 1624년 네덜란드에서 세수 확보 목적으로 최초로 도입한 후 다수의 국가에서 시행되어 왔음
  - 인지세는 낮은 징세비용으로 소액·다수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인 1923년에 도입한 이후 1950년 3월 제헌국회의 법률로 제정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음
  
- 그러나 근래에는 조사대상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지세제를 폐지 또는 거래세 개념으로 변형하거나 과세범위를 축소하는 경향이 관찰됨
  - OECD 38개 회원국 중 인지세 명목의 조세 운영국은 24개이며, 이들 중에서도 일부는 문서가 없는 경우에도 과세하는 거래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인지세를 최초로 도입한 네덜란드는 1972년에 인지세를 폐지하고 거래세로 대체함
    - 거래세 형식의 인지세는 세목은 인지세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전통적 개념의 인지세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유형의 조세로 볼 수도 있음

- 조사대상국 중 우리나라, 미국(플로리다주), 일본, 영국(인지세), 아일랜드, 호주(남호주주), 홍콩, 대만은 원칙적으로 '문서'를 과세대상으로 하지만, 미국(뉴욕주), 영국(인지대체세, 인지토지세), 호주(뉴사우스웨일스주)는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함
  - 조사대상국 중 미국은 연방 단위의 인지세를 폐지하였으며, 일본, 영국, 아일랜드, 호주, 대만에서는 인지세의 폐지 내지 축소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
- 조사대상국의 인지세 과세범위는 편차가 매우 크며 이 중 우리나라와 일본의 과세범위가 가장 넓은
- 미국, 영국, 호주, 홍콩 등은 과세대상이 크게 2~4종류로 분류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크게 12종류, 일본은 20종류에 달함
  - 조사대상국 모두 징수가 용이한 부동산 이전거래에 대해서 인지세를 과세함
  - 증권 이전거래에 대해서는 영국, 아일랜드, 홍콩이 과세함
    - 우리나라와 일본은 증권 발행에 대해 과세함
  - 도급계약은 우리나라, 일본, 대만이 과세하며, 금전소비대차 및 채무보증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일본만이 과세함
  - 상품권에 대해서 과세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함
    - 일본은 1989년에 상품권에 대한 과세를 폐지함
- 인지세는 다른 간접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과세의 타당성이 약화되고 있는 바, 세수영향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폐지 내지 다른 거래세와의 통합 등의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지세는 문서작성과는 별도로 작성된 계약의 실행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 부가가치세와의 중복 부담문제가 있으며 이는 납세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조세간소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인지세의 최초 도입 당시에는 세수조달 측면에서 필요성과 이점이 있고 기간과세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역할이 있었으나, 인지세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담세력을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소득·소비과세가 정비된 현재에는 과세 타당성이

약화되었음

- 국제적인 추세 및 조사대상국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전반적으로 인지세제가 폐지 또는 축소되고 있음
  - 다만, 장기적인 재정 여건 및 세수 중요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임
- 그 외 조사대상국의 과세제도를 토대로 우리나라 인지세제에 대한 단기적 주요 개선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 포괄적 과세대상 정의규정은 과세대상을 열거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 및 납세자의 혼동 방지를 고려할 때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조세중립성, 과세실효성, 과세 근거를 고려하여 현행 과세대상문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구체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상품권에 대한 우선 검토를 제안함
  - 최근 납세의무자 간 인지세의 불공정 전가문제가 대두되었으나, 소액·다수의 거래가 불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인지세 특성을 고려하면 납세의무를 특정하는 것보다는 현재와 같은 연대납부의무 방식이 바람직할 것임
  - 등기·등록을 필요로 하는 자산과 그 외 자산의 납부기한을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명문화하는 경우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기한 내 미등기자산에 대한 과세공백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자발적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홍보 및 세무조사 시 제도 강화 필요성이 있으며, 타 세목보다 높은 인지세의 가산세율은 세원 확인이 어려우며 소액·다건인 인지세 특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됨

## 참고문헌

-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 인지세법」, 2022. 11.
- 김창우, 『인지세 실무』, 영화조세통람, 2003.
- 금융개혁자문단 세제분과,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금융위원회 용역보고서, 2015.
- 금융결제원, 『전자수입인지 도입의 비용 및 효과 분석』, 기획재정부 용역보고서, 2011.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아파트 분양계약시 인지세는 당사자가 연대해 납부해야”-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규정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보도자료, 2023. 3. 27.
-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일본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
- 국회입법조사처,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 2015.
- 박명재, 『국회의원 박명재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1 - 인지세 및 수입인지 제도 개선방안』, 2014.
- 윤순상, 「인지세의 현대적 의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23.
-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미국2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
- 조창호, 「인지세 행정의 이론과 실제: 인지세 성립의 이론정립을 중심으로」, 『행정문제 논집』, Vol 5, 한양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 1984.
- 한상국, 『주요국의 조세제도- 대만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1.
- 木村剛志, 『印紙税実務のポイント』, 税務研究会出版局, 1995.
- Andrew Halkyard, “Is stamp duty really a tax on instruments?,” *Hong Kong Lawyer*, 1998 September, The Law Society of Hong Kong, 1998.

- Amrit MacIntyre, "Overview of the Stamp Duty Regime," *Asia-Pacific Tax Bulletin*, September/October 2010, IBFD, 2010.
- Ayesha Macpherson Lau and Justin Pearce, *Hong Kong Taxation: Law & Practice 2014-15 Edition*, 2014.
- Ban Su-Mei and Harleen Kaur, "Singapore\_Overview of the Stamp Duty Regime," *Asia-Pacific Tax Bulletin*, September/October 2010, IBFD, 2010.
- Bill Cannon and Peter Edmundson, "Refocusing on Fundamental Principles of Stamp Duty," eJITaxR7 4(2), *eJournal of Tax Research*, 101, 2006.
- CCH, *1999 Australian Master Tax Guide*, 1999.
- Croner-i, *British Master Tax Guide 2019-20*, 2019.
- Department of Treasury and Finance Government of Western Australia, *Reforming Western Australia's Taxation System*, 2003
- DJ Collins, "Stamp duties in the Australian tax system," *UNSW Law Journal*, Vol(19) No. 1,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1996.
- Franklin Koo, *Is Hong Kong's Special Stamp Duty constitutional?*,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2012.
- HM Treasury, *Budget 2002 Economic and Fiscal Strategy Report and Financial Statement and Budget Report*, 2002. 4.
- HMRC, *Consultation: Stamp Taxes on Shares modernisation*, 2023. 4. 27.
- \_\_\_\_\_, *Modernisation of the Stamp Taxes on Shares Framework\_Call for Evidence*, 2020.
- Inland Revenue, *Modernising Stamp Duty on land and buildings in the UK*, 2002.
- IRD, *Annual Report 2021-22*, 2022.
- \_\_\_\_\_, *Stamp office interpretation & practice notes no. 4. Deemed sale and purchase under section 19(1E) of the Stamp Duty Ordinance*, CAP. 117, 2000.

- \_\_\_\_\_, “Letter from the Editor,” *Asia-Pacific Tax Bulletin*, September/October 2010, IBFD, 2010.
- Ken Wright, *Stamp Taxes 2020/21*, Bloomsbury Professional Tax, 2020.
- Michael Thomas, *Stamp Duty Land Tax Seco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 NSW Treasury, *Productivity Commission Green Paper\_Continuing the productivity conversation*, 2020.
- OTS, *Stamp duty on paper documents: a way forward to reform, digitise and simplify*, 2017.
- Stephen Barkoczy, *Foundation of Taxation Law 14th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2.
- Treasurer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Tax Reform not a new tax a new tax system\_The Howard Government’s Plan for a New Tax System*, 1998
- William DM Cannon, “Fundamental principles of stamp duty,” *UNSW Law Journal*, Vol(19) No. 1,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1996.
- Wolters Kluwer, *Fifty Years of Australian Master Tax Guide Special Edition*, 2020.
- \_\_\_\_\_, *Australian Master Tax Guide 72nd Edition 2023*, 2023.
- \_\_\_\_\_, *Hong Kong Master Tax Guide 28th Edition 2019/20*, 2019.
- Yiu Yu Butt, *The History of Hong Kong Stamp Duty and its Influence on the Modern Law*, University of Exeter as a thesi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2016.
- 草間久雄, 「最近における印紙税の課税回避等の動きと今後の課税の在り方」, 『税大論叢』, 42, 税務大学校論叢, 2003, pp. 270~386.

##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시스템, <http://www.law.go.kr>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http://tasis.nts.go.kr>  
 국회의안정보 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삼일인포마인, <http://www.samili.com>  
 세정일보, <https://www.sejungilbo.com/>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  
 미국 인구조사국, <https://www.census.gov/>  
 미국 뉴욕주정부, <https://www.tax.ny.gov/>  
 미국 플로리다주정부, <https://floridarevenue.com/>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  
 일본 재무성, <https://www.mof.go.jp/>  
 일본 국회도서관 통계, <https://warp.da.ndl.go.jp/>  
 일본 법령정보, <https://hourei.ndl.go.jp>  
 일본 참의원, <https://www.sangiin.go.jp/>  
 아일랜드 국세청, <https://www.revenue.ie/>  
 아일랜드 국세청 세수통계국, <https://data.gov.ie/dataset/>  
 아일랜드 의회, <https://www.oireachtas.ie/>  
 호주 국회(Parliament of Australia), <https://parlinfo.aph.gov.au/>  
 홍콩 정부, <https://www.gov.hk/>  
 홍콩 국세청, <https://www.ird.gov.hk/>  
 홍콩 Webb-site REPORTS, <https://webb-site.com/>  
 호주 연방 재무관계, <https://federalfinancialrelations.gov.au/>  
 호주 연방 기록물, <https://federation.gov.au/>  
 호주 빅토리아 세입청, <https://www.sro.vic.gov.au/>  
 호주 Business.gov.au, <https://business.gov.au/>  
 남호주 세입청, <https://www.revenue.nsw.gov.au/>

- 호주 수도 특별구 세입청, <https://www.revenue.act.gov.au/>  
노던 테리토리 재무부, <https://treasury.nt.gov.au/>  
호주 통계청, <https://www.abs.gov.au/>  
뉴사우스웨일스 세입청, <https://www.revenue.nsw.gov.au/>  
대만 법률정보, <https://law.dot.gov.tw/>  
대만 재무부, <https://www.mof.gov.tw/>  
대만 타이중시정부 지방세청, <https://www.lawtw.com/>  
법률사무소 McDermott Will & Emery, <https://www.mwe.com>  
belasting & douane museum(네덜란드 세금 및 관세박물관), <https://www.bdmuseum.nl/>  
Fortune, <https://fortune.com/>  
PWC Worldwide Tax Summaries, <https://taxsummaries.pwc.com/>  
Rossmartin, <https://www.rossmartin.co.uk/>



세법연구 23-02  
인지세 과세제도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

발 행 2023년 9월 27일

저 자 홍병진 · 홍성희 · 이형민

발행인 김재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미래기획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ISBN 979-11-6655-233-5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